政策硏究資料 99-2

預金保險制度 改善方案에 關한 硏究

- 保險産業을 中心으로 -

1999. 12

李 昇 哲

保 險 開 發 院

保 險 硏 究 所

序 言

전세계적으로 自律化·國際化로 대표되는 오늘날 금융산업의 환경변화는 각국 금융시장의 금융기관 스스로가 生存과 繁榮을 위해 시대적 흐름에 맞는 경영체질 변화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정부당국도 기존의 일방적인 暗黙的 支援(implicit guarantee)을 벗어나, 전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확보와 自國民의 권익보호를 위해 預金保險制度에 대한 자율적 규제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IMF사태와 함께 시작된 국내 金融産業의 構造調整이 어느덧 2년이 지나면서 외형적으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듯하나, 최근 政府 및 金融機關들은 구조조정과 관련된 예금보험제도 운용상의 새로운 課題를 안고 있는 듯하다.

政府는 금융산업 구조조정 과정중 支援된 수십조원 규모의 公的資金중 최소한 出資형태이외의 지원자금 回收를 위해 향후 각 금융권별로 自己責任負擔 원칙에 따라 별도의 預金保險料를 부과하려는데 반해 금융기관은 財務健全性 확보차원에서 이에 반대하고 있다. 또한 금융기관의 責任經營 유도 및 자율적 市場規制 구축, 道德的 解弛(Moral Hazard) 방지차원에서 도입 논의가 되고 있는 信用等級別 保險料差別化 제도에 대해서도 다소 異見이 있는 듯하다.

본보고서는 향후 이상과 같은 내용을 骨子로 하여 계획되어 있는 預金者保護法의 改正 방향과 관련하여, 국내외 예금보험제도의 현황과 특징을 銀行圈과 保險圈으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특히 보험산업 입장에서 보험계약자 보호 차원에서의 향후 예금보험제도의 長短期 改善方案에 대해서 체계적인 분석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國內 預金保險制度의 정책방향 수립과 운용에 있어서 관계당국 및 보험업계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보고서는 보험연구소 李昇哲 정책연구팀 선임연구원이 작성하였다. 보고서를 작성한 筆者와 함께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많은 助言과 意見을 제시해준 李淳在 연구소장, 金浩敬 부연구위원, 梁誠文 선임연구원, 睦鎭永 책임연구원, 張東植 책임연구원, 金志玩 연구원 그리고 最終的으로 동보고서의 레프리를 맡은 嚴倉會 객원연구위원, 丁奉恩 정책연구팀장의 勞苦를 致賀하는 바이다.

향후 국내 保險産業은 종합금융화 시대를 맞이하여 과거와 전혀 다른 경영환경과 경쟁체제에 직면할 것이며, 構造調整에 있어서도 지금까지의 政府主導에서 自發的인 기업간 구조조정으로의 전환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더욱이 보험산업을 포함한 전체 金融시스템의 안정성 확보와 관련하여 安定性 개념이 종전의 特定 金融機關의 倒産을 막아야 한다는 개념에서 個別 不實金融機關의 倒産을 허용하여 전체 금융산업 安定性을 確保한다는 개념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善意의 다수 보험계약자 保護와 優良 保險會社의 育成은 금융산업 전체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며, 본 보고서가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조금이나마 寄與되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筆者의 個人的인 견해이며, 본원의 公式的인 見解가 아님을 밝혀두는 바이다.

1999년 12월

保 險 開 發 院

院長 朴 性 昱

< 要 約 >

Ⅰ. 硏究背景 및 目的

o 오늘날 전세계적으로 국경없는 금융자본의 이동이 그 어느때보다 손쉽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각국은 자국민의 보호차원에서 금융시스템 안정성 확보 및 경쟁력있는 우량 대형금융기관의 조기육성을 도모하고 있음.

- 특히 예금자권익보호 차원에서 각국은 예금자보호장치, 즉 예금보험제도의 지속적인 개선 및 강화를 통하여 금융시장내 적절한 시장규율의 확립과 함께 예금보험제도 기금의 다각적인 재원확보 및 운용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임.

o 우리나라는 금융산업 구조조정 시작과 함께 금융시장의 안정성 유지 및 예금자보호를 위해 '97.12월 예금자보호법의 대폭 개정 및 예금보험제도의 통합운용('98.4월 이후) 체제를 유지하고 있음.

- 보험산업은 '80년대 후반 보험시장개방을 계기로 제2금융권내 예금자보호장치의 하나로서 보험계약자보호를 위해 보험계약자보호예탁금 및 보험보증기금을 설치·운용해온 바 있음.

o 우리나라는 예금보험기금의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금융산업 구조조정 추진시 부족재원을 공적자금으로 대부분 해결하였음.

- 이에 따라 향후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통하여 자기부담원칙에 따라 일정규모 금액을 각 금융권별로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사후적인 특별보험료 갹출 신설, Moral Hazard 방지 및 책임경영구축을 위한 차등보험료율제도 도입 등을 계획하고 있음.

- 또한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투입된 공적자금의 조기회수를 위해 부실금융기관의 임직원 및 대주주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의 손해배상청구권 행사 등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있음.

o 즉, 정부는 지난 '98.4월에 통합된 예금보험제도의 역할 및 기능 제고를 통한 제도 강화를 위하여, 향후에 기존의 사전갹출보험료이외에 별도의 특별보험료 갹출제도의 도입과 예금보험료의 신용등급별 차별화를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o 이에 따라 본보고서는 예금자보호법의 개정시 미치게 될 파급영향과 관련하여 保險産業을 中心으로 그 影響과 代案을 제시함으로써, 보험계약자 보호 및 보험산업 발전을 위해 향후 관련 법 개정 등 정책 추진시 객관적인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함.

Ⅱ. 主要 構成 및 目次

o 첫째, 예금자보호장치 (예금보험) 제도의 의미 및 운용 현황
- 현행 국내외 예금보험제도의 현황과 특징에 대한 종합 검토

o 둘째, 외국의 보험산업 계약자보호장치 제도의 운용 및 주요 특징
- 외국의 예금보험제도 및 운용에 대한 조사 및 사례분석 검토

o 셋째, 예금자보호법 개정시 보험산업의 파급영향 및 대책으로서,
-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예금보험공사 공청회안)에 대한 종합검토
- 보험산업에의 파급영향 및 보험료 납부방식의 개선방안과 타금융권과의 비교를 통한 보험료율의 적정성 수준 분석
- 보험계약자 권익보호 및 보험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방안으로서 예금보험제도의 현실화 및 운용형태의 개선방안을 제시함.

Ⅲ. 主要內容

o 보험산업은 시장개방에 맞추어 계약자보호예탁금제도 외에 보험보증기금을 설치/운용해왔던 바, 현재의 예금보험제도상 타금융권과 비교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음.

- 현행 예금보험료 수준의 과다로 건실한 보험회사의 수익성악화가 예상되어 예금보험제도의 역기능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특히 타금융권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료율 체제, 즉 보험료산출기준 및 보험료율에 있어서 형평성 및 타당성이 부족함.

o 본고에서는 예금보험제도 개정과 관련하여 외국의 사례와 국내 금융산업 및 보험산업의 현실 등을 감안하여, 보험산업에 대한 제도 적용 및 운용방안으로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함.

<단기 개선방안>

o 첫번째 예금보험제도 기금의 출연방식, 즉 보험료의 사전갹출과 사후갹출 및 출연율 수준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 보험료 갹출의 사전/사후방식의 장점을 공유할 수 있는 체제로의 전환을 장기적으로 추진하되, 특별보험료는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추가적인 사후보험료 갹출로 특정기간 동안만 부과함.
- 사전보험료의 경우 보험료산출의 기준을 실질적인 계약자에 대한 부채(예수금 성격)라는 점에서 책임준비금으로 하되, 기존의 보험료산출 기준과의 차이를 감안하여 보험료율을 현행 수준의 1/3 ~ 1/2 수준인 0.05% ~ 0.07% 까지 하향조정이 필요함.
- 또한 예금자보험법 또는 시행령에 예금보험료 기금 적립액의 상한선 및 부보금융기관 갹출료 한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잔존 금융기관의 무제한 책임부과 방식이 지양되어야 함.

o 두번째 보험료갹출의 차등보험료율제도 신규도입과 관련하여, 현재 보험사업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표준비율에 대한 狹義의 차등화 제도를 예금보험제도의 廣義의 기능 확보차원에서 차등보험료율제도 도입을 신중히 검토할 수 있음.

- 그러나, 외국의 경우 예금보험제도상 보험료의 고정요율제도를 상당기간 운용후에 차등보험료율제도의 도입이 이루어진 바, 국내 도입시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 적용대상 및 적용시기의 경우 보험권의 경우 은행 및 종금사에 비해 차후적으로 적용되어져야 하며, 또한 보험권 전체에 대한 일괄적용보다는 손해보험부터 先적용(2000년)후에, 1~2년차 경과후 생명보험에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o 차등보험료율 산정의 종합점수 배정방법은 지급여력비율 및 감독당국의 경영평가 결과를 단계별로 점수화하여 활용토록 함.

- 보험권의 경우 지급여력비율은 총70점 만점으로 하여 100% 초과, 50~100%, 0%~50%, 0% 미만 등 총4단계로 구분하되, 각각 70점, 50점, 40점, 30점의 배점을 부여하고, 경영평가지표는 금융감독원의 5단계 경영실태평가를 총30점 만점으로 함.
- 단, 두지표에 의해서 산출되는 종합점수를 근거로 총4단계로 등급화하되, 보험료율의 차등화 폭은 기준 표준요율의 70%~120%로 확대 적용함으로써 차등화제도의 장점을 극대화함.
- 다만, 차등화 폭에 있어서 도입초기에 일시적용하는 것보다는 일정기간에 걸쳐 차등화 폭을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미리 공시함으로서, 부보금융기관 스스로 보험료율 차등화 제도에 적응토록 유도함과 동시에 사전예고효과에 의한 자율적인 경영위험 축소 노력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o 세번째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특별보험료 추가갹출과 관련하여,

- 외국의 경험 및 예금보험기금 재원형편상, 향후 추가적으로 일정수준이상의 특별보험료 갹출은 불가피할 것으로 인정됨.
- 다만, 실질적인 보험료율의 결정은 금융권별 공적자금 투입규모와 해당 금융업종의 현실을 감안하여야 하며, 총괄적인 공동 Rule에 의한 단순적용보다 기존의 사전갹출제에 의한 보험료 갹출수준 등이 종합적으로 감안되어 결정되어야 함.
- 그러나 보험권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과다한 수준의 예금보험료 납부가 지속될 것으로 추정되는 바, 향후 특별보험료의 부과시 기존보험료의 표준비율에 대한 引下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

<중장기 개선방안>

o 첫번째 향후 금융산업 환경 변화를 감안할 때, 예상되는 것으로

- 현행 통합된 예금보험제도 운용체제보다는 별도의 보험계약자 보호장치(가칭 : 保險契約者保護機構) 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외국의 예금자보호장치 제도운용 사례와 향후 종합금융화, 금융기관간 인수합병, 金融持株會社형태의 異種 금융기관간의 기업계열화 등 금융환경 변화시,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해서는 은행 등 저축금융기관의 예금보호제도와 보험계약자보호 장치가 二元化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됨.
- 이와 함께 현재의 통합 예금보험제도의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區分計理 체제보다는 금융업종별로 별도의 分離計定(separate account) 체제 구축을 통해 강력하고 투명한 차단벽(FireWall)이 이루어져야 함.

o 두번째, 동일 보험업종내에서도 보험계약 종류에 따라 엄격한

의미의 차단벽(Firewall) 설치가 필요함. 그 이유는 영위하는 보험사업의 보험종류별 위험도 및 상품판매구성에 따라 보험사업자의 실제 지급불능 확률(도산위험)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임.

- 최소한 보험권의 경우 미국의 보험보증기금 형태처럼 중장기적으로 보험종류별로 기금계정(account)를 세분화하되, 생명보험의 경우 일반 생명보험과 연금보험, 손해보험의 경우는 자동차보험, 책임보험, 일반 손해보험, 장기보험 등으로 세분화함으로써 보증기금의 재원 건전성 확보 및 보전금지급운용의 적정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향후 보험종목별 납입자본금의 차등화 제도가 도입될 가능성을 감안할 때, 각 보험종류별 계정의 보험료 및 보전금의 한도를 차별화함으로써 리스크가 다른 보험사업 영위에 따른 선의의 보험계약자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o 세번째, 외국의 경우처럼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처리에 있어서 단순히 잔존 보험회사의 보험료갹출에 의한 재원확보외에, 해당 부실보험회사를 선택한 계약자에게도 일정책임을 부과해야 함.

- 특히 일본의 일산생명 및 동방생명 등 부실보험회사 파산처리 과정에서 처럼, 예정이율 인하 및 보험금삭감, 조기해약시 페널티 부과 등 계약자게도 일정수준의 책임을 분담시키는 방안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Ⅳ. 結 論

o 국내 금융시장 및 금융기관 경영환경은 내부적으로 지난 2년간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엄청난 변화를 맞이하였음. 또한 전세계적인 종합금융화 및 규제완화 추세로 인하여 정부 및 감독당국,

금융기관 모두에게 기본적인 패러다임 변화를 요구하고 있음.

o 따라서 향후 예상되는 금융시장의 환경변화 추세를 감안할 때, 예금자 권익보호 및 금융시스템의 안정은 절대적으로 중요함. 이러한 상황에서 예금보험제도의 중요성 및 효율성 확보는 향후 금융시장 발전에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임.

- 이러한 상황에서 자율적 시장규제에 의한 예금자보호 및 건실한 우량 금융기관의 육성을 위해 예금보험제도의 효율적 기능수행이 매우 중요하며, 건실한 조기정착이 매우 절실한 시기임.

o 그러나 예금보험의 기금재원 확보 및 금융기관의 책임경영 확립을 위하여 무리한 제도운용의 개정 및 자기책임부담 원칙의 강화시, 금융시장내 현실과 보이지 않는 예금보험제도의 역기능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부족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우량 금융기관의 경영부실 및 계약자권익 침해라는 愚를 범하지 말아야할 것임.

o 끝으로 본연구의 한계점으로서 구조조정 종결이후의 현행 통합체제의 예금보험제도의 합리성 및 타당성, 특히 보험산업의 예금보험 적립규모의 적정규모 및 보험료의 사전/사후 갹출제의 최적운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다소 미흡함.

- 또한 예금보험제도와 관련한 세제상의 문제와 각 계정별 예금보험기금의 운용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후속작업이 필요함.
- 이에 대해서는 향후 보험계약자 권익보호차원에서의 세부적인 제도운용 형태 및 제도보완 방법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조사와 연구가 차후에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바임.

< 目 次 >

Ⅰ. 序 論 ····· 1

Ⅱ. 預金保險基金 制度의 意義 및 現況 ····· 3
1. 우리나라의 預金者保護 裝置 ····· 3
가. 預金保險基金 制度의 意義 ····· 3
나. 預金保險基金 制度의 現況 ····· 5

2. 外國의 預金者保護 裝置 ····· 8
가. 外國의 預金保險制度 (總括) ····· 8
나. 主要國의 預金保險制度 ····· 12
1) 美國 ····· 12
2) 캐나다 ····· 15
3) 日本 ····· 17

Ⅲ. 保險産業의 保險契約者 保護 裝置 ····· 19
1. 우리나라의 保險契約者 保護裝置 ····· 19
가. 保險契約者 保護預託金 ····· 19
나. 保險保證基金 制度 ····· 21

2. 外國의 保險契約者 保護裝置 ····· 25
가. 美 國 ····· 25
1) 契約者 保護預託金 制度 ····· 25
2) 保險保證基金 制度 ····· 26
가) 損害保險保證基金 ····· 29
나) 生命·健康保險保證基金 ····· 31
나. 英 國 ····· 33
1) 契約者 保護預託金 制度 ····· 33
2) 保險保證基金 制度 ····· 34
다. 日 本 ····· 38
1) 契約者 保護預託金 制度 ····· 38
2) 保險保證基金(舊) 制度 ····· 38

Ⅳ. 預金者保護法 改正에 대한 綜合 檢討 ····· 41
1. 預金者保護法 改正 方向 및 主要 內容 ····· 41
가. 預金保險制度의 趨勢 및 國內 制度의 特徵 ····· 41
1) 預金保險制度의 機能과 國內 狀況 ····· 41
2) 우리나라 預金者保護制度의 特徵 및 現況 ····· 43
나. 預金者保護法의 主要 改正 方向 ····· 44
1) 基本方向 ····· 44
2) 差等預金保險料率 制度의 導入 方案 ····· 45
3) 差等預金保險料率 制度의 長點 및 短點 ····· 53
2. 保險産業에의 影響 ····· 55
가. 保險會社 收益性 惡化 및 契約者權益 侵害 ····· 55
나. 他金融圈과의 衡平性 缺如 ····· 59
3. 綜合 改善方案 ····· 63
가. 主要 核心事項 ····· 63
나. 制度上의 改善方案 ····· 64
1) 保證基金 保險料 納付方式 ····· 64
2) 預金保險料의 差等料率制度 導入 ····· 66
3) 事後 特別保險料 醵出 水準 및 保險料率 ····· 69
다. 運用上의 改善方案 ····· 71
1) 別途의 保險契約者 保護裝置 ····· 71
2) 預金保險基金 計定의 細分化 ····· 73
3) 制度運用의 先進化 ····· 76
Ⅴ. 示唆點 및 結論 ····· 77
[附錄 1] 金融商品 元利金 支給保障 < 預金者保護法 施行令 > ····· 83
[附錄 2] 金融圈別 預金保險料 納付規定 ····· 84
[附錄 3] 保險會社 支給餘力 基準 (主要 改正內容: '99. 5월) ····· 96
[附錄 4] 保險會社 經營實態評價 ····· 121
[附錄 5] 美國의 州別 保險保證基金 ····· 130
<參考文獻> ····· 134

< 그림 및 表 目次 >

<그림 1> 예금보험제도의 구조 ····· 3
<표 1> 예금보험사고의 종류 및 주요 내용 ····· 4
<표 2> 통합이전의 금융권별 예금자보호장치 ('98. 4월 이전) ····· 6
<표 3> 예금보험기금 제도하의 금융기관 현황 ('99.9말 기준) ····· 7
<표 4> 외국의 예금보험제도 도입시기 ····· 9
<표 5> 외국의 예금보험금 지급한도 ····· 10
<표 6> FDIC의 차등보험료율 및 등급분포 현황 ('98년말 기준) ····· 14
<표 7> CDIC의 차등보험료율 제도 ····· 16
<표 8> 연도별 보험사업자 보호예탁금 납입 현황 ····· 20
<표 9> 보험사업자별 보험보증기금(舊) 출연율 ····· 23
<표 10> 연도별 보험보증기금 출연금 규모 ····· 23
<표 11> 미국 보험보증기금의 보전행위 ····· 28
<표 12> 일본의 생명보험 보험계약자보호기구 ····· 39
<표 13> 일본의 손해보험 보험계약자보호기구 ····· 39
<표 14> 구조조정기금의 재원 조달 및 집행 실적 ····· 43
<표 15> 은행 및 종금사의 예금보험요율 차등화방안 ····· 51
<표 16> 생명보험회사의 예금보험요율 차등화방안 ····· 52
<표 17> 손해보험회사의 예금보험요율 차등화방안 ····· 53
<표 18> 보험보증기금(舊) 제도의 변천 내역 ····· 56
<표 19> 현행 각 금융권별의 예금보험료 산출 방식 ····· 56
<표 20> 보험사업자의 예금보험료 납부부담금 비교 ····· 57
<표 21> 은행과 보험의 상품특성에 따른 예금보험료 부담 차이 ····· 57
<표 22> 예금보험료대비 당기손익 비교 사례 ····· 58
<표 23> 금융권별 예금보험공사 공적자금 투입현황 ····· 59
<표 24> 각 금융권별 부실채권 규모 ('98년말 기준) ····· 61
<표 25> 각 금융권별 공적자금 투입비율 ····· 61
<표 26> 보험사업자의 차등보험료율제 도입 개선안 ····· 69
<표 27> 공적자금 회수용 특별보험료율 추정사례 ····· 70
<표 28> 외국의 예금자보호장치 이원화 현황 ····· 72
<표 29> 보험종류별 평균지급규모 및 준비금 비중 ····· 74

Ⅰ. 序 論

o 지난 '97년도말 IMF사태과 함께 시작된 금융산업 구조조정으로 '99년 상반기까지 전체 금융권내 총 2,000여개의 금융기관중 약 10% 수준인 200여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퇴출·정리되었음.

- 이에 따라 은행, 제2금융권의 부실기관 정리에 소요된 구조조정 비용이 公的資金[1]을 포함하여 약 60조원을 상회하고 있음.
- 또한 '99년 하반기부터 제2차 금융산업 구조조정, 즉 보험사 및 투신사에 대한 구조조정에 따른 추가 자금지원외에, 은행권의 추가 손실보전 등 아직도 구조조정이 지속중임.
- 이에 따라 예금자보호 여부 및 금융시장 안정성 유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예금자보호법에 대하여 정부 (예금보험공사 등) 및 각 금융기관, 일반소비자 등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음.

o 최근에는 현행 통합 예금보험제도[2] 기능의 효율성 제고 등 운용의 현실화를 위한 조치가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특히 최근에 구조조정에 투입된 공적자금의 조기회수를 위해 부실금융기관의 임직원 및 대주주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등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장치가 도입되었음.[3]

---

1) 금융부실 해소를 위해 무자본특수법인인 예금보험공사와 정부출자기관인 성업공사가 채권(3~7년만기)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임. 정부보증이기 때문에 국가채무이며 국회동의가 필요하지만, 전액 정부예산에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공공관리기금과는 다름. '99년 10월말 기준으로 예금보험공사채권 43조5천억, 성업공사(부실채권 정리기금) 채권 20조5천억원 등 64조원이 발행되었음.

2) 최초의 공식적인 예금보험은 1892년 은행권과 예금의 안전성을 보장해주기 위해 설립된 뉴욕주의 안전기금제도(safety fund banking system)이 최초임.

3) 파산 및 부실우려 금융기관,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해당 경영진 및 대주주에 대한 배상책임, 즉 손해배상 소송을 예금보험공사등이 직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었음. 실제로 금번 '99.12월 국회에서 통과된 예금자보호법

- 또한 예금자보호법의 개정시 예금보험제도의 보험료 사전갹출제 방식 이외에 추가적인 사후갹출제를 신규 도입할 예정임.

o 관련 공청회 등을 통하여 현재까지 알려진 예금자보험법 개정중 주요 사항은 금융업종간 차단벽(FireWall) 설치와 신용등급에 의한 예금보험료율의 차별화, 특별보험료 도입 등으로 요약됨.
- 각 금융업종별로 Fire Wall을 설치하여 타금융업종간의 예금보험료 및 보험금 운용 등 자금유출입의 분리화를 적극 추진함.
- 동일 금융업종에서도 금융기관의 신용등급에 따라 예금보험료를 차별화하는 차등보험료율제도(差等保險料率制度)를 도입함.
- 공적자금의 조기 회수를 위해 현재의 사전납부제도 이외에 사후적인 특별보험료 징수제도를 추가로 도입할 예정임.

o 본보고서는 예금자보호법의 개정시 미치게 될 파급영향과 관련하여, 보험산업을 중심으로 그 영향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보험계약자 보호장치 및 보험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첫째, 국내외 예금자보호장치 (예금보험제도)의 현황 및 특징
- 둘째, 외국의 보험산업 계약자보호장치 제도의 운용 및 주요 특징
- 셋째, 예금자보호법 개정시 보험산업의 파급영향 및 대책으로서 i)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검토 ii) 적정 예금보험료율의 제시, iii) 보험료 납부방식의 개선방안, iv) 보험계약자 권익보호 및 보험산업을 발전을 위한 중장기 방안들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관련 정책추진시 객관적인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함.

의 신설조항은 예금보험공사의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제21조의 2), 자료제공의 요청(제21조의 3), 예금보험료관련 부보금융기관의 비밀유지의무 (제30조의 2), 관리인의 의무(제35조의 7), 청산인 또는 파산관리인의 업무(제35조의 8),채권양도의 특례(제38조의 3) 등임.

Ⅱ. 預金保險基金 制度의 意義 및 現況

1. 우리나라의 預金者保護 裝置

가. 預金保險基金 制度의 意義

o 예금보험기금은 부보금융기관으로부터 사전에 보험료를 납부받아 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기관의 경영악화 또는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를 대신하여 일정한도 이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개별 금융기관의 지급불능 사태가 전염효과(Contagion Effect)에 의해 전체 금융기관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임.

<그림 1> 예금보험제도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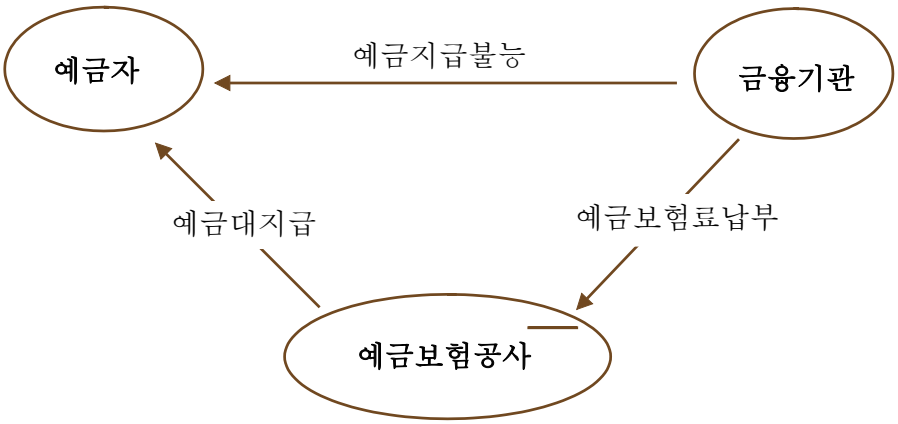

<출처>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www.kdic.or.kr/protect_deposit/mean.htm)

o 예금보험제도는 保險의 原理, 즉 통계적 확률에 근거한 大數의 法則에 의거하여 예금보험료를 갹출한 후, 지급사유 발생시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임.[4)]

o 부보금융기관[5]을 대신하여 예금보험기금에서 예금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예금보험사고의 발생이 필요하며, 보험사고의 종류에는 제1종 보험사고와 제2종 보험사고가 있음.

- 제1종 보험사고란 금융기관이 감독기관으로부터 예금의 지급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와 금융기관 스스로가 지급불능을 선언하고 예금지급 업무를 중단한 경우임.
- 제2종 보험사고는 금융업의 인가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사고 등에 의해서 보험사 등 금융기관 폐쇄가 확정되는 경우임.

<표 1> 예금보험사고의 종류 및 주요 내용

구 분	제1종 보험사고	제2종 보험사고
사고발생	o 예금등의 채권의 지급정지	o 영업인가 취소, 주주총회의 해산결의, 법원의 파산선고
가지급금 지급	o 가지급금 지급 결정 - 가지급금 등의 지급공고 - 예금자등의 청구 - 가지급금 지급	o 가지급금 지급절차 및 보험금 지급에 대한 결정과정없이 바로 지급을 공고하고 보험금을 지급함
보험금 지급결정	o 보험금 지급결정 -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120일 이내 (재경원 승인시 1개월 연기 가능) - 부보금융기관의 정상화 가능성, 합병등을 통한 구제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	
보험금 지급	o 보험금의 지급 - 해당 금융기관의 채권합계액에서 채무합계액을 제외한 순예금전액	左 同

<출처> 예금자보호법 및 시행령

4) 따라서 예금보험의 존재여부 및 형태에 따라 개별 금융기관의 경영 구조 전체 금융시장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됨.

5) 부보금융기관이라 함은 예금자보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예금보험의 적용대상 기관으로서 은행, 증권, 보험, 농·축·수협, 종금, 상호신용금고, 신협 등의 관련 법규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함.

나. 預金保險基金 制度의 現況

o 우리나라에서 예금보험의 효시는 1972년 「상호신용금고법」에 따라 예금자보호를 위하여 설치된 "상호신용보장기금"[6]임.
그후 지난 '80년대에 종금사 및 상호신용금고('83.5월), 신협협동조합('83.7월), 보험회사('89.4월) 등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설치·운용되어 왔으며, 은행('96.6월) 및 증권('97.4월)은 '90년대 중반 이후에 도입되었음.

o 현재 예금보험공사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의 예금보험기금은 기존의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각 금융권별로 설치·운용되었던 예금자보호장치 제도의 각종 기금들을 지난 '98. 4월에 통폐합한 것임.

-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기관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자에게 예금 등의 지급을 보장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목적으로 예금자보호법(제정 : 1995.12.29) 에 의거하여 '96.1.1에 설립된 무자본 특수법인임.
- 예금보험공사의 주요 업무는 크게 예금보험기금의 관리 및 운용, 보험료의 수납 및 보험금의 지급, 부실금융기관의 합병알선 등 자금지원, 정리 금융기관에 대한 설립 및 지도감독업무, 부보금융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자료징구 및 조사검사 업무 등임.[7]

---

6) 동기금은 '72~'75년까지 국민은행이 관리해오다가 '76년이후에는 상호신용금고연합회가 관리하고, '83. 5월에 "신용관리기금"에 포괄 승계되었음.
신용관리기금은 1982년 제2금융권 활성화대책의 추진과 함께 신용질서 유지 및 예금자보호를 위하여 제정된 「신용관리기금법」에 의해 설치된 기금임.

7) '99.12월 예금자보호법 개정에 따라 일부 업무가 추가되었음. <주 3> 참조

o 예금보험기금은 예금자보호법 제정시(‘96. 1월) 만들어진 예금보험공사에 설치된 것으로, 기존의 각종 예금자보호기금이 ’98.4월에 통합되기 이전까지는 은행의 예금보호기금 역할만을 수행하여 왔었음.

- 그후 지난 ’97.11월 외환 및 금융위기에 대한 “금융시장 안정 및 금융산업 구조조정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예금자보호를 위한 원리금 전액보장이 시행과 이어서 동년 12월 기존의 예금보호기금을 통합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시 5개 금융업종별로 설치·운용된 것을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험기금으로 통합(‘98. 4월 완료)하여 일원화한 것임.

<표 2> 통합이전의 금융권별 예금자보호장치 (‘98. 4월 이전)

구 분	예금보험기금	보험보증기금	신용관리기금	신협안전기금	증권투자자 보호기금
설립일	‘96.6	‘89.4	‘83.5	‘83.7	‘97.4
설립근거	예금자보호법	보험업법	신용관리 기금법	신용협동 조합법	증권거래법
대상기관	국내은행, 외은지점	생명보험 손해보험	종금사, 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증권회사
업무기능	예금보험, 자금지원	보험금지급 보장	예금보험, 자금지원, 퇴출업무	자금지원 예금보험	고객예탁금 지급보장
가입방식	의무가입	의무가입	의무가입	의무가입	의무가입
보장한도	2천만원	5천만원	2천만원	1천만원	2천만원
재원조성 (출연요율)	예금평잔의 0.03%	수입보험료의 0.15%	예수금평잔의 종금: 0.12% 금고: 0.15%	예탁금평잔의 0.06%	고객예탁금 평잔의 0.15%

<출처> 김용우(‘98.7)의 p.8

o 현재 통합 예금보험기금이 기존의 각 금융권별 예금보호기구를 통폐합함에 따라 현재 전체 금융권중 약 1,900여개 금융기관이 부보금융기관으로 속해 있음. 한편 각 금융권별 보험기금 적립금액은 '98.3월말 기준으로 은행 563억원, 보험 2,447억원, 종금 1,748억원, 신용금고 2,652억원, 수협 529억원 등임.[8)]

<표 3> 예금보험기금 제도하의 금융기관 현황 ('99.9말 기준)

구 분		국 내	국 외	기 타	소 계
은행		22	50	31*	103
증권회사		32	22	0	54
보험회사	생명보험	23	6	0	29
	손해보험	12	4	0	16
종합금융		11	0	0	11
상호신용금고		196	0	0	196
신용협동조합		1,490	0	0	1,490
합 계		1,786	82	31	1,899

(주) *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소속 단위수협으로서 은행업무 인가를 받은 수협
<출처>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http://www.kdic.or.kr/servlet/AllList)

o 한편 현재 '98.10월 이후 일시적으로 보호대상이 확대된 예금보험제도는 향후 2001년 부터는 보호대상예금 범위가 환원됨에 따라 예금보험료 수입규모도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현재 예금보험료 갹출수준은 '98.4월~12월 2,183억원, '99.1월~11월 4,160억원 수준임.[9)]

8) 동금액은 운용수입을 포함하지 않은 순수한 보험료적립 규모임.
9) <출처>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의 현황과 발전과제」, 1999.12.16

2. 外國의 預金者保護 裝置

가. 外國의 預金保險制度 (總括)

o 세계 무역시장의 단일화 추세 및 국경없는 금융거래의 활성화로 각국은 예금자를 보호하는 예금자보호제도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기존 제도의 개선 및 새로운 도입이 이루어졌음.

o 특히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지난 '70~'80년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이유로 은행을 중심으로한 다수의 금융기관들이 예금 지급 불능의 위기를 경험하면서 금융제도의 안전을 위한 예금보험제도가 일반화되었음.

o 금융시장내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 확보를 통한 예금자보호 및 금융기관의 경쟁촉진을 위하여 예금보험제도를 도입하였음.[10]

- 미국, 영국, 이탈리아, 인도 등의 경우 실제로 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기관의 대량 파산을 경험한 이후에 예금보험제도를 강화 또는 신규로 도입하였음.[11]
- 독일, 캐나다, 일본 등은 일부 금융기관의 부분적 파산도 있었으나, 전세계적인 금융자율화 추세에 따라서 사전적으로 금융제도의 안전성 위협에 대한 방지, 특히 예금자보호에 대처하고 금융기관간의 공정경쟁 제고를 위해 제도를 도입하였음.

---

10) 각국의 예금보험제도는 대부분 은행 등 저축금융기관을 중심으로한 예금자보호장치이며, 보험회사와 같은 비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호장치 제도를 두고 있음.

11) 1930년대초 대공황이후 예금보험제도를 도입한 미국(1933), 1970년대 2차 금융위기 후의 영국(1982), 대형은행인 Banco Ambrosiano 파산이후의 이탈리아(1987) 등의 사례를 들 수 있음.

<표 4> 외국의 예금보험제도 도입시기

구 분	국가 및 도입년도
1930년대	미국('33)
1960년대	캐나다('67), 독일('66 및 '69), 핀란드('69), 필리핀('63), 노르웨이('61), 인도('61)
1970년대	일본('71), 스페인('77), 아르헨티나('79), 오스트리아('79), 네덜란드('79), 파라과이('71)
1980년대	프랑스('80), 영국('82), 터어키('83), 스위스('84), 벨기에('85), 콜롬비아('85), 베네주엘라('85), 칠레('86), 덴마아크('87), 이탈리아('87), 브라질('89), 아일랜드('89), 터키('83)

<출처> 정운찬 (1999), pp.208

o 이와같은 각국의 예금보험제도의 경우에 대부분 별도의 특별법에 의거하여 예금보험기구를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따라서 운영주체는 대부분 각국의 중앙은행 또는 금융정책당국에서 운용되고 있는 것이 보편적임.

o 예금보험제도에의 가입형태는 국가마다 차이가 있으나, 크게 자율가입형과 강제가입형이 있음. 현재 각국의 운용형태에 따르면, 강제가입형 제도가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음.[12)]

- 강제가입형 : 영국, 캐나다, 네덜란드, 프랑스 등 대부분의 국가
- 자율가입형 :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아르헨티나, 스페인, 스위스 등

12) 미국의 경우 국책은행은 강제가입이지만, 나머지 연방준비위원회 회원은행 및 기타 저축기관의 경우는 임의가입임. 그러나 대부분의 은행 및 저축기관이 동제도에 가입되어 있음.

o 한편 예금보험제도를 운용하는 예금보험기구의 주요 업무는 각국마다 큰 차이는 없으나, 크게 분류해 보면 예금보험업무 이외 금융기관의 검사, 부실금융기관의 자금지원 및 정리업무 등이 대부분임.

o 예금보험제도상의 예금에 대한 보전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보호대상 예금중 예금액의 일정한도액 또는 일정비율에 대해서만 보상하는 부분 보장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 단, 노르웨이 등 소수국가만이 전액 보장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표 5> 외국의 예금보험금 지급한도

구 분	미국	일본	캐나다	영국
자국화폐 기준	$10만	￥1,000만	C$60,000	£20,000, 예금의 90%

(주) 1인당 기준 (중복계좌 포함)
<출처> 각국의 예금보험제도 (각국 예금보험공사의 internet home page) 자료

o 예금보험제도의 기금 조성중 부보금융기관의 출연방법은 사전에 보험료를 갹출하여 적립하는 사전갹출제와 금융기관 파산시 사후에 필요한 금액을 분담·갹출하는 사후갹출제 방식이 있음.
- 대부분의 국가에서 보험료의 사전갹출제 방식을 도입한 경우가 많으며[13], 일부 국가가 사후갹출제 방식을 도입하고 있음.
- 즉, 사전갹출제 방식을 채택한 경우는 미국, 일본, 독일등 대부

13) 사전갹출제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들중 실제로 대형 금융기관 파산으로 인한 예금보험기금의 부족, 또는 투입 공적자금의 회수 등의 목적에 따라서 사후에 별도로 갹출금을 분담시킨 사례가 있음. 한편 영국의 경우 사전갹출방식과 사후갹출방식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음.

분의 국가이며, 사후갹출제의 경우는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등이 이에 속함.

o 한편 예금보험제도의 보험료산출 방식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고정보험료율(flat-rate premium system)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미국[14] 및 캐나다 등 일부 국가가 차등보험료율(risk-rate premium system) 제도를 채택하고 있음.[15]

o 각국의 예금보호제도는 국가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그 이유는 각국의 개별적인 여건으로 인해 발생한 것임. 단, 각국의 예금보호제도는 금융기관 감독기능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통일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특히 예금보험제도 운용 및 기능상의 세계적인 통일화 추세는 예금보험제도 관련 감독 등의 분야에서 두드러지고 있음.

o 이상 외국의 예금보험제도에 관한 개괄적인 내용을 알 수 있듯이 각국은 전체적인 금융시스템 안정과 그로 인한 계약자보호장치를 제도화하고 있음. 이들 국가중 일부 국가의 예금자보호장치를 실제 예금보험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음.

---

14) 미국의 경우 예금보험공사 (FDIC)의 관련 법규인 Federal Deposit Insurance Act에서 지난 1991년 개정논의시 차등보험료율제도(risk-rate premium system)의 도입이 제기되었고, 마침내 1993년에 차등보험료율 제도가 도입되었음.

15) 예금보험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약 50여개 국가중 미국, 캐나다, 스웨덴 등 일부 국가가 차등보험료율 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한국, 대만, 멕시코 등이 도입 준비중임.
Gillian Garcia, "Comparative Analysis of Established Deposit Insurance System", FDIC International Conference Proceeding Paper, 1998

나. 主要國의 預金保險制度[16)]

1) 미 국

o 지난 1930년대초 대공황이후 은행을 중심으로 예금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특히 금융위기시 급격한 예금인출(bank-run) 사태시 금융기관의 연쇄도산(systematic failure)을 방지하기 도입되었음.

o 현재 대표적인 예금자보호장치는 금융기관별로 볼 때, 은행 및 저축대부조합 등 저축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연방예금보험공사(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17)]가 있음. 그리고 이외에 지난 1970년에 설립되어 신용조합(Credit Union)의 예금보험기구인 전국신용조합협회(National Credit Union Association)가 각각 예금보험기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산하에는 은행보험기금(Bank Insurance Fund)와 저축조합보험기금(Savings Association Insurance Fund) 등 두가지의 보험기금이 있음.
- 전국신용조합협회(NCUA : National Credit Union Association) 산하에는 전국신용조합출자보험기금(NCUAIF : Nation Credit Union Share Insurance Fund) 이 있음.

---

16) 각국의 예금보험제도에 대한 사항은 최장봉외(1996. 4), 그리고 정운찬(1999)을 참조하였으며, 최신 자료는 각국의 예금보험공사 즉, 미국(FDIC), 일본(JDIC), 캐나다(CDIC)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였음.

17) 1933년에 은행을 대상으로한 예금보험(FDIC)이 도입된 후, 1934년 저축대부조합을 대상으로한 연방저축대부보험공사(FSLIC)가 설립되었음. 그러나 '80년대 중반이후 저축대부조합(S&L)의 대규모도산으로 FSLIC가 지급불능 사태에 이르자, 1989년 FDIC에서 S&L의 예금보험업무까지 담당하게 되었음.

o FDIC산하의 예금보험에는 국법은행, 주법은행, 상호저축은행, 신탁회사, 저축대부조합 등이 부보금융기관으로 되어 있음. 이중 국법은행은 강제가입이고, 나머지 기관들은 원하는 경우 FDIC의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가입이 됨.[18)]

o 예금보험 대상예금은 당좌 및 저축예금, CD, 신탁자금 등이 포함되지만, 금융채와 해외지점 예금은 제외됨. 단, 예금보험 지급한도액은 중복계좌을 포함하여 1인당 $10만로 한정되어 있음.[19)]

o 예금보험 가입 금융기관의 예금보험료는 '93년부터 금융기관의 위험도(risk-rate) 및 자본상황을 고려하여 보험료를 차등화하는 차등보험료율제(risk-rate premium system)를 채택하고 있음.

- 위험도는 감독당국의 경영평가(CAMEL제도)[20)] 등급에 근거하여 3단계로 구분하고, 자본상황도 3단계로 구분하여, 이를 조합하여 총9단계로 세분화하여 차등보험료율을 부과하고 있음.
- FDIC 산하의 BIF와 SAIF의 차등보험료율의 bp(basis point)는 0~27bp로서, '98년말 기준으로 평균bp수준은 BIF가 0.1bp이고, SAIF는 0.25bp임.[21)]

---

18) '98년말 기준으로 은행보험기금(BIF)의 경우 약 1만 1,000개, 저축조합보험기금(SAIF)에는 약 1,430여개의 금융기관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음. 이는 전체 금융기관의 약 95%이상 수준임.

19) 단, 실제 지급되는 보험금 규모는 파산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예: 대출금)를 차감한 순예금액 기준으로 계산됨.

20) CAMEL은 금융기관 경영평가방법으로 주요 평가부문은 자본적정성(Capital Adequacy), 자산건전성(Asset Quality), 경영관리능력(Managemant), 수익성(Earnings), 유동성(Liquidity)임.

21) FDIC의 보험료율은 0.04%~0.31% 임. 다만, SAIF산하의 일부 저축기관의 경우 과거와 동일한 0.23%~0.31% 보험료율이 적용되고 있음. 이러한 차이는 과거 저축대부조합의 대량파산으로 SAIF의 재원이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임.

o FDIC의 적정적립액 한도는 예금보험 대상예금 잔액의 비율 1.25% (target Designated Reserve Ratio)로 되어 있음. 현재 '98년말 기준으로 각 보험기금의 잔액과 대상예금잔액의 비율은 BIF의 경우 1.38%, SAIF의 경우는 1.25%임.[22)]

<표 6> FDIC의 차등보험료율 및 등급분포 현황 ('98년말 기준)

은행보험기금(BIF)			
자본등급*	감독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1등급	0%	0.03%	0.17%
기관수(비중)	8,602 (95.0%)	261 (2.9%)	36 (0.4%)
2등급	0.03%	0.10%	0.24%
기관수(비중)	111 (1.2%)	14 (0.2%)	14 (0.1%)
3등급	0.10%	0.24%	0.27%
기관수(비중)	5 (0.0%)	2 (0.0%)	11 (0.1%)

저축조합보험기금(SAIF)			
자본등급*	감독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1등급	0%	0.03%	0.17%
기관수(비중)	1,322 (92.4%)	64 (4.5%)	14 (1.0%)
2등급	0.03%	0.10%	0.24%
기관수(비중)	17 (1.2%)	4 (0.3%)	4 (0.3%)
3등급	0.10%	0.24%	0.27%
기관수(비중)	2 (0.1%)	1 (0.1%)	2 (0.1%)

(주) * 자본등급 1 : Well capitalized, 자본등급 2 : Adequately capitalized, 자본등급 3 : Under capitalized

** A : CAMELS 1, 2등급, B : CAMELS 3등급, C : CAMELS 4, 5등급

<출처> http://www.fdic.gov/deposit/insurance/risk

22) '98. 12월말 기준으로 BIF의 대상예금 잔액 및 적립액은 각각 2조 1,413억$, 296억$이며, SAIF의 대상예금잔액 및 적립액은 각각 7,089억$ 및 89억$임.

2) 캐나다

o 금융시장의 경쟁원리 도입 및 예금자보호를 위하여 지난 1967년 미국의 예금보험공사(FDIC)를 모델로 하여 캐나다예금보험공사(Canad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가 설치되었음.[23]

o CDIC 산하의 예금보험에는 은행, 신탁회사(trust company), 대출회사(loan company) 등이 포함되며, 일부 州政府 금융기관의 경우 CDIC의 승인허가시 가입됨.[24] 반면에 보험회사, 신용조합, caisses populaires, 투자딜러(investment dealers)는 비회원임.

o CDIC 보호대상의 예금으로는 일단 캐나다내에 자국화폐(C$)로 5년이하 기간 예치되어야 함.

- 저축 및 수표구좌, 투자보증부계약(GICs) 등의 정기예금 및 대출회사발행 무상환사채(debenture), money order, drafts 등이 적용됨. 반면에 외화예금, 5년이상 정기예금, 정부채권, 은행발행 무상환사채, 주식, 뮤츄얼펀드 등은 적용되지 않음.

o 예금보험 보전 한도금액은 중복계좌를 포함하여 예금자 1인당 C$60,000임. 단, 공동명의 예금자(joint depositor), 신탁예탁자는 별도 예금자로 하며, 퇴직관련 예금은 다른 예금으로 취급됨.

o CDIC의 예금보험대상 예수금은 '99.10월 기준으로 약 C$3,170억이며, 반면에 CDIC는 1982년에 첫 흑자를 달성이후 지금까지 지속되어 '99.3월말 기준으로 C$2,700만의 흑자를 달성하였음.

---

23) 이외에 Quebec주의 정부관할 금융기관의 예금자보호를 위하여 별도의 퀘백주예금보험위원회(Quebec Deposit Insurance Board)가 있음

24) 1999년 7월 현재 CDIC에 가입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수는 112개임.

o CDIC 산하 금융기관의 예금보험료는 1995년까지는 각 금융기관의 위험도 및 예수규모 등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되었으나, 1996년 CDIC 관련 법규개정시 가입 금융기관의 위험도에 따라 보험료율을 차등화하는 법규가 통과되었음.

- 기존의 경우 정률 보험료율제 적용시기에는 일률적으로 보험대상 예수금잔액의 1%의 1/6 (0.16667%)를 적용하였음.

o 현재는 '99. 3월에 도입된 차등보험료제에 의거, 산하 금융기관의 미래 손실위험도와 예수금적립규모 등을 감안하여 총4단계로 보험료율을 차별화하였음. 차등보험료율 기준의 분류는 자본적정성, 수익성, 자산건전성, 감독기관 평가등급 등에 근거함.

<표 7> CDIC의 차등보험료율 제도

구 분	보험료율 (예금보험대상 예수금 잔액 기준)
1 등급	1%의 1/24 또는 0.0417%
2 등급	1%의 1/12 또는 0.0833%
3 등급	1%의 1/6 또는 0.1667%
4 등급	1%의 1/3 또는 0.3333%

<출처> http://www.cdic.ca/english/library/19990318e.htm

o CDIC는 계속되는 흑자유지에 따라 보험료 인하를 추진중이며, 이에 따라 약 75%의 보험료 수입감소가 예상되고 있음.

- 1998/1999년 예금보험료 규모는 약C$ 5억 1,500만, 1999/2000년에는 약 C$1억 2,500만로 추정되고 있음.

3) 일본

o '70년대 들어서 금융기관간의 경쟁촉진 등을 위한 금융자율화가 급진전되면서 예금자보호 필요성 및 신용질서를 위하여 지난 1971년에 특별법인 형태로 일본예금보험기구(Japan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이 설립되었음.[25]

o JDIC 산하의 예금보험에는 은행[26], 신용금고, 신용조합, 노동금고 등이 포함되며, 반면에 우체국, 정부계열 금융기관 및 외국계 은행지점,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은 포함되지 않음.[27]

- JDIC에 포함되지 않은 금융기관중 증권, 보험 등의 경우에는 별도의 보호기금[28]이 운용되고 있음.

o JDIC 보호대상 예금으로는 당좌예금, 보통예금, 통지예금, 저축예금, 정기예·적금, 별단예금, 원금보존형 금전신탁(대부신탁 포함)등이며, 단 외화예금 및 양도성예금(CD)는 적용되지 않음.

o 예금보험 보전 한도금액은 원금기준으로 1인당 1천만엔임.

- 그러나 지난 '98년 금융재생법에 의거하여 예금보호대상 예금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2001.3월말까지 1천만엔을 초과하는 원리금의 대해서도 전액 보상됨.

---

25) '71년 설립단시 예금자보호 및 신용질서와 관련된 업무범위가 지난 '96년의 주전(住專)처리법의 제정, '98년의 금융재생관련법의 제정 등으로 인하여 현재는 대폭 확충되었음.

26) 도시은행, 지방은행, 제2지방은행, 신탁은행, 장기신용은행이 포함됨.

27) 이외에 농수산협동조합의 예금자보호를 위해서 1973년에 설립된 농수산협동조합 예금보험기구가 있음.

28) 일본투자자보호기금, 증권투자자보호기금, 생명보험계약자보호기구, 손해보험계약자보호기구 등이 있음.

o JDIC 산하 금융기관의 예금보험료는 기본적으로 단일 보험료제도(일반보험료율)였음. 그러나 지난 '96.6월 법개정시 2001.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추가적으로 특별보험료율[29]을 부과하고 있음.

- 현행 일반보험료율은 지난 '96년에 개정된 요율로서 각 금융기관에 일률적으로 예금보호대상 예수금 잔액의 0.048%[30]를 적용하고 있음.
- 특별보험료율은 일반보험료율과 동일한 형태로 각 금융기관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되 보험료율은 0.036% 임.

o 한편 현재 JDIC의 자본금 및 준비금 잔액은 다음과 같음.

- 자본금은 '99. 10월 현재 54.55억엔이며, 이중 一般計定이 4.55억엔, 住專計定이 50억엔임.
- 보험금 지급 및 자금지원 등의 재원인 책임준비금은 지난 '95.3월말까지는 약 8,760억엔 이었으나, 그후 대형 금융기관의 파산으로 급속히 감소하여 '99. 3월말 현재 △1조 1,876억임.

o JDIC의 준비금 부족액은 보험료수입외에 사용목적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서 자금차입 등으로 보전되어짐.

- 보험금지급, 예금등채권매입, 자금지원등을 위한 경우 일본은행 및 금융기관 차입(한도 2조엔)이 가능함.
- 특별자금지원의 경우 일본은행 및 금융기관 차입(한도 10조엔) 및 국채발행(한도 7조엔) 등이 가능함.
- 이외 추가적인 자금필요시 예금보험기구채권 발행도 가능함.

---

29) 특별보험료는 '86.6월 법개정시 향후 2001년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예금등 채권의 특별매입, 특별자금지원, 특별업무 시행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과된 것으로 보험료율의 수준은 법 시행령에서 정함.

30) 개정전의 예금보험료의 보험료율은 0.012%임.

Ⅲ. 保險産業의 保險契約者 保護 裝置

1. 우리나라의 保險契約者 保護裝置

o 보험산업내 보험계약자의 권익보호와 관련한 제도적 장치로는 첫째, 감독기관(금융감독원)에 설치·운용되고 있는 보험계약자 보호예탁금 제도와 둘째, 현재는 예금보험제도에 통합운용되고 있는 보험보증기금(舊) 제도가 있음.

o 동제도들은 보험시장 개방과 관련하여 지난 '88년의 보험업법 개정시 도입되었으며, 그후 '89. 4월에 신설되었음. 도입 이유는 보험시장의 본격적인 대내·외개방 추진에 따라 경쟁심화에 따른 보험회사의 도산 가능성의 우려가 높았고, 이에 따라 보험산업의 신뢰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 장치가 필요했기 때문임.

가. 保險契約者 保護預託金

o 보험계약자 보호예탁금 제도는 기본적으로 신설 보험회사의 사업초기 경영부실로 인한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한 것임.

- 현재 보험업법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보호예탁금 규모는 설립당시 납입자본금의 30%~50%에 해당하는 금액중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정하는 비율(30/100)의 금액을 현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금융감독원에 예치하여야 함.
- 대부분의 신설사들은 당시 납입자본금 (100억원)을 기준으로 30억원, 또는 일부 외국사들은 9억~60억원을 예치하였음.
- 현재 '98.1월 기준으로 운용수익을 포함하여 총 2,033억원에 (생명보험 : 2,003억원, 손해보험 : 29억원)이르고 있음.

<표 8> 연도별 보험사업자 보호예탁금 납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탁일자	예탁원금	운영수익	운용금액
생명보험	'89~'93년 *	80,180	120,169	200,349
손해보험	'89~'91년	1,362	1,563	2,925
합 계	-	81,542	121,732	203,274

(주) * 단, AIA생명은 '97년 1월

<출처> 보험감독원, 「보험감독원20년사」, 1998.3, pp.284~285

o 보험계약자 보호예탁금은 개별 보험회사에 따라 다음과 같은 예탁금 반환사유가 발생시, 운용수입과 함께 원리금이 반환됨.

- 책임준비금의 충실한 적립이후 이익금 발생시
- 보험사업자의 해산시
- 외국보험사업자가 국내에서 인가받은 보험사업의 폐지시
- 기타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반환이 필요할 시

o 실제로 '98년말까지 보호예탁금의 반환사례는 총 9건으로 외국보험사업자의 철수 3건, 생보사의 해산(퇴출) 4건, 보증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재원 2건 등임.

o 최근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과 관련하여 예금보험제도와의 일부 중복성을 근거로 보험계약자 보호예탁금제도의 폐지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그러나 동제도는 보험보증기금과는 달리 신설 보험회사가 사업초기에 도산위험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존재하는 별도

의 보호장치 제도로 해석되어야 함.

- 향후 보험시장 진입·퇴출의 자유화 추진시 예상되는 보험종목별 납입자본금의 차별화가 도입될 경우에 현행 최저 납입자본금(300억원)보다 적은 규모의 자본금으로 무리한 영업 추진시 과거에 비하여 도산위험이 더 증가하므로 동제도의 필요성이 더 높아질 것임.[31]

나. 保險保證基金 制度

o 보험보증기금이란 보험회사의 파산 등 지급불능시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에게 보험금 및 제지급금의 지급을 보장함으로써, 보험산업의 공신력 제고 및 안정적 발전을 도모한 것임.[32]

- 보험보증기금은 향후 예상되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보험사업자가 출연한 기금임. 따라서 보험사업자의 개별자산으로서 일정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반환되는 보험계약자 보호예탁금과는 전혀 성격이 다름.

---

31) 최근 보험사업허가 제도의 법률개정과 관련하여 현행의 일괄허가 방식에서 그룹별허가 방식으로의 전환이 적극적으로 검토중임. 보험사업 허가시 고려되는 종목별 시장점유율 및 지급여력비율 달성 등을 감안할 때, 현재 검토중인 방안으로는 생명보험의 경우 현재와 마찬가지로 단일그룹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으나, 손해보험의 경우 일반손해보험과 자동차보험, 장기보험 등 3개 그룹으로 구분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이 경우에 허가종목에 따라 최저납입자본금의 규모도 하향조정 가능성이 높으며, 결국 사업초기의 위험도도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보호예탁금 제도의 필요성이 높아질 것임.

32) 보험보증기금에 대한 사항은 지난 '97. 12월 예금자보호법 개정이후 '98. 1월 보험업법 개정시 관련 법규가 삭제되었음. 그리고 현재 동기금이 예금보험기금에 통합되어 있으나, 본보고서에서는 제Ⅳ장에서 다룰 예금자보호법 개정시 추진될 예금보험기금의 개정 방향과의 비교를 위하여 통합이전의 보험보증기금 제도로 운영되었던 상황중 일부 주요내용을 취급하기로 함.

o 당시 동제도는 재보험 및 보증보험을 제외한 전 보험사업자를 대상으로 하여, '89년 4월 1일이후 체결된 보험계약중 법인계약을 제외한 개인보험 및 가계성보험 계약이 해당됨.

- 따라서 재보험사 및 보증보험사는 출연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대상 보험계약에서도 제외되었으나, 지난 '97.12월에 향후 2000말까지 한시적으로 보증보험 및 법인계약도 포함되도록 개정되었음.

o 보험보증기금의 재원은 보험사업자의 출연금, 정부 출연금, 기타 수입금으로 구성되지만, 보험사업자 출연금이 대부분을 차지함.

- 보험사업자 출연금은 당시 보험업법에서 직전 사업년도 수입보험료의 1%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보험감독관련 보험예규상의 "보험보증기금의 조성에 관한 지침"(보험 45400-228, '93. 10.21)에서 명시한 바 있음.

o 보험사업자의 출연금[33]와 관련하여, 보험사업자의 표준출연율은 직전사업년도 수입보험료의 0.1%로 하고 설립경과년수, 재무상태의 건전성에 따라 각 보험사업자별로 다음의 <표 9>에서 처럼 부분적인 차등요율을 적용[34]한 바 있음.

33) 즉 현재 통합 예금보험기금의 예금보험료에 해당함.

34) 당시의 표준출연율에 대한 차등 적용은 현재 예금보험기금의 예금보험료 차등화방안에서 의미하는 차등요율과 다소 차이가 있음. 당시의 차등화 방법은 준비금적립상태를 반영하는 K율 수준에 의거하여 소폭의 차등화율(0.005%p)을 적용하였음. 다만 기본적인 형태는 현재 논의 중인 예금보험료 차등화 방안, 즉 지급여력 및 재무건전성 수준에 의한 차등화라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음.

<표 9> 보험사업자별 보험보증기금(舊) 출연율

구 분		보험료 출연율
사업경과 10년이상 및 누적결손이 없는 경우	인보험(생명보험) 보험사업자	o K율에 따라 출연율을 조정하였음. (0.1% - K율 * 0.005%), o 단, 최저한도 출연율 비율은 0.095% 임.
	손해보험사업자	o (0.1% - [(5 - 연간 보유보험료 총액 / 보험계약자잉여금) * (1/3)] * 0.005%, o 단, 최저한도 출연율 비율은 0.095% 임.
사업개시연도 10년차 미만		o 0.105%

(주) K율이란 생명보험 보험계약준비금의 계산중 보험료적립금에 대한 적립수준을 반영하는 것으로, K율 100%는 순보험료식 준비금적립을 의미하며, K율 0%는 해약환급금식 준비금 적립을 의미함.

K율 = (실제 적립준비금 - 해약식 준비금) / (순보식준비금 - 해약식 준비금)

o 실제로 제도도입이후 각 보험사업자의 보험보증기금 출연규모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35)]

<표 10> 연도별 보험보증기금 출연금 규모

(단위 : 백만원)

구분	'89년	'90년	'91년	'92년	'93년	'94년	'95년	'96년	'97년	소계
생명보험	3,974	4,305	8,568	12,670	16,807	18,798	22,117	26,962	27,239	141,440
손해보험	573	1,205	1,865	2,736	3,836	4,403	5,553	7,741	9,958	37,871
합계	4,547	5,510	1,0433	15,406	20,643	23,201	27,671	34,703	37,197	179,311

<출처> 보험감독원, 「보험감독원 20년사」, 1998.3, pp.287~288

35) '98.12월말 기준으로 보험보증기금 적립액은 운용실적을 포함하여, 생보사 2,764억원 및 손보사 747억원으로 총합계 약 3,511억원임.

o 보험보증기금에 의한 보전금[36] 지급은 '89년 4월 1일 이후 체결된 가계성 및 개인보험을 대상으로 하였음.

o 보전금의 규모는 지급사유 발생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시에는 보상금액으로 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생명보험은 해약환금급, 손해보험은 미경과보험료로 하였음.

o 보전금의 최고한도는 1인당 5천만원으로 하였으며, 다만 보험사업자의 추가 출연으로도 보전금 전액을 지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경원장관의 승인을 얻어 감액 지급할 수 있었음.

o 한편 보험보증기금만으로 보전금의 지급이 불충한분 경우 추가출연할 수 있으며, 반대로 출연금의 납부로 보험사업이 현저하게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거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조항을 설정하였음.[37]

---

36) 보전금이라 함은 감독원장이 보험보증기금위원회의 심의를 걸쳐 보험사업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수취할 자에게 지급할 보험금 또는 제지급금에 갈음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보증기금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함. 이는 현행 예금보험기금 제도상의 부보금융기관의 보험사고발생시 지급되는 보험금과 동일함.

37) 보전금 부족시 추가출연에 대한 조항 및 경영위험 초래시 출연금 납부 유예 조항은 현행 예금보험기금의 시행령 제14조 2항, 4항에서도 찾아볼 수 있음. 다만 과거 보험보증기금 또는 현행 예금보험기금에서 취급하고 있는 추가출연에 대한 사항은 향후 예상되는 사후갹출제도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
즉 추가출연에 대한 규모 자체가 기존의 사전갹출제에 의한 보험료를 상회할 수 없다는 조항을 가지고 있으나, 향후 예상되는 사후갹출제의 보험료는 이와는 별도로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별도의 갹출보험료임.

2. 外國의 保險契約者 保護裝置

가. 美 國[38]

1) 契約者 保護預託金 制度

o 뉴욕州 계약자 보호예탁금(deposits)의 설치근거는 다음과 같음.
- 본주에서 사업인가 면허를 받기 이전에 보험사업자별, 보험종목별로 일정수준의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유가증권으로 예치해야 함.
- 생보사 및 손보사에 관계없이 보험사업자(법인) 설립 신청후 해당주의 보험감독관으로부터 본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한다는 통보를 받았을 경우, 법률이 요구하는 금액의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감독관에게 예탁하는 것임.
- 단, 예치된 유가증권의 적격성 여부와 관련하여 법에서 명시한 채권[39]의 현재 시장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추정된 유가증권 금액으로 함

o 한편 보호예탁금의 운영주체에 대해서는 법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보호예탁금에 대한 소유권과 관련하여, 예치금(deposits)은 본 조항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사업자는 예치된 유가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에 대하여 권리를 갖지 못함. 따라서 법률상으로 보험감독청에서 소유·보관하는 것으로 판단됨.

---

38) 뉴욕주 보험업법에 근거하여 정리하였음.
39) 법 제1402조 b항1,2에 따르면 최저자본금 및 잉여금의 60% 이상이 투자된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국공채

o 계약자 보호예탁금 규모는 보험사업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음.

- 생명보험의 경우 주내 생보사의 경우 최소규모는 $10만임. 단, 1982년 7월 1일이후에 최초 면허를 받은 회사는 $20만임.
- 손해보험의 경우 여러 보험종류중 어느 하나를 영위할 때는 $50만, 또는 면허종목에 대해 요구되는 납입자본금 및 최저잉여금중 작은 쪽의 금액을 예탁하여야 함. 단, 보험종류중 복수의 종목을 영업하는 손보사 (주식회사)는 최저 $40만임.
- 재보험 또는 해외물건의 인수를 하는 경우는 $300만 이상이 요구됨.

o 예탁금의 지급반환 사유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정되어 있음.

- 예치 유가증권의 총시장가액이 법에서 요구한 금액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 보험감독관은 초과한 금액내에서 예치된 유가증권을 반환할 수 있음.
- 보험사업자의 필수 예치금액의 총시장가액이 미국내 미지급부채를 포함한 지급준비금 총금액의 200%를 상회하거나, 또는 향후 미국내에서 신계약모집을 중지할 경우에 동기준을 초과한 범위내에서 예치 유가증권을 반환할 수 있음.

2) 保險保證基金 制度

o 미국의 보험보증기금 제도는 聯邦정부 차원의 은행권에 대한 예금보험공사(FDIC)와는 별도로 州정부 차원의 제도적 장치로서 보험계약자를 위한 별도의 보호제도임.

o 현행 미국의 보험보증기금 제도의 기본 구조는 全美保險監督官協議會(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Commissioners)가 지

난 ‘69년(손해보험)과 ’70년(생명보험)에 채택한 보증협회모델법(Guaranty Association Model Act)에 근거하고 있음.[40]

o 동모델법에 근거하여 손해보험 및 생명·건강보험 각각 현재 대부분의 州에서 별도의 비영리 민간법인 형태로 보증협회(Guaranty Association)가 설치 운용되고 있으며, 보험사업자는 인가시 동협회의 회원이 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음

- 손해보험 보증기금의 전국 단체로 전미 손해보험보증기금협회 NCIGA(National Conference of Insurance Guaranty Funds)와 생명보험 보증기금의 전국단체로 전미 생명·건강보험보증기금협회 NOLHIGA (National Organization of Life and Health Insurance Guaranty Association)이 각각 있음.

o 보증협회의 산하에 손해보험과 생명·건강보험으로 구분되어 별도의 보험보증기금이 대부분의 모든 州에서 운용되고 있음.

- 손해보험의 경우 지난 ‘69년~’74년 사이에 47개주에서 비영리 손해보증기금이 법안이 만들어졌으며, 현재 52개주에 설치운용중임.
- 생명보험의 경우 손해보험보다 늦게 출범하여 ‘79년까지 겨우 20여개에 불과하였으나, ’83년 이후 급속히 증가하여 현재 52개주에서 설치운용중임.

---

40) 뉴욕주의 경우 지난 1941년에 최초로 생명·건강보험보증기금협회를 설립한 바 있으나, ‘60년대 후반 이후 당시 자동차보험의 지급불능으로 인하여 사회 관심화가 이루어졌음. 즉 ’60년대 자동차보험의 경영악화로 많은 손해보험회사가 도산하게 되자 NAIC는 1969년 손해보험 보증기금모델법 (Property & Liability Insurance Guaranty Association Model Act)을 채택하였고, 1970년에는 생명보험에서도 생명·건강보험 보증기금모델법(Life/Health Insurance Guaranty Association Model Act)이 채택되었음.

o 보험보증기금의 보전방법은 어느 州의 특정 보험회사가 지급불능(insolvent) 상태에 있거나, 재무불건전(financial impaired) 상태의 경우 보전행위가 이루어짐. 보전행위는 보증(guarantee), 포괄인수(assume), 재보험(reinsurance)로 대별할 수 있음

- 불건전회사는 해당 보험사업자가 계약의무를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해당 州정부 보험감독관이 판단하거나, 법원에 의한 법정관리 및 재건(rehabilitation) 상태에 있는 회사를 의미함.
- 불건전회사를 보전대상으로 하는 주된 이유는 해당 보험사의 완전한 파산(insolvency) 이전에 보전을 함으로써 비용을 줄이기 위함임
- 지급불능회사는 법원에 의한 청산절차는 밟는 회사를 의미함

<표 11> 미국 보험보증기금의 보전행위

구 분	보 증	포괄인수	재보험
내 용	보험회사가 지급 의무를 이행할 수 없을 경우 보증협회가 이를 부담함	보험계약을 매각 또는 이전하는 것을 의미함	재보험협정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에 대해서 장래 발생하는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재회사가 보전함
보증자·인수자·수재자와 보험계약자와의 관계	보증자는 보험계약자 에 대해 직접 책임을 짐	인수자는 보험계약자 에 대한 직접 책임을 짐	수재회사의 보전의무는 출재회사에 대한 것이고 보험계약자에 대한 직접적인 부담은 아님

o 보험보증기금이 손해보험과 생명·건강보험으로 양분되어 있고, 각 보증기금의 형태 및 운용이 州마다 다소 차이가 있음. 각 보험보증기금의 운용형태는 다음과 같음.

가) 損害保險保證基金[41]

o 보증기금내의 계정(account) 구분 형태 :

- 대부분의 州[42]에서 근로자재해보상(worker's compensation) 보험, 자동차보험, 기타보험 등으로 구분한 3개의 별도계정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일부 州[43]에서는 단일계정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2개 계정 또는 4개이상의 계정으로 구분한 州[44]도 상당수 있음.

o 보호대상 및 보전금 한도규모 (maximum claims) :

- 거의 모든 州에서 통상 해상보험(marine insurance), 신용보증보험(surety and credit insurance), 재보험, excess & surplus insurance 보험 등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됨. 또한 이외에도 일부 州(18개주)에서는 불법배상책임보험(punitive damages)을 보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대부분의 州[45]에서 근로자재해보험(worker's compensation : 전액보장)을 제외하고, 1인당 최고한도액은 평균 $30만이며, 일부 州는 최고 $15만 또는 $50만로 제한하고 있음.[46]

- 또한 일부 州(25개주)에서는 계약자의 순자산가치가 일정금액

41) '98. 7. 1일 기준이며, 세부사항은 <부록5>의 주별 손해보험보증기금 참조
42) 총 52개주중 California주, Georgia주 등 21개주
43) 총 52개주중 New York주, Delaware주, Massachusetts주 등 16개주
44) 2개의 계정구분은 Illinois주 등 8개주, 4개의 계정구분은 Maryland 등 4개주, 5개의 계정구분은 Michigan주 등 2개주, 6개의 계정구분은 Wisconsin주임.
45) Florida주 등 일부 주(10개주)에서는 근로자재해보험의 경우 separate state fund에서 보전하거나, Arkansas주는 보전금 최고한도 규정을 동일 적용하거나, Michigan주에서는 일정금액을 공제한 후 보전하는 조항을 두고 있음.
46) 단, 뉴욕주의 경우 1계약당 $100만~$500만 수준임.

이상[47]인 경우에 면책조항 또는 제3자 배상책임보험의 경우에는 보증기금 보전금이 회수가능하다는 조항을 적용하고 있음.

o 보험보증기금의 갹출 (assessment) :

- 보증기금의 갹출료 납부방식은 전체 52개주중 뉴욕州의 사전갹출방식(pre-assessment guaranty fund)[48]을 제외하고는 모든 주에서 사후갹출방식(post-assessment guaranty fund)을 적용하고 있음.
- 어느 州에서 특정 보험회사가 지급불능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州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나머지 보험회사가 지급불능 보험회사의 보험지급금 부족분을 각 보험사의 시장규모(원수보험료 : direct premium written 기준)에 따라서 할당받으며, 동 금액을 보증기금에 납부하게 되는 것임.
- 한편 연간 갹출료 최고한도는 대부분의 州에서 직전 사업연도 원수보험료의 약 1.0~2.0%로 제한하고 있음.[49]
- 그러나 보증기금 갹출료에 대해서는 모든 州에서 여러 형태로 공제조항(recoupment)을 두고 있음. 보험료 공제형태는 보험료세 공제(premium tax offset), 또는 계약자로부터의 보험료 추징(premium surcharge), 혹은 이 두가지를 혼합한 형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음.[50]

---

47) 대부분 순자산가치 $5,000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일부 주의 경우 $1,000만 또는 $2,500만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

48) 단, 보험보증기금의 적립액이 $2억 이상의 경우는 갹출중지, $1.5억이하의 경우에는 해당 부족분만큼 사후적으로 추가 갹출함.

49) '95년말 기준으로 손해보험 보증기금 갹출액의 순적립액 총액은 $56.8억임.

50) 실제로 지난 1995년 한해동안에 할당된 총갹출금액은 $2억 6,600이었으나, 각종 공제방식에 의해 환급된 금액을 제외한 순수한 갹출규모는 $6,660만임.

나) 生命·健康保險保證基金[51]

o 보증기금내의 계정(account) 구분 형태 :

- 대부분의 州에서 생명보험(Life Insurance), 건강보험(Health Insurance), 연금(Annuity) 등으로 구분하여, 州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이상 3개의 분리계정 형태로 운용하고 있음. 단, 일부의 州[52]에서만 확정갹출형 퇴직연금(defined contribution plan) 또는 별도의 일반계정(general account)을 분리함으로서 4개의 계정을 가진 보증기금 형태도 있음.

o 보호대상 및 보전금 한도규모 (maximum claims) :

- 보증기금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표적인 보험은 변액보험(variable life)처럼 계약자가 전적으로 리스크를 부담하는 보험과 일부 재보험등이 있음.
- 이외에 비할당연금(unallocated annuities)[53]의 경우에 일부의 州에서만 보증기금의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54], 나머지 州에서는 보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대부분의 州에서 급부금형태 및 보험종류별로 세분화하여 차별화하고, 동시에 보전금 총지급액의 상한선을 설정하고 있음.
- 즉 생명보험의 사망급부금은 $30만[55], 적립금(해약환급금)은

51) '96. 12. 31일 기준이며, 세부사항은 <부록5>의 생명보험보증기금표 참조
52) 총 52개주중 Louisiana주 등 3개주
53) 즉 계약이 개인에 의해 소유되지 않는 연금계약으로서 소위 보증부투자계약(Guarantees Investment Contracts : GICs)에 투자된 퇴직기금(pension fund)의 형태를 총괄하여 비할당연금계약이라고 함.
54) 총 52개주중 New York주, Minnesota주 등 23개주에서만 보증기금의 보호대상임. 그러나 동23개주에서도 전액보상이 아니고 평균 계약자 1인당 $500만이며, 이중 몇몇 주의 보상한도액은 최저 $100만(Alkansas주, NewYork주)에서 최고 $750만(Minnesota주) 등 다양함.
55) 단, New Jersey주 및 Washington주의 경우는 $500,000임.

$10만이고, 건강 및 고도장애보험의 급부금은 $10만[56], 연금보험의 급부금은 $10만~$30만로 한정하고 있음. 한편 모든 州에서 전체 보전금의 규모를 보험계약 건수에 관계없이 1계약자당 약 $30만~$50만로 제한하고 있음.

o 보험보증기금의 갹출 (assessment) :

- 보증기금의 갹출료 납부방식은 손해보험 보증기금과 달리 모든 州에서 사후갹출방식[57]을 적용하고 있음.
- 즉, 어느 州에서 특정 보험회사가 지급불능 발생 및 이에 준하는 재무위험에 처했을 경우, 해당 州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나머지 보험회사가 보험지급금 부족분 또는 필요지원금을 각 보험사의 시장규모(통상적으로 수입보험료 기준)에 따라서 할당하여, 보증기금에 납부하게 되는 것임.
- 다만, 갹출료의 최고한도는 대부분의 州에서 연간 수입보험료(premium)의 2.0%[58]로 제한하고 있음.[59]
- 그러나 보증기금 갹출료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州[60]에서 손해보험보증기금에서처럼 여러 형태로 공제조항(recoupment)을 두고 있음. 공제형태는 州보험료세 공제(premium tax offset), 또는 계약자로부터의 보험료 추징(premium surcharge), 혹은 이 두가지를 혼합한 형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음.

---

56) 단, New Jersey주는 건강 및 고도장애보험의 경우 별도의 상한 규정이 없음.
57) New York중의 경우 1985년 이전까지 사전부과방식을 따랐으나 그 이후에 사전부과방식으로 변경하였음. 일반적으로 사후납부금액은 크게 기금의 운영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경상비용 (1회사당 고정비용)과 실제적인 보전행위를 위한 충당금(수입보험료 비례제)로 구분됨.
58) 단, California주 및 Texas주 등 5개주는 1%이며, Rhode Island주는 3%임.
59) 지난 '91년말을 기준으로 생명보험 보증기금의 미국 전체 연간 갹출료규모가 약 $30억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60) 단, Washington주 및 Maryland주 등 7개주의 경우는 동조항이 없음.

나. 英 國

1) 契約者 保護預託金 制度

o 보험계약자 보호예탁금의 설치 · 운영 근거는 지난 1982년 보험회사법(insurance company law) 및 1994년의 보험회사 규칙(Rule)에서 명시하고 있음.

- 예탁금의 일부 혹은 전부를 현금 또는 인정유가증권(permitted securities)으로 해당 금액만큼을 예탁하여야 함. 다만 재보험에 한정된 보험사업만 영위하는 경우에는 예탁의무가 없음.
- EC역외 보험자에 대해 최저보증기금의 50% 이상을 최고법원 경리국장에게 공탁함을 의무화하고 있음.
- 통상산업부(DTI)장관은 공탁금의 금액을 변경할 수 있고, 최고법원경리국장으로 하여금 변경사항 이행토록 지시할 수 있음.

o 예탁금의 운영주체는 감독당국이 아니고 통상산업부내의 보험국(제1과)이며, 예탁금 운영과 관련 보험사업자에게의 제재 명령권은 통상산업부장관이 가지고 있음. 그러나 보호예탁금에 대한 소유권은 보험사업자에게 있음.

o 한편 보호예탁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통상산업부 장관의 명에 의하여 보험사업자에게 반환 지급됨.

- 예탁금 적립규모의 잉여금 발생분을 예탁자의 반환 신청시
- 보험사업자가 영국에서 보험사업을 중지하고 예탁금의 반환을 신청할 경우
- 예탁자의 재정파산시 기금운용인에게 지급되며, 예탁자가 법원 청산명령을 받은 경우는 예탁자인 보험사업자에게 귀속됨.

2) 保險保證基金 制度

o 현행 보험계약자보호제도의 근거법은 지난 1970년대초 다수의 中小보험회사 및 '74년 대형 보험사(National Life사)의 파산에 따라 보험계약자 보호 필요성이 대두되어, 1975년에 만들어진 보험계약자보호법(Policyholders Protection Act)임.

o 동법(제1조)에 따라 계약자보호제도의 운용기관으로서 보험계약자보호위원회가 설립되었으며, 위원회는 손해보험 및 생명보험 분야 모두를 관장함.

- 단, 손해보험 및 생명보험 각각의 별도계정으로 운용됨. 한편 동위원회의 업무는 첫째, 보험회사 파산에 따른 淸算의 경우와 둘째, 재무위험에 처한 경우에 따라 업무가 다름.
- 보험계약자보호법은 그후 1997년에 대폭적인 개정[61]을 하면서 현재의 형태를 확보하였음.

o 보호대상 보험계약의 범위 :

- 보호대상의 구체적인 포함 여부의 판단기준은 계약상의 리스크 또는 책임이 소재하는 장소, 보험회사 국적 등에 의해 결정됨.
- 즉, 손해보험의 경우는 보험가입시의 보험계약자의 주소(개인) 또는 사업장소(법인). 단, 家屋保險이나 家財保險은 건물의 소재지역,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의 등록장소, 4개월 이내의 휴가보

61) 법개정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기존의 계약자보호법에 의하면 영국 자국민 이외에 영국 보험회사가 판매한 보험의 계약자를 포함하여, 손해보험의 경우 법인 보험계약자 및 법인 파트너쉽 관계자까지 포함됨으로써 발생된 거액의 갹출금 부담이 문제화되었기 때문임. 실제로 갹출금 수준이 '92년이전에는 £250만 수준에서, '92년 £3,790만, '93년 £8,050만, '94년 £17,000만 등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보험업계의 불만이 고조되었음.

험은 가입장소등이 기준이 됨. 생명보험은 개인의 경우 계약자의 주소, 법인의 경우 법인체의 사업소재지가 기준이 됨.

- 현재 보험계약자 보호대상에 포함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① 영국내 영업지점을 통해 영국 보험회사에 의해 발행된 보험계약으로 리스크 또는 보험책임이 EEA국가[62], Channel 群島 또는 Man島에 있는 경우

② 他 EEA국가의 영업지점을 통해 영국 보험회사에 의해 발행된 보험계약으로 리스크 또는 보험책임이 영국에 있는 경우

③ EEA국가의 영업지점을 통해 EC국가 보험회사에 의해 발행된 보험계약으로 리스크 또는 보험책임이 영국에 있는 경우

④ Channel群島 또는 Man島의 영업거점을 통하여 영국의 보험회사에 의해 발행된 보험계약으로 리스크 또는 보험책임이 영국, Channel群島 또는 Man島에 있는 경우

o 계약자보호위원회의 실질적인 대응조치는 첫째, 보험회사 파산에 따른 청산의 경우와 둘째, 재무위험에 처한 경우에 따라서 보전규모 등 세부적인 보전방법에서 차이가 있음.

- 첫째, 보험회사 파산에 따른 청산의 경우 위원회의 대응 조치

① 손해보험의 경우 강제보험(자동차보험, 사용자책임보험 등)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자의 파산 보험회사에 대한 우선 청구권의 100% 전액을 보상하며, 非强制保險(임의보험)에 대해서는 90%까지만을 보상함.

단, 보호대상은 개인 보험계약자와 20인 미만의 파트너쉽(partnership) 법인에 한정됨.

62) 유럽경제연합(European Economy Area)으로 동연합에는 현재의 유럽연합(European Union)의 가입 15개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2개국, 기타 1국가 등 총 18개국가가 소속되어 있음.

② 생명보험에 대해서는 보험사 파산시 지급사유가 발생한 보험계약 급부액의 90%를 보상하며, 단 위원회가 보전 급부액이 과다하다는 판단할 경우에는 삭감도 가능함.
한편, 청산개시시 계속된 생명보험 계약의 지속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해당 생보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생명보험사에 이전시키거나, 기존계약에 대신하여 타보험회사와 신규계약 체결을 확보하는 경우도 있음.

- 둘째, 보험회사가 재무위험에 처했을 시 동위원회의 대응조치[63]는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의 구분없이 재무적으로 곤란에 처한 보험회사에 대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전제로 재정지원을 해줌. 다만, 동조치를 시행하는 데 있어 동위원회는 보호되는 계약에 대해서 보전금지급의 연기 또는 계약상의 급부금의 삭감(예: 생명보험의 경우 최고 90%)등을 전제로 하고 있음.

o 계약자보호기금의 갹출 (levy) :
- 위원회는 필요한 자금확보를 위해서 보험회사 및 생명보험중개자(intermediary)에 대해서 사후부과방식으로 자금을 갹출함.
- 보험회사의 경우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양측에 대해서 갹출금을 부과하지만 중개자의 경우는 생명보험에 한하며, 다만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의 갹출금은 별도로 계정 관리함.
- 부과되는 갹출금의 계산은 수입보험료(net premium)를 기준하여 부과하며, 동위원회는 필요시 자금차입[64]도 가능함.

63) 재정곤란에 처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조치, 즉 타보험회사로의 사업이전 및 사업계속을 위한 보험회사의 자금원조 등은 무역산업장관(DTI)이 동위원회를 지휘하여 수행됨.

- 갹출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수입보험료 규모 산정은 다음과 같이 개별적으로 세분화하고 있음. 그 이유는 수입보험료 계산[65]에 있어서 보험회사의 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임.

① 영국 면허를 받아 영국에서 보험업을 하는 경우[66]

② 영국외 EC국가 면허를 받고 영국에서 보험업을 하는 경우[67]

③ 영국외에서 영국으로 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경우[68]

- 각 보험회사의 갹출금 납부액의 상한 수준은 다음과 같음.

① 손해보험사의 경우는 수입보험료의 0.8% 이며, 생명보험의 경우는 수입보험료의 1.0%

② 단, 무역산업부장관(DTI)은 갹출금의 산정근거가 되는 수입보험료의 최저액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게 됨.
따라서 최저액을 초과하는 회사에 대해서만 일정비율을 곱한 갹출금이 부과되고, 만약 해당년도 수입보험료가 동최저액 수준을 하회하는 보험사는 갹출금납부 면제도 가능

---

64) 현재 차입금액의 한도액은 £4,000만 (개정전 최고액 £1,000만) 임.

65) 보험법 개정전에는 갹출금 산출기준인 수입보험료(net premium income) 계산시 총보험료에서 리베이트료, 반환금(refund) 및 재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였으나, 법개정후에는 재보험료는 차감하지 않토록 하고 있음. 또한 기존의 갹출금납부를 사업종료후 1개월내 일시납으로만 납부하도록하였으나, 현재는 분할납을 허용하고 있음.

66) 즉, 영국내의 보험, Man島 또는 Channel群島의 영업지점에서 발행되어 영국, Man島 또는 Channel群島에 리스크 또는 보험책임이 있는 보험, 영국이외의 EEA국가에 있는 영업지점 통하여 발행되어 영국에 리스크 또는 보험책임이 있는 보험

67) 즉, 영국의 보험, 영국이외의 EEA국가내에 있는 영업지점을 통하여 발행되어 영국에 리스크 또는 보험책임이 있는 보험

68) 즉, 리스크 또는 보험책임이 영국에 있는 보험

다. 日 本

1) 契約者 保護預託金 制度

o 지난 '96년 보험업법 개정시 폐지되었음. 그러나 외국계보험회사에 대해서는 보험업법 제190조의 "供託" 조항에 의거 일본내의 보험사업 사업허가시 예탁금을 예치하도록 하고 있음.

- 외국계 보험사업자는 2억엔이며, 단 조건부면허생명보험사업자는 1천만엔임.[69]

2) 保險保證基金 制度

o 현행 제도는 지난 '98.12월 기존의 보험계약자보호기금 제도를 개편한 것[70]이며, 기존의 계약자보호기금은 동기구로 흡수됨.

- 새로운 보험계약자보호기구 (1998. 12. 1일부 시행)는 손해보험 및 생명보험 機構를 각각 별도의 인가법인 (민법상 公益法人)으로 설치하였음. 동제도는 과거 보험계약자보호기구와는 달리 모든 보험회사의 강제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음.

o 현행 계약자보호기구의 운용구조는 크게 두가지로 구분되는데,

- 파산 보험회사에 대한 救濟보험회사가 존재할 경우, 구제보험회사 측으로 보험계약을 포괄이전하고, 同機構에서 구제보험회사측에 자금을 지원함.
- 파산 보험회사에 대한 救濟보험회사가 없을 경우, 同機構에 보험계약을 포괄이전하여, 해당 보험계약의 지속 유지를 추진함.

---

69) 보험업법 시행령 제24조~제35조 참조

70) 기존의 보험계약자 보호기금의 최고 적립한도가 2,000억엔 이었으나, 지난 '97.4월 日産생명의 파산(총초과부채 규모 3,029억엔)시 모두 사용하였음.

<표 12> 일본의 생명보험 보험계약자보호기구

구 분		2001년 3월말까지 (경과조치기간)		2001년 4월 1일이후
대상계약 및 보상내용	개인연금보험 재형연금보험	100% 보상		90 % 보상
	개인보험 단체보험	· 사망보험금, 입원금부금 · 해약환급금	100%보상 “ 90% 보상	
	단체연금보험	· 90% 보상		
업계부담	연간 부담액	右記금액 (600억엔/년) + 60억엔의 특별부담금(운용경비)		600억엔/년 (日産生命分 250억엔 포함)
	사전적립한도액	4,000억엔 (동금액 이상의 경우 향후 재결정 예정)		
	機構의 借入限度額	右記금액(4,000억엔) + 600억엔		4,000억엔으로 잠정결정

<표 13> 일본의 손해보험 보험계약자보호기구

		2001년 3월말까지 (경과조치기간)		2001년 4월 1일이후
대상계약 및 보상내용	지진(가계성),자배책	100% 보상		
	화재(개인 및 중소기업), 자동차, 상해보험, 개호비용, 의료비용	· 보험금 · 연금 및 재형적립금 · 책임준비금·해약환급금	100% 보상 100% 보상 90% 보상	90 % 보상
	상기 이외의 종류 (원자력,선박,항공,보증 등)	· 보험금 · 책임준비금·해약환급금	100% 보상결손율에 따라 보상	결손율에 따라 보상
업계부담	연간 부담액	右記금액(50억엔/년) + 15억엔/연특별부담금		50억엔/년(機構의 정관에 규정, 東京海上의 연간부담은 약 9억엔)
	사전적립한도액	500억엔 (연간부담액의 10배, 機構의 정관에서 규정)		
	機構의 차입한도액	右記금액(500억엔)+ 150억엔 총650억엔		500억엔으로 잠정결정 (단,시행령에서 규정, 사전적립액과는 별개)

o 분담금 갹출은 직전3개년(생명보험) 또는 직전년도(손해보험)의 보호 대상계약의 수입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함. 이중 定款에서 정한 가감항목 금액을 고려하여 해당년수로 나눈 후 각사별 차등 부담금율을 적용하여 산출함.[71]

- 부담금은 "∑P×부담금률(a) + ∑V×부담금률(b)"[72]式에 의함.
- 실제 각사의 부담금률은 계약보호기구의 총회에서 결정되지만, 그 방법은 보호기구 총자금에 대해서 수입보험료(∑P)에 의한 부담액과 책임준비금(∑V)에 의한 부담액이 동일하게 되도록 하여 부담금률 (a) 및 (b) 수준 및 각사의 갹출금이 결정됨.
- 단, 2001년 3월말까지는 회원 부담금률의 최저한도가 적용되는 바, ∑P의 부담금률은 0.197%(생명보험) 및 0.038%(손해보험) ∑V의 부담금률은 0.012%(생명보험) 및 0.007%(손해보험) 임.

o 한편 갹출도중 기적립액 보호자금의 부족시에는 기적립액을 우선 사용하고, 부족분은 중앙은행, 시중은행, 보험사로부터 機構에서 차입[73]한 공적자금으로 부족분을 처리하고 후일 변제함. 현재까지 부족분에 대한 사후갹출 계획은 마련되지 않았음.[74]

---

71) 보호기구에 납부하는 갹출금은 損金算入되어 법인세 소득공제에 포함됨.

72) 수입보험료 기준 및 책임준비금 기준의 각각의 실제 산출식은 다음과 같음.
(1-1) 생명보험의 ∑P (직전 3개 사업년도 기준) =
[수입보험료 - (책임준비금전입액 + 해약환급금 등 + 만기보험금·연금액, 단체연금 일시금 및 생존급부금) + (이자배당수입-지급이자)] ÷ 3
(1-2) 생명보험의 ∑V (직전 3개 사업년도 기준) =
[연도말책임준비금 - 위험준비금 + 출재보험에 관한 책임준비금] ÷ 3
(2) 손해보험의 ∑P (직전사업년도 기준)은 [수입보험료 - (환급금으로 정관에서 정한 금액)] 이며, ∑V (직전사업년도 기준)은 [연도말책임준비금 + 지급비금 + 사원배당준비금]

73) 보험업법 시행령상의 차입금 한도액은 계약자보호기구의 회원 연간부담금의 10배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

74) 단, 부담금 납부으로 건전경영이 어려울 경우에는 별도의 부담금률을 적용함.

Ⅳ. 預金者保護法 改正에 대한 綜合 檢討

1. 預金者保護法 改正 方向 및 主要 內容

가. 預金保險制度의 趨勢 및 國內 制度의 特徵

1) 預金保險制度의 機能과 國內 狀況

o 국내외 각국의 현황에서 처럼 예금보험제도는 일시적이고 외부충격적인 예금인출사태(bank run)에 취약한 금융기관을 보호함으로써 전체 금융시장의 안정을 유지하는 시스템임.

- 즉 각 금융기관간 경쟁 불공평성 제거[75]와 함께 저축증대 및 예금자에 대한 위험프리미엄 요구를 완화시킴으로써 전체 금융시장 및 경제 전반에 상당수준의 순기능을 제공함.

o 그러나 이와같은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이에 적절한 시장규율 및 규제·감독의 부재시에는 오히려 금융시장내 道德的解弛(moral hazard)를 가져와 오히려 금융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왜곡되는 역기능이 존재함. 즉 금융기관의 재무적 건전 등 경영개선 노력에 관계없이 예금보호가 됨으로써, 금융기관의 경영 및 예금자 예금행태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유인노력을 상쇄시킬 수도 있음.

- 실제로 금융기관 및 예금자가 예금보험제도의 보호하에서 오히려 고위험·고수익을 추구하는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음.

o 이에 따라 각국에서는 자국의 예금보험제도의 역기능을 최대한

75) 즉 예금보험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위험분산 노력(too big to fail)으로 인해 소형금융기관보다 대형금융기관, 민간금융기관보다는 국영금융기관으로의 일방적인 예금자선호가 발생되는 시장경쟁의 불공정성 등을 들수 있음.

억제하면서 순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국 금융시장의 특징을 감안하여 금융시장내 규제·감독을 강화시키면서 최대한 시장기능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특히 일부 선진국을 중심으로 금융종합화 및 국제간 금융거래의 확대로 자국의 예금자보호를 위해 예금자보호를 위한 제도운용 및 관련 시장규율을 강화해가고 있는 추세가 보편적임.

o IMF 외환위기 이후에 우리나라는 최근 들어서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과거와는 전혀 다른 패러다임이 구축되고 있음.

- 과거와 달리 기업 및 금융기관이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평가받는 시장규율(market principle)이 정착되고 있음.
- 특히 정부 및 감독당국의 입장도 과거의 실질적인 보호기능보다는 시장규율에 의한 판단 기능을 강화하고 있음.

o 또한 '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어 현재 성숙기에 접어든 금융종합화·국제화·증권화 등의 금융산업 혁신으로 인하여 금융시장내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고 경쟁도 심화되고 있음.

- 따라서 금융기관은 과거에 비해서 강도 높은 위험노출에 처함으로써 향후 리스크관리의 성공여부가 생존 척도가 되고 있음.
- 우리나라도 금리자유화의 정착단계 및 금융업무영역 조정 등 성숙단계를 맞이하고 있고, 특히 보험산업의 경우 내년초부터 가격자유화 4단계 실시 등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고 있음.

o 이러한 상황에서 IMF이후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추진중인 금융산업 구조조정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하여 예금자보호장치의 순기능 극대화가 주요과제로 등장하고 있는 것임.

2) 우리나라 預金者保護制度의 特徵 및 現況

o 국내 예금보험제도는 사전적인 금융시스템 안전망 기능보다는 한시적 예금보호중심의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체로 운용되었음.

- 금융기관의 건전성 노력에 관계없이 일정률의 고정보험료율 부과 체제하에서 예금이 전액보호됨으로써 금융기관 및 예금자의 도덕자 해이 또는 도덕적 위험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음.

o 또한 국내 예금보험제도의 운영기관인 예금보험공사의 주된 역할은 사고(부실) 금융기관의 처리 및 정상화기능 중심으로 업무가 이루어짐에 따라 狹義의 예금보험기능을 수행하여 왔음.

- 부실 금융기관의 정리방법 및 지원자금 회수과정에서 주도적 참여가 어려워 자금지원 최소화 및 자금회수 극대화가 곤란함.

o 이와함께 재원조달구조의 편중 및 예금보험기금의 부족으로 인하여 부실금융기관 발생시 적극적인 대처가 다소 미흡함.

- 예금보험재원의 충분한 축적이 없는 상황에서 IMF 외환위기로 인해 통합된 후,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을 대부분 예금보험채권과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발행에 의존하고 있음.

<표 14> 구조조정기금의 재원 조달 및 집행 실적

구 분 ('99.11 기준)	조 달	집 행	잔 액
예금보험기금채권	43.5	39.3	4.2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20.5	20.4	0.1
합 계	64.0	59.7	4.3

(주) 당초 예금보험기금채권 31.5조원,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32.5조원이었으나, '99.8월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12조원이 예금보험기금채권으로 이전되었음.

<출처>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의 현황과 과제」, 1999.12.16

o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 예금보험제도상의 현안 및 주요과제는 사전·사후적으로 적절한 재원확보 방안과 금융시장내 효율적인 운용을 통한 안전망 시스템으로서의 정착으로 요약됨.

- 지원자금 회수극대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부실금융기관의 청산인 및 파산관재인으로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안과 파산재단 및 부실정리금융기관의 자산 처분에 있어서 자산유동화 방법을 통한 신속한 자금확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투입자금의 최소화 방안으로서 기금보호 차원의 부보금융기관 경영위험에 대한 측정·평가 시스템구축이 요구되고 있음.
- 또한 구조조정 관련 지원자금의 원리금 상환 대책으로서, 한시적으로 예금보험료율의 상향조정 또는 별도의 추가적인 특별보험료의 징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예금보험제도의 구조적 단점의 방지 차원에서 도덕적위험의 최소화가 필요함. 이를 위해서, 금융기관의 경영위험을 측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차등보험료율제도의 도입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와함께 부실금융기관의 관련 임직원 등에 대한 책임추궁 및 배상책임 강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됨.

나. 預金者保護法의 主要 改正 方向

1) 基本方向

o 현행 통합 예금보험제도의 체제내에서 향후 재원확보의 충실화 및 도덕적해이 방지를 위하여 추진되는 가장 핵심적 사항이 예금보험제도의 금융업종별 분리화 및 보험요율의 차별화임.

- 예금보험료의 타금융업종의 사용 차단 등 금융업종별 분리화작업을 추진하고,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투입된 공적자금의 규모

에 따라 별도의 예금보험료(공적자금회수용 특별보험료) 도입

- 동시에 동일 금융업종내에서도 해당 금융기관의 신용등급에 따른 예금보험료율의 차별화, 즉 경영위험에 따른 신용등급의 차이에 의해서 반영되는 파산가능성의 확률에 따라 예금보험료율의 차별화[76](risk-rate premium system)를 추진함.

2) 差等預金保險料率 制度의 導入 方案[77]

[基本原則]

o 제도도입에 있어서의 기본원칙은 차등예금보험요율제도가 내포하고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도입함.

- 특히 제도도입의 여건이 구축된 금융권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계량지표 및 비계량지표 등의 자료획득이 어렵거나 자료의 투명성이 확립되지 않은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제반 여건이 갖추어진 후 시행함을 원칙으로 함.
- 단, 일부 미적용 금융권에 대해서는 동제도의 시행계획을 사전에 공표하여 해당 금융기관들이 미리 준비하도록 함으로써, 事前豫告效果(announcement effect)를 최대한 도모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되고 있음.

o 차등화근거의 지표로는 자본적정성, 자산건정성 등 재무비율을 기준으로 한 계량지표와 감독기관 경영평가결과의 비계량지표 및 예금보험공사의 경영위험평가 결과를 중심으로 활용토록 함.

- 예금보험요율 차등화지표가 감독당국의 경영평가, 적기시정조

76) 신용등급 우량회사의 보험료율이 신용등급 하위회사의 보험료율보다 낮음.
77) 예금보험공사, 「차등예금보험료율제도 도입방안」, 1999.5

치 등과의 중복 적용으로 부보금융기관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적기시정조치의 계량기준과 감독기관의 경영평가 결과 등을 차등화지표로 중점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중임.

o 도입초기에는 평가등급의 폭이나 보험료의 차등화 폭을 크게 하지 않고 제도의 정착 여부를 보아가면서 점진적으로 확대함.
  - 차등화단계는 각 금융업종별 대상 금융기관의 수, 부보금융기관에 대한 건전경영의 유인 강화 등을 고려하여 A^+, A, B^+, B의 4단계로 함.
  - 보험료 차등화폭은 초기에는 최하등급과 최상등급의 보험요율 차이를 30% 내외에서 시행토록 하되, 제도가 정착되어 예금보험기금이 확충될 경우 차등화 폭을 점진적으로 확대함.
o 평가등급 결정에 있어서 matrix를 이용한 미국방식[78], 복수지표별 기준점수를 가중평균하여 이용하는 캐나다방식[79]이 대표적이며, 국내 금융기관의 숫자 등을 고려할 때, 캐나다방식을 단순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고 있음.

o 한편 예금보험공사의 보험요율 산정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부보금융기관의 거부 및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부보금융기관

78) 미국식 matrix방식이란 본고 제Ⅱ장 2절 나. 1)미국의 <표 6>에서 처럼 미국 FDIC산하의 보증기금인 BIF와 SAIF의 차등보험료율 결정 방식으로서, 감독등급(CAMEL 등급)과 자본등급(자기자본 기준)을 평가지표로 각각 3단계로 나누어 matrix 형태로 총 9단계의 등급으로 최저 0%에서 0.27%의 차등보험료를 부과하는 평가방식을 말함.

79) 가중평균을 이용한 캐나다방식이란 본고 제Ⅱ장 2절 나. 2)캐나다 <표 7>에서처럼 캐나다 예금보험공사(CDIC)의 방식으로서 자본적정성, 수익성, 자산건전성, 감독기관 평가등급에 근거한 것임.

은 예금자보호법에 의거 벌칙 부과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함.[80]

[導入方案]

(1) 適用對象 金融圈

o 은행과 종금사는 개별 금융기관의 위험도가 금융시장내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여 차등예금보험요율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가장 큰 금융권이며, 특히 구조조정이 상당히 진전되어 차등예금보험요율제도 적용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o 증권회사의 경우 증권거래법 개정에 따라 고객예탁금 전액을 증권금융에 예치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증권회사에 대한 차등보험요율제도 적용의 의미가 상대적으로 현저히 약함.

o 보험사중 생명보험의 경우는 초기사업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 상당수의 국내 생보사들이 사업연도가 10년내외라는 점에서 예금보험료 차등화는 부실생보사의 경영압박으로 작용할 것임.

- 반면에 한편으로는 생보사들간에는 사전적으로 평가되는 위험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예금보험의 시장감시기능 차원에서 오히려 차등보험요율의 의의가 클 수 있다고 볼 수 있음.
- 한편 손해보험은 상대적으로 대부분의 회사가 사업연륜이 길고 증시에 上場되어 있고, 금번 구조조정 과정중 일부 회사가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후 증자 등을 통해 재무건실화를 추진한 바, 생명보험과 달리 제도 적용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80) 예를 들어서 미국 FDIC의 경우 연방예금보호법에 따라 지연 또는 허위보고가 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해당기간동안 1일당 2,000달러, 고의에 의한 경우에는 1인당 $100만 이하나 해당은행 총자산의 1% 이하의 자산중 적은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하고 있음.

o 상호신용금고의 경우 감독강화 등을 통한 회계장부의 신뢰성 확보 노력을 선행할 필요가 있음.

- 상호신용금고의 경우 대상금융기관의 수, 부보예금 규모 등을 감안하면 차등보험요율제도 도입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므로 회계제도의 투명성이 확보되는 대로 조속한 시일내에 시행하는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o 신용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여타 금융권과는 달리 소속조합원의 상호간의 공동유대라는 협동조합의 성격이 강하고 부실화의 가능성 정도가 상이한 직장조합 및 지역조합이 혼재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음.

- 또한 대상금융기관의 수가 많은 반면 기관별 부보예금 규모가 크지 않아 제도도입의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전산화 미비등 회계자료의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아 동제도를 조기 도입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o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에 대한 동일 적용 여부 및 시행

-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은 국내 금융기관 달리 적절한 계량평가지표를 취득하기 어렵고, 또한 국내금융기관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가 곤란함. 그 이유는 자기자본의 성격 차이로 BIS 비율[81] 즉 위험가중자산의 자기자본비율의 단순비교가 어렵기

---

81)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란 지난 1988년에 제정된 국제결제은행(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ant : BIS) 기준의 자기자본비율, 즉 총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gearing ratio) 규제방식과 같은 방식이지만, 자산의 신용도에 따라 자기자본 보유의무를 차별화하고 장부외거래(off-balance)를 포함하며, 연결기준에 의거 은행의 본지점외에 자회사의 업무도 포함됨.
위험가중자산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 x 100
= (기본자본 + 보완자본 - 공제항목) / ((∑연결대차대조표자산x위험가중

때문임.[82]

o 각 금융권 상황을 감안할 때, 예상되는 검토방안은 다음과 같음.

<第 1 案>

o 은행, 종금사, 보험사 (생명보험·손해보험 포함)부터 동제도를 우선 적용하고, 상호신용금고는 제도도입을 1~2년 미루며, 증권과 신용협동조합은 차등예금보험요율제도의 조기도입을 유예함.

<第 2 案>

o 은행, 종금사, 손해보험업부터 동제도를 우선 적용함. 단, 상호신용금고 및 생명보험업은 제도도입을 1~2년 연기하되, 증권 및 신용협동조합의 경우는 차등예금보험요율제도의 조기도입을 유예함.

(2) 施行時期 및 評價頻度

「施行時期」

o 금융기관들에게 적응기간을 제공하고, 평가지표 개발·전문인력의 확보 및 훈련·서면감사제도의 시행과 노하우 축적 등을 위하여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1999년중 동제도의 시행계획을 공포하되, 다음과 같은 두가지 방안이 고려되고 있음.

치)+(∑장부외항목 x 신용환산율 x 위험가중치)) x 100

82) 즉, BIS 비율의 자기자본 구성항목의 규정이 국가마다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임. 따라서 검토 가능한 방안으로는 외국 금융기관 국내지점에 대해서는 적정 평가지표 개발시까지 기준요율(고정요율)을 적용하는 것과 형평성 차원에서 母銀行의 자기자본 비율과 감독기관의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경영실태평가를 평가지표로 사용하여 차등요율을 적용하는 두가지를 검토할 수 있음.

<第 1 案>

o 은행, 종금, 보험(생·손보 포함)은 사업년도 기준으로 2000년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상호신용금고는 제도도입을 1~2년후로 함.

<第 2 案>

o 은행, 종금, 손해보험업은 사업년도 기준으로 2000년부터 시행하되, 상호신용금고와 생명보험업은 제도도입을 1~2년후로 함.

「評價頻度」

o 부보금융기관에 대한 평가 및 보험요율의 조정은 부보금융기관의 경영환경 변화를 적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실시

- 단, 제도도입 초기에는 평가자료의 획득가능성을 감안하여 직전 사업년도를 기준으로 년 1회 평가하여 보험요율을 결정함.

(3) 金融圈別 差等預金保險料 適用方案

< 銀行 및 綜合金融會社>

o 은행 및 종금사의 경우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BIS 자기자본비율),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결과(CAMEL)[83]와 예금보험공사의 경영위험평가결과를 활용함.

- 적용방법은 총4단계의 절대평가방식을 채택하되 BIS자기자본비율에 60%의 비중, 감독기관(금융감독원)의 경영평가 결과 및 예금보험공사의 경영위험평가결과에 각각 20%의 비중을 주어 종합점수를 산출 적용함.

---

83) CAMEL은 금융기관 경영에 대한 주요 평가항목으로서 미국의 은행권 경영평가 및 주요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평가의 대표적인 방식임. 세부항목은 자본적정성(Capital Adequacy), 자산건전성(Asset Quality), 경영관리능력(Management), 수익성(Earnings), 유동성(Liquidity)

- 다만, BIS 자기자본비율에 의한 평가기준의 경우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적용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10% 초과, 8~10%, 8% 미만의 3단계로 구분하고 각각 60점, 45점, 30점을 부여함.

<표 15> 은행 및 종금사의 예금보험요율 차등화방안

BIS자기자본비율		경영평가지표	총점	등급	보험요율
구분	배점				
10%초과	60	경영실태평가* : 20 경영위험평가** : 20	90점이상	A^+	기준요율× 80%
8~10%	45		80~89	A	기준요율× 85%
8%미만	30		70~79	B^+	기준요율×100%
			70점미만	B	기준요율×115%

(주)* 금감원에서 5단계로 평가한 경영실태평가를 20점 만점으로 단계별 점수화
** 예금보험공사에서 측정한 자본위험, 자산위험, 유동성위험을 20점을 만점으로 점수화

<생명보험>

o 보험회사의 경우 부실경영 판단의 기준으로 적기시정조치의 근거가 되는 지급여력비율[84]과 경영실태평가결과[85]를 포함하여 예금보험공사가 측정한 경영위험평가 결과를 활용함.

- 생명보험의 경우 지급여력비율을 기준으로 4% 초과, 0~4%, 0% 미만의 3단계로 구분하여[86], 각각 60점, 45점, 30점의 배점

---

84)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이란 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능력을 반영하는 지표임.
생보사 지급여력비율 = (∑지급여력) / (지급여력기준) x 100
단, 지급여력기준 = ((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 - 미상각신계약비) x 책임준비금위험계수 x 소정비율) + (위험보험금 x 보험위험계수)
세부사항은 [부록 3]의 생명보험회사 지급여력 관련 (감독규정) 참조

85) 세부사항은 [부록 4]의 "보험회사 경영실태평가 등 건전성 감독규정"중 경영실태평가 부분별 평가항목 및 배점 참조

86) <표 15>에서 제시하고 지급여력비율에 의한 구분 기준은 지난 1999.5월에

을 각각 부여하고 경영평가지표는 다단계로 40점을 부여한 후 종합점수에 따라 4단계로 평가함.

- 경영평가 40점은 금융감독원의 5단계 경영실태 평가에 20점, 예금보험공사에서 측정한 경영위험 평가를 20점으로 배정함.

<표 16> 생명보험회사의 예금보험요율 차등화방안

지급여력비율		경영평가지표	총점	등급	보험요율
구분	배점				
4%초과	60	경영실태평가* : 20 경영위험평가** : 20	90점이상	A^+	기준요율× 80%
0~4%	45		80~89	A	기준요율× 85%
0%미만	30		70~79	B^+	기준요율×100%
			70점미만	B	기준요율×115%

(주)* 및 ** <표 15>와 (주)와 동일

<손해보험>

o 손해보험의 경우 지급여력비율[87]을 기준으로 하여 250%초과, 100~250%, 100% 미만의 3단계로 구분하여[88] 각각 60점, 45점, 30점의 배점을 각각 부여하고 경영평가지표는 다단계로 40점을 부여한 후 종합점수에 따라 4단계로 평가함.

EU방식의 지급여력비율로 개정된 내용과 차이가 있음. 현행 기준으로 할 경우 지급여력비율의 구분은 100%~50%, 50%~0%, 0%미만 3단계로 구분됨.

87)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이란 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능력을 반영하는 지표임.
손해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 = (∑지급여력) / (지급여력기준) x 100
단, 지급여력기준 = 일반보험지급여력기준+장기보험책임준비금의 4%+장기위험보험에 대한 지급여력기준
세부사항은 [부록 3]의 손해보험회사 지급여력 관련 (감독규정) 참조

88) <표 16>에서 제시하고 지급여력비율에 의한 구분 기준은 지난 1999.5월에 EU방식의 지급여력비율로 개정된 내용과 차이가 있음. 현행 기준으로 할 경우 지급여력비율의 구분은 100%~50%, 50%~0%, 0%미만 3단계로 구분됨.

- 경영평가 40점은 금융감독원이 평가한 5단계 경영실태 평가를 20점으로 하고, 예금보험공사에서 측정한 경영위험 평가를 20점으로 배정함.

o 보험사업자의 보험료율 차등화 폭은 은행 및 종금사와 마찬가지로 80%~115%의 수준을 적용함.

<표 17> 손해보험회사의 예금보험요율 차등화방안

지급여력비율		경영평가지표	총점	등급	보험요율
구분	배점				
250%초과	60	경영실태평가* : 20 경영위험평가** : 20	90점이상	A^+	기준요율× 80%
100~250%	45		80~89	A	기준요율× 85%
100%미만	30		70~79	B^+	기준요율×100%
			70점미만	B	기준요율×115%

(주)* 및 ** <표 15>와 (주)와 동일

3) 差等預金保險料率 制度의 長點 및 短點

[長 點]

o 금융기관 경영에 있어서 도덕적위험의 완화를 도모할 수 있음.
- 금융기관 스스로의 자발적인 위험 축소노력의 유도가 가능하며, 위험예측(forecasting) 및 위험관리 (risk management)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도덕적위험의 방지가 가능함.

o 금융시장내 각 금융기관간 자율적인 시장규제의 강화가 유도됨.
- 차등보험료율로 인하여 건전한 금융기관의 부실 금융기관 지원 효과를 방지함으로써 금융기관간의 형평성 제고가 가능함.

- 과도한 위험전략을 추구하는 금융기관의 경우 고율의 보험료납부로 인한 자체적인 경쟁력 하락으로 결국 시장기능에 의한 구조조정의 지속적 유도가 가능함.

o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금융위기의 사전 예방이 가능함.
- 금융기관 부실위험에 대한 지속적인 측정·평가로 인해 금융기관 스스로 부실화의 사전예방 노력등을 통하여 경쟁력 강화 및 금융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가능함.

[短 點]

o 상대적으로 고정보험료율제(fixed-rate premium system)에 비하여 예금보험료의 부담 가중이 불가피함.
- 금번 개정논의 기본적인 취지가 금융구조조정 투입에 소요된 공적자금의 조기회수라는 점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지, 각 금융기관의 예금보험료의 추가부담이 불가피하여 일시적으로 우량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 악화 가능성이 높음.

o 보험료율의 차별화 근거에 있어서 경영평가 판단의 객관성이 검증되어야 하며, 감독기관과 중복되는 예금보험공사의 자체 신용평가에 대한 부보금융기관의 불만을 무시할 수 없음.
- 고정보험료율에서 차등보험료율로의 전환은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평가에 기초를 두고 있는 바, 사전적으로 경영평가의 중복성 및 객관성 결여등 자의적인 요소가 배제되어야 함.
- 따라서 차등보험료율 제도 도입의 신중성이 요구되는 바, 실제 외국의 경우 고정보험료율 제도의 오랜 운용후에 제도도입의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지고 차등보험료율제도을 도입하였음.[89]

2. 保險産業에의 影響

o 금번 예금자보호법 개정의 핵심은 예금보험제도의 기능 효율성 제고를 통한 금융시장내 善機能 강화이며, 구체적으로는 제도 현실화 차원에서 예금보험기금의 재정 충실화 및 금융기관의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 강화임.

o 특히 재원확보를 위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됨.
- 예금보험료의 기존 사전갹출 예금보험료 외에 공적자금의 회수를 위한 별도의 특별갹출료 제도의 신규 도입,
- 동일 금융업종내에서도 각 금융기관의 신용등급, 즉 재무건전성 및 경영평가 등에 의한 예금보험료율의 차등화 제도 도입

o 이와같은 개정 방향 및 세부사항은 금융산업의 건전육성 및 예금자보호 장치로서 진일보되고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현재 보험산업의 상황에서 판단할 때, 보험계약자 및 보험회사에게 상당한 재정적 부담과 함께 특별보험료 도입(공적자금의 회수) 시의 타금융권과의 형평성 확보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가. 保險會社 收益性 惡化 및 契約者權益 侵害

o 각 금융권별로 예수금 성격의 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예금보호장치도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음. 하지만 현행 예금보험제도의 보험료 납부기준 및 출연 표준요율의 경우 은행 등 타금융권에 비하여 유독 보험산업의 경우 과중한 부담을 지고 있음.
- 특히 보험회사는 예금보험료 산출기준이 수입보험료 기준에서

89) 단, 금융위기를 겪은 국가들 스웨덴, 페루, 멕시코, 아르헨티나, 핀란드, 노르웨이 등의 경우는 예외.

책임준비금으로 변경되었고, 출연 표준요율도 50% 증가하였음.

<표 18> 보험보증기금(舊) 제도의 변천 내역

구 분	운용기관	부보대상계약	보전금한도	납부기준	출연 표준요율
'89. 4월	보험감독원	가계성보험	5,000만원	수입보험료	1/10,000
'97.12월 ('98.4월)	보험감독원 (예금보험공사)	-가계성보험 및 퇴직보험(상시), -보증보험 및 법인보험(한시)*	전액	수입보험료	15/10,000
'98.12월	예금보험공사	上 同	2,000만원, (" 초과시) 납입보험료 또는 해약환급금	책임준비금 ('98.10월)	15/10,000

(주) 2001년 이후에는 퇴직보험계약을 제외한 법인의 보험계약 및 '98.7.31이전 체결된 보증보험계약은 보호되지 않음.

<표 19> 현행 각 금융권별의 예금보험료 산출 방식

부보금융기관	예금보험료 산출방식
은행	- 예금등 분기별 평잔잔액 x 5/10,000 x 1/4 (분기별보험료)
증권회사*	- 예탁금 등 연평균잔액의 x 10/10,000 【10/10,000】
보험사업자*	- 책임준비금 x 15/10,000 【수입보험료 x 15/10,000】
종합금융회사*	- 예금 등 연평균잔액 x 15/10,000 【12/10,000】
상호신용금고*	- 예금 등 연평균잔액 x 15/10,000 【15/10,000】
신용협동조합*	예금 등 연평균잔액 x 15/10,000, 【6/10,000】 예금 등 연평균잔액 x 3/10,000 (출자금만 취급하는 경우)

(주) 단, 보험사업자의 경우 설립연도, 신용도, 재무상황을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율(표준비율)을 조정할 수 있음.

* '98년도 사업개시일부터 공포일(개정 '98.10.10)이전까지는 개정전의 방식【 】을 적용하여 일할계산하고, 공포일 이후부터 '99.3.31까지는 개정규정을 적용함. <부칙 제6조>

<출처> 예금자보호법 동시행령 별표1,2 (개정 '98.10.10)

o 보험사업자의 경우 특히 생명보험사업자는 보험료산출기준이 수입보험료에서 책임준비금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보다 2배 이상의 예금보험료납부 부담이 발생하였음.[90]

<표 20> 보험사업자의 예금보험료 납부부담금 비교

구 분		'97.12월 이전	'97.12월 이후	현행 ('98.12)	ⓒ/ⓐ	ⓒ/ⓑ
보험 (생명보험)	납부기준	가계성보험 수입보험료	총수입보험료	책임준비금	4.3배	2.0배
	납부금액	330억원 ⓐ	696억원 ⓑ	1,426억원 ⓒ		

(주)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상 실제 예금보험료율은 보험 (0.15%), 은행 (0.05%)임.

o 또한 은행 예수금과 비교시 보험상품(일반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의 보험기간이 10년~15년의 장기적이라는 점과 실제로 보험계약 유지기간을 감안하더라도 실제 보험료 납부부담의 차이는 단순한 보험료율(0.15% / 0.05% = 3.0)보다 더욱 커짐.

<표 21> 은행과 보험의 상품특성에 따른 예금보험료 부담 차이

구 분	계약기간	보험요율	예금보험료 부담액	ⓑ/ⓐ
은행적금	3년	5/10,000	예금평균잔액의 0.15% (0.05%× 3년) ⓐ	5.0배
보험상품	약 5년*	15/10,000	책임준비금의 0.75% (0.15%× 5년) ⓑ	

(주) * 평균 유지기간 : 경과기간별 책임준비금의 가중평균치 작용 (FY'98 기준)

90) '98.9월 예금자보호법 개정시 부보금융기관의 보험료납부한도를 5/1000(0.5%) 통일화하였으며, '98.10월 동법 시행령에서 보험사업자에 대해서만 보험료산출기준이 변경되었음. 반면에 은행은 예수금평잔액의 0.03%에서 0.05%로 증가하였음.

o 과다한 보험료납부는 부실금융기관의 재정지원으로 건실한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자가 피해를 보는 道德的解弛 결과로 볼 수 있음.

- 건실한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자가 부실보험회사 정리에 소요되는 재원을 대납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경제적손실을 입는 것임.
- 실제로 일부 우량 보험회사의 예금보험료 납부액이 당기손익의 30%를 상회하는 수준에 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재무건전성 악화 및 우량 보험회사를 선택한 보험계약자권익 보호차원에 위배되는 모순을 가지고 있음.

<표 22> 예금보험료대비 당기손익 비교 사례

(단위 : 억원, A생보사 기준)

연 도	수입보험료	책임준비금	당기손익ⓐ	예금보험료ⓑ	ⓑ/ⓐ	비고*
FY'98	164,415	350,227	956	359	54.9%	513
FY'97	159,597	320,126	626	126	20.1%	156
FY'96	113,422	277,864	420	84	20.0%	11.3
FY'95	103,257	229,725	253	83	32.8%	4.9

(주) FY'98 기준이며, * 법인세 규모

o 예금보험료 부담은 향후 가격자유화 시기에 배당을 포함한 보험료 原價上昇으로 이어져 다수의 계약자에게 피해를 미치게 됨.

- 거액의 예금보험료 납부는 계약자보호예탁금과는 달리 실질적인 準조세(quasi-tax)[91]로서, 결국 배당재원의 축소 및 상품원가 인상으로 이어져 저렴한 양질의 보험상품 제공이라는 보험산업의 순기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91) 보험보증기금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법에 의해서 보험사업자가 출연하는 기금으로 상부상조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따라서 보험사업자의 개별자산으로 일정 요건충족시 반환되는 계약자보호예탁금과는 성격이 전혀 다름.

나. 他金融圈과의 衡平性 缺如

o '97년말 이후 '99년 상반기까지만 전체 2,000여개의 금융기관중 약 10% 수준인 217개 금융기관이 퇴출·정리된 바 있음. 그리고 이 과정에서 출자 또는 출현, 대지급 등의 형태로 투입된 공적자금이 이미 약 42조원에 이르고 있음.

- 이에 따라 구조조정이 어느정도 마무리단계에 접어듬에 따라 국민세금으로 상당수 조성되는 공적자금의 회수에 대하여 예금보험공사를 포함한 정부당국과 각 금융기관, 일반예금자 등 전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표 23> 금융권별 예금보험공사 공적자금 투입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出資	出捐	預金 代支給	保險金 支給	流動性 支援	합 계
은 행(10)	167,526	81,492	-	-	-	249,018
증권(4)	-	-	-	144	-	144
보험사(5)*	12,500	11,641	-	-	-	24,141
종금(18)	421	-	106,821	-	2,974	110,216
신용금고(40)	101	-	22,873	-	3,505	26,479
신 협(102)	-	-	-	10,421	55	10,476
총계(179)	180,548	93,133	129,694	10,565	6,534	420,474

(주) '99.9월말 기준임. * 출자 : 서울보증보험, ** 출연 : 4개 퇴출생보사
( )는 각 금융권별 공적자금 투입대상 금융기관 수
<출처>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의 기능과 역할」, '99.11

o 한편 공적자금의 회수와 관련한 추가적인 특별보험료 갹출 도입 시의 금융권별 자금투입 규모 및 지원형태를 감안하여야 함.

- 전체 '99. 9월말 기준으로 총공적자금 총42조원중 출자형태로 지원된 자금(약 43%)은 해당 금융기관의 지분을 정부(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게 되므로, 향후에 금융기관 정상화이후 주식매각을 통하여 상당수준 자금회수가 가능함.[92]
- 그리고 예금대지급 형태로 지원된 자금도 부분적으로나마 해당 부실금융기관 파산재단의 배당을 통해 일부 회수할 수 있음.[93]
- 그러나 출자형태 및 예금대지급을 제외한 출연 또는 직접(보험금)지급등의 형태로 지원된 자금은 사실상 별도의 추가적인 자금갹출 방법외에는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음.
- 즉, 향후 공적자금 지원분에 대한 회수실적에 따라서 발생가능한 구조조정자금 손실분에 대해서 각 금융권별로 자기부담원칙에 의거 해결하되, 다만, 상황에 따라 상당부분은 재정부담으로 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94]

o '98년부터 지금까지 추진된 금융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존의 각 보증기금의 재원이 모두 소진되었으며, 향후 일정기간동안 출자형태이외의 자금지원 부분(공적자금 총투입액의 약 58%)중 회수불가능 처리부분을 제외한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부과금 (특별보험료) 추가갹출이 불가피한 실정임.

---

92) 미국의 대형은행 및 북구3국의 경우 대부분 출자형태로 자금지원된 후 주식매각을 통해 상당금액을 회수하는데 성공하였음.

93) '99.7월 예금보험공사는 고려생명 파산재단의 배당으로 128억원을 회수한 바 있으며, '99.7월말 기준으로 예금보험공사가 부실 금융기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채권규모는 약 27조 2,000억원 수준임.

94) 미국의 경우 저축대부조합의 부실기관 정리시 손실금 $1,600억의 82.5%인 $1,321억를 재정에서 부담한 바 있음.

- 향후 추가적인 부실채권 발생 및 공적자금 투입을 감안할 경우 보험회사에 대한 예상 자금지원액 중 출자부분을 제외할 경우 그 규모는 약 2조 5,000억원~3조원 규모로 추산됨.[95]

<표 24> 각 금융권별 부실채권 규모 ('98년말 기준)

(단위 : 조원, %)

구 분	은행	증권	보험	종금	금고	리스	신협	합계
총여신(A)	443.4	7.3	38.7	28.0	22.0	25.9	11.2	133.0
부실채권(B)	33.6	2.0	3.4	5.6	5.3	7.8	2.5	26.6
(B/A)	7.6	27.3	8.8	20.0	24.0	30.1	22.3	20.0

(주) 부실채권 : 고정이하 여신, 상호신용금고는 연체 6개월 이상

<출처> 한국금융학회, 「금융산업의 Software 확충」, '99.6

o 따라서 각 금융권별로 공적자금 회수시, 금융권별 공적자금 투입규모 특히 출자를 제외한 자금의 예상 회수율과 부실채권 규모 등을 감안하되, 동시에 각 금융업종별 현실을 고려하여야 함.

<표 25> 각 금융권별 공적자금 투입비율

(단위 : %)

구 분	은행	증권	보험	종금	금고	신협	합계
총액기준	59.2	0.0	5.7	26.2	5.9	2.5	100.0
(출자분)	92.7	0.0	6.9	0.02	0.01	0.0	100.0
(출자분 제외)	34.0	0.0	4.9	45.8	11.0	4.4	100.0

(주) '99.9월말 기준

95) '98년 4개 생보사(고려,국제,태양,BYC)에 지원된 1조 1,641억원, 금년중으로 6개 생보사 (국민,동아,조선,태평양,한덕,두원) 순자산부족분 1조 9,000억원을 합할 경우 출자분을 제외한 지원규모는 약 3조원 규모임. 한편 출자분을 제외한 타금융권중 은행은 약 8조~10조, 종금사는 약 12조원 내외로 추정됨.

o 따라서 만약 출자부분을 제외한 공적지원자금의 회수율을 일정 수준으로 가정할 때, 구체적으로 회수규모(회수율), 회수기간, 추가 보험료율 등의 산정에 있어서 각 금융권별로 획일적인 동일 기준 적용보다는 금융권 특성을 감안하여 차별화되어야 함.

- 예를 들어서 보험(생명보험)과 은행의 경우 출자분을 제외한 자금지원규모를 각각 3조원 및 9조원으로 추정할 때, 동금액의 회수율을 30%~50% 적용시, 향후 특별보험료에 의한 조달규모는 보험업계는 9,000억원~1조 5,000억 수준, 은행권은 2조 7,000억원~4조 5,000억원 규모임.

o 따라서 우선 현행 예금보험제도의 개정 및 시행에 앞서 반드시 보험권과 타금융권과의 차이, 즉 과다한 보험료납부 및 일반 금융상품과 보험상품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예수금성격상의 차이가 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96]

o 만약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사후보험료 갹출시, 회수규모의 차이에 따른 금융권별 차별화없이 단순한 동일기준을 적용할 시, 반드시 지급여력 약화 등 재무건전성 악화를 초래하게 됨.

- 해당 금융기관은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재정부담을 떠안게 되며, 이는 부실금융기관 재정 지원으로 인하여 건실한 우량 보험회사들이 재무적으로 급격히 취약하게 되는 역효과를 발생시키게 되는 것임.

---

96) 특히 일반 금융상품에 대한 예금자보호 장치와 보험상품에 대한 계약자보호 장치와 관련하여 제도운용의 형평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 재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 제3절 종합개선방안에서 취급하였음.

3. 綜合 改善方案

가. 主要 核心事項

o 예금보험제도의 보증기금은 금융기관이 파산, 포괄이전 등의 사태가 발생할 때 소비자보호의 최후수단임. 반면에 금융산업의 환경 변화는 제도 자체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확대시키고 있음.

- 업무영역조정 등 종합금융화의 진전, 금융지주회사 도입 가능성 등 금융기관의 환경변화로 예금자보호장치 강화가 필요함.
- 부실경영에 대한 배상책임 등 책임경영체제의 구축이 필요함.
- 반면에 은행권의 BIS 자기자본비율 및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 등 재무건전성 척도 및 회계처리방식은 과거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수준에 도달함으로써 경영투명성이 제고되고 있음.

o 현재 국내 예금보험제도는 지난 '98. 4월을 기점으로 예금보험공사에 통폐합되어 금융권별 보증기금이 구분계리되어 운용중임.

- 그러나 이미 지난 2년간 진행되어온 금융권 구조조정 추진에 따라 기존의 각 금융권별 보증기금이 이미 소진된 상태이고, 금번 제도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예금보험제도 기금의 재정확보 및 그에 따른 향후 제도운용에 관한 것임.

o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향후 예금보험제도 개정과 관련하여 보험산업 입장에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대안 형태는 금번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크게 세가지로 구분함.

- 첫째, 보증기금의 출연방식(보험료의 사전/사후갹출) 및 출연율
- 둘째, 보험료갹출의 차등료율제도의 신규도입의 세부방안
- 셋째, 예금보험제도의 제도운용과 관련한 세부사항으로 대분됨.

나. 制度上의 改善方案

1) 保證基金 保險料 納付方式

가) 保險料 納付方式

o 현재 보험료 납부방식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사항은 기존의 사전갹출 보험료이외에,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특별보험료의 사후갹출제 도입 타당성 및 보험료 수준의 적정성 문제임.

- IMF사태이후 금융산업 구조조정용 공적자금의 조기회수를 위해, 기존의 사전갹출제이외에, 추가로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사후보험료 (특별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는 것임.[97]

o 향후 보험료 사전/사후갹출 방식의 장단점에 의거하여 판단시, 현재 보험사업자를 포함하여 현행 예금자보호법상에는 단지 출연금의 사후갹출에 대한 것으로, 이는 현재 도입논의 되고 있는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특별보험료 갹출과 다름.[98]

- 사전갹출은 수익자부담에 따라 형평성원칙이 적용되지만, 출연율의 적절한 차등화로 건전경영을 유도할 수 있음. 그러나 적정출연율의 산출이 쉽지 않고, 금융기관 도산시 사후적으로 잔존 기업의 부담에는 별 차이가 없어 상호감시기능이 저하됨.
- 사후갹출은 금융기관간의 상호 자율감시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반면에, 도덕적위험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대규모 지급불능사태시 금융업종의 전체 안전성을 해치는 위험을 안고 있음.

---

97) 사후적인 특별보험료 갹출의 소급적용에 대한 법률적 논란도 제기될수 있음.
98) 동법시행령(제14조 제2항)에 보험금지급 규모에 미달시 차액범위내에서 추가로 출연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동 추가출연금은 동법 제24조제4항 규정, 즉 출연금한도액 규정인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1/100을 초과할 수 없음. 이는 기금재원에 관한 일부 사항이지만 예금보험료의 사후갹출과 다름.,

o 따라서 보험료 갹출의 사전-사후방식의 장점을 공유할 수 있는 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하되, 사후보험료는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추가적인 특별보험료 갹출로 규정하고, 기존의 사전 보험료 갹출과 연계하여 실제 공적자금 투입량 및 회수율, 회수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나) 標準比率 (預金保險料率)

o 기존의 사전갹출된 보험료의 표준 출연비율은 예금자보호법상 0.5%를 상회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험사업자의 경우 0.15%임.

- 그러나 이는 지난 '98.10월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시 보험사업자의 보험료산출 기준이 수입보험료에서 책임준비금으로 개정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표준 보험료율을 유지함으로써 실제 보험료 부담액이 100% 증대된 상황임.
- 기본적으로 예금기관의 예수금 성격과 비교시 보험사업자의 보험료 사전갹출의 산출기준이 수입보험료에서 책임준비금으로의 전환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o 그러나 타금융권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표준 출연요율(보험료율)의 하향조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현재 보험산업에서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당기balance를 중시하므로, 보험료산출기준 변경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으나,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중장기balance를 중시하므로 실제로 수입보험료 base와 책임준비금 base의 실제 예금보험료 규모는 큼 차이가 있음.[99]

- 따라서 타금융권과의 형평성 유지 및 보험사업자의 지급여력

99) 지난 5년간을 기준으로 손해보험의 책임준비금/원수보험료 비율이 평균 70~80% 수준인데 반해서, 생명보험의 경우 동비율이 약 200%를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산출기준의 변경으로 인한 보험료갹출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현행 표준 출연비율(보험료율)을 0.15%에서 최소한 0.075%로 하향조정이 요구됨.

- 특히 수입보험료는 특정 당해년도의 매출규모 성격으로서 flow 개념이지만, 책임준비금은 일정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누적되는 stock 개념이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총액상의 차이는 더욱 증대될 수 밖에 없음.
- 보험료산출의 기준을 실질적인 계약자에 대한 부채(예수금 성격)로서 책임준비금으로 하되, 기존의 보험료산출기준과의 차이를 감안하여 보험료율은 현행수준보다 1/3~1/2 수준인 0.05%~0.07% 수준까지 하향조정이 필요함.

2) 預金保險料의 差等料率制度 導入

o 현행 예금자보호법에 의하면 재무상황에 등에 따라 정상적인 경영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는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거나 혹은 일정기간 동안의 보험료 납부유예가 가능함.

- 그러나 이는 원칙적으로 사전납부제의 장점과 위험에 근거한 출연율 산출의 원칙에 근거할 때, 사실상 도산가능성이 높을수록 보험료율을 높이고 출연의무를 강화해야만 보증기금의 본연의 가치를 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기본취지와 상반됨.[100]
- 오히려 기존의 사전납부방식의 장점을 살리면서 현재 보험사업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표준비율에 대한 狹義의 차등화 제도[101]를 더욱 확대하여 예금보험의 보증기금제도의 狹義기능보다는

100) 물론 미국과 같이 사후부과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이러한 조항이 당초 보험보증기금의 원리와 보험료납부방식 일치되어 의미를 가짐.

101) 보험사업자의 설립경과년수, 신용도, 재무상황에 따라 필요시 표준비율을 1) 설립후 10년미만은 5/100인상, 2) 인보험사업자중 누적손실이 없는 경우 K율에 따라 5/100 범위내에서 인하, 3) 손해보험사업자중 누적손실이 없는 경우 연간보유보험료총액대비 보험계약잉여금 비율에 따라 5/100범위내에서 인하.

포괄적인 금융산업내 다수의 예금자를 보호하는 잠재적 安全網 장치(implicit safety net)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본격적으로 차등보험료율제도(risk-based premium system)의 도입을 신중히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102]

o 이와 관련하여 차등보험료율제도의 세부사항에 대한 현행 개정 논의에 대해 보험산업 입장에서의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음.[103]

가) 適用對象 및 適用時期 方法

- 제도도입의 적용대상 및 적용시기는 먼저 보험업종의 경우에 은행권 및 종금사에 비해서 차후적으로 적용함.
- 또한 보험업종 도입에 있어서도 보험권 전체에 대한 일괄적용보다는 손해보험부터 先적용(2000년)후에, 1~2년차 경과후에 생명보험에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104]
- 평가빈도의 경우 제도도입 초기에는 평가자료의 획득가능성을 감안할 때, 직전 사업년도를 기준으로 년 1회 평가하여 보험요율을 결정하는 것이 무난할 것으로 판단됨.

---

102) 다만, 제외국의 경우도 예금보험료율의 차별화제도는 상당기간 고정보험료율(flat-rate premium system) 제도 시행후, 자체 신용평가판정에 대한 충분한 사전준비후에 각 금융권의 특징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도입된 사실을 감안할 때, 차등보험료율 제도의 도입은 사전정지를 통한 여건 조성이 필요하며, 향후 도입시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도입되어야 할 것임.

103) 본 검토의견은 지난 '99.5월의 예금보험공사 주최 공청회에서 제시된 도입방안을 중심으로 검토된 것임.

104) 특히 생명보험의 경우 신설사의 구조조정에 따라 상당수의 생보사가 경영정상화 이행기간이 2001년 9월까지로 계획되어 있고, 이에 따라 지난 '99.5월에 개정된 지급여력 적용도 2000.9월까지 유예되어 있음을 반영하여야 함. 또한 실질적인 EU방식의 지급여력제도의 적용 완성기간이 2004년 예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생명보험의 차후 적용의 설득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나) 評價方式 및 適用料率

o 보험업종의 경우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의 재무건정성 지표로서 '99.5월에 개정된 EU방식의 지급여력제도가 마련되었음.

- 동법 개정시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관련 회계제도도 개선되었다는 점에서, 보험료 차등화 기준의 평가방식으로서 감독당국의 지급여력비율 및 경영평가결과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보증기금 운용단체인 예금보험공사에서 직접적인 자체 신용평가 (경영위험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차등보험료산출의 기준으로 활용하는 경우는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감독당국의 경영실태평가와의 중복성 문제 및 예금보험공사의 경영위험평가의 객관성 확보여부 및 외국의 사례에서 판단할 때, 부보금융기관(보험사업자)의 보험료 산출에 예금보험공사의 직접평가는 평가지표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함.

o 따라서 보험사업자의 차등보험료율 산정의 종합점수 배정방법은 보험사업자의 지급여력비율 및 감독당국(금감원)의 경영평가지표 결과를 단계별로 점수화하여 활용함.

- 지급여력비율 (solvency margin ratio)은 총 70만점으로 하여 100% 초과, 50~100%, 0%~50%, 0% 미만 등 총4단계로 구분하여, 각각 70점, 50점, 40점, 30점의 배점을 부여함. 경영평가지표는 금융감독원의 5단계 경영실태평가를 총30점으로 함.
- 이상의 두가지표에 의해서 산출되는 종합점수를 근거로 하여 총 4단계등급으로 하되, 보험료율의 차등화 폭은 기준표준요율의 70%~120%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105)]

105) 차등화 폭은 제도도입 초기에 각 단계별로 확대 시행조치 계획을 명문화함으로써 사전예고효과를 통한 차등화제도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함.

<표 26> 보험사업자의 차등보험료율제 도입 개선안

지급여력비율		경영평가지표 (배점)	총 점	등급	보험요율
구분	배점				
100%초과	70	감독당국의 경영실태평가* : 30	90점이상	A^+	기준요율× 70%
50~100%	50		80~89	A	기준요율× 85%
0~50%	40		70~79	B^+	기준요율×100%
0% 미만	30		70점미만	B	기준요율×120%

(주) 금융감독원에서 평가한 5단계 경영실태평가를 30점 만점으로 단계별 차등화 단, B등급미만은 B등급과 동일 처리함.

3) 事後 特別保險料 醵出 水準 및 保險料率

o 현행 예금보험제도하에서 금융산업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외국의 경험이나 현재의 국내 예금보험 보증기금의 재원형편상 추가적으로 공적자금회수를 위한 일정수준의 특별보험료 갹출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금융권별 공적자금 규모와 해당 금융업종의 특성을 감안할 때, 보험산업에 대한 특별보험료 부과방식은 총괄적인 공동 Rule에 의한 단순적용보다 기존의 사전갹출제에 의한 보험료 갹출수준 등이 종합적으로 감안되어 결정되어야 할 것임.
- 은행권과 비교시 보험권의 공적자금 규모 및 현재 보험료납부 방식에 의한 보호대상 예수금잔액 규모는 약 1/3수준임.[106]
- 예를 들어서 공적자금 목표회수율을 평균적으로 30% 수준으로 적용했을 경우, 보험권과 은행권의 목표적립액(원금기준)은 각각 1조원과 3조원 수준임.

106) 즉, 출자형태 및 대지급을 제외한 출현등에 의한 자금지원 규모가 보험산업은 약 3조원, 은행은 약 9조원이며, FY'98 기준으로 예금보호대상의 평균잔액 추정시 보험산업은 약 95조원, 은행권은 약 350조원 내외로 추정됨.

- 그리고 동회수금액 확보를 위한 회수기간을 10년 또는 20년을 감안할 경우에 보험권의 경우 현행처럼 책임준비금기준으로 할 경우 0.05%~0.075%의 보험료율이 예상됨.

<표 27> 공적자금 회수용 특별보험료율 추정사례

구 분	회수목표액	회수율	회수기간	특별보험료율
보험권 (생명보험)	1조원	30%	10년	0.075%
			20년	0.05%
	6,000억원	20%	10년	0.05%
			20년	0.03%
은행권	3조원	30%	10년	0.043%
			20년	0.01%
	2조원	20%	10년	0.026%
			20년	0.007%

(주1) 보험권은 책임준비금의 연간 증가율 5% 적용, 은행권은 대상예수금평잔액의 연간증가율 15% 적용 (FY'98 기준)

(주2) 특별보험료 갹출원금이외 동기간중 운용수익율을 연 10%로 가정하여 산출

o <표 27>에서처럼 보험권의 경우 향후 공적자금 회수율 20%~30% 내외, 회수기간 10년~20년 정도를 가정할 때, 특별보험료율(표준비율)은 약 0.03%~0.075% 수준으로 추정됨.

- 그러나 기존의 사전보험료납부 수준을 동시에 고려할 때, 보험권의 예금보험료납부 총액규모는 연간 약 1,000~1,500억원 수준으로서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임.
- 따라서 향후 특별보험료 부과 도입시, 반드시 사전보험료의 표준비율에 대한 절대적 인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그렇지 않을 경우 건전한 보험회사의 부실화라는 보증기금제도의 역기능 발생으로 선의의 다수 보험계약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를 발생할 수 있음.

다. 運用上의 改善方案

1) 別途의 保險契約者 保護裝置

o 향후 국내 금융산업에서 예상되는 환경 변화 특히 금융자유화의 완성단계로서 업무영역 조정에 의한 종합금융화 가속화[107], 보험가격자유화 완결 등을 감안할 때, 현재와 같은 예금보험제도의 운용형태는 지속적인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시대적 환경에 따라 현재 통합 운용체제의 효율성에 대한 검증이 요구될 것이며, 이에 따라 제도 자체의 재구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o 또한 금융산업 구조조정이 지금까지는 정부주도의 인위적인 구조조정 성격이 짙었으나, 향후에는 자발적인 필요에 의한 구조조정으로 전환될 것임. 이 경우에는 사실상 선진국 수준의 금융기관간의 인수합병(M&A)이 활발해 짐으로써, 해당 금융기관의 예금자(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호가 더욱 절실해질 것임.

- 따라서 현재와 같이 금융업종간 비록 구분계리(segmentation within an account) 형태로 유지되고 있는 통합된 보증기금은 지금까지의 단순 경영제휴 및 협조 차원을 넘어서 持株會社(holding company) 형태의 異種 금융기관간의 기업계열화시 보증기금 운용형태의 수정이 불가피 할 것임.

o 특히 외국의 예금자보호장치 제도운용과 비교시 상대적으로 우

107) 현재 부각되고 있는 종합금융화의 대표적인 형태는 Bancassurance (은행 + 보험) 및 Assurbanking (보험 + 은행) 등 특히 은행과 보험권의 업무영역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또한 1-2년내에 금융지주회사의 등장이 예상됨에 따라 본격적인 금융종합화 시대가 예상되고 있음.

리나라보다 선진화된 금융체계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 등 저축금융기관의 예금보호제도와 보험산업의 보험계약자보호 장치가 二元化되어 있음.

<표 28> 외국의 예금자보호장치 이원화 현황

미국	은행 및 저축대부조합 등 : 연방예금보험기금 (FDIC)
	보험 : NAIC의 Insurance Guranty Association Model Act 근거 생명보험(NOLHIGA), 손해보험(NCIGA)별도의 보증협회기구 설치, 각주별 보증협회(Guranty Association) 산하의 보증기금 운용
일본	은행 및 저축기관등 : 예금보호기구 (JDIC)
	보험 : 별도의 보험계약자보호기구 (법인) 설치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각각의 별도기구로 설치, 운용
캐나다	은행 및 저축기관등 : 예금보험기금 (CDIC)
	보험 : 별도의 보험계약자 보상회사 설치 생명보험(COMPCORP) 및 손해보험(PCICC) 각각 설치, 운용
영국	은행 및 저축기관등 : FSA법에 의거 Deposit Protection Scheme
	보험 : 보험계약자보호위원회 살치 운용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의 통합운용 (단, 기금운용 분리)

o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향후 금융산업 구조조정의 성공적인 마무리 및 현재 일시적으로 확대적용되고 있는 예금자보호장치의 환원시 (2000년말), 장기적인 차원에서 최소한 은행권(저축기관 포함)과 보험권에 대한 예금보호장치의 이원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o 또한 현재와 같은 예금보험기금의 통합 형태를 유지하더라도 최소한 빠른 시일내에 현행 구분계리 수준이 아니라, 별도의 분리계정(separate account) 체제로의 전환을 통해서 자금유출입의 강력하고 투명한 차단벽(FireWall)이 이루어져야 함.

- 이는 향후 예상되는 별도의 공적자금 회수용 특별보험료의 갹출 및 적립운용 차원에서도 선행될 과제이며, 장래에 은행권과 보험권과의 예금자보호장치의 이원화 추진시 원만한 이행을 위해서도 과도기적으로 추진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2) 預金保險基金 計定의 細分化

o 국내 예금보험제도의 보증기금 운용은 금융업종별로 구분계리 형태로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발생 가능한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내포하고있음. 그러나 이 문제는 단순히 금융업종간의 문제일 뿐만아니라, 사실상 예금보호를 받고 있는 예금자, 보험계약자들의 진정한 권익보호 차원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음.

- 즉 동일 보험업종내에서도 보험계약 종류에 따라 엄격한 의미의 차단벽(Firewall) 설치가 필요함.[108] 이러한 운용 방식은 보험종류에 따라 실제 지급불능의 위험도가 다르기 때문임.

o 이는 보증기금의 재원조달 및 운용 건실화 차원에서도 판단할 때, 은행권과 달리 보험권의 경우 최소한 보험종류별 위험도가 분명히 차이가 있음.[109]

---

108) 제Ⅲ장 제1절 미국편에서 설명하였듯이, 미국은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의 별도 보험보증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고, 또한 대부분의 주에서 각 보험보증기금내에서도 보험종류별로 별도의 계정(account)를 설치운용하면서, 동계정내에서 보전금의 한도 및 보험료납부 상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음.

109) 은행권의 경우 실적배당형상품 (현재 보장제외)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예금상품별로 위험도의 차이가 크지않음.

- 실제로 국내 보험산업의 경우 평균 보험금 지급규모 및 책임준비금 비중 크기에서 생명보험 종류별, 일반 손해보험의 장단기 보험, 자동차보험 등에 따라 현저한 차이가 있음.

<표 29> 보험종류별 평균지급규모 및 준비금 비중

[생명보험 평균지급액 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생존	사망	생사혼합	개인소계	단체	전체
1996	3.11	0.78	2.67	2.60	5.49	3.01
1997	3.77	0.76	3.20	2.92	8.54	3.76
1998	3.69	0.68	2.86	2.16	11.0	3.26

[생명보험 책임준비금 비중] (단위 : %)

구분	생존	사망	생사혼합	개인소계	단체	합 계
1996	49.2	7.91	12.5	70.2	29.8	100.0
1997	40.0	10.5	17.9	69.9	31.1	100.0
1998	35.4	14.4	24.5	74.7	25.3	100.0

[가계성 손해보험 평균지급액 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화재(주택)	상해	장기	개인연금	자동차(책임)	(개인용)
1996	6.82	1.45	30.0	88.6	3.16	2.98
1997	4.63	2.00	26.9	86.2	4.04	2.60
1998	6.09	1.48	19.9	75.2	3.75	2.19

[가계성 손해보험 책임준비금 비중] (단위 : %)

구분	화재보험	상해보험	장기보험	개인연금	자동차보험	기타
1996	0.0	0.0	53.5	14.4	24.4	7.7
1997	0.0	0.0	53.1	14.1	18.4	14.4
1998	0.24	0.0	46.8	12.1	13.8	27.1

o 따라서 보험권의 경우 중장기적으로 보험종류별로 세분화하되, 생명보험의 경우 일반 생명보험과 연금보험, 손해보험의 경우는 자동차보험, 책임보험, 일반 손해보험, 장기보험 등으로 세분화함으로써 보증기금의 재원 확보 및 지급운용의 적정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110]

o 즉, 국내 예금보험제도의 질적 발전과 진정한 의미의 계약자보호장치를 위해서는 선진국처럼 보험종류별로 별도의 계정구분 시스템 구축과 보전금한도 설정 및 보험료 상한수준의 차별화하는 방안을 지금부터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임.[111]

- 특히 향후 보험시장 진입·퇴출의 자유화와 함께 최저 납입자본금의 차등화시[112], 영위하는 보험사업종류에 따라서 경영위험 크기의 차이에 따른 대응방법과 그에 따른 보험계약자 보호방법도 반드시 구분되어야 하기 때문임.
- 또한 향후 국내 보험산업의 경우도 동일업종 및 타금융업종간의 기업인수 합병시 외국과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임.[113]

---

110) 다만, 손해보험의 경우에 보증보험에 대한 예금보호대상 포함 여부 및 보전방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111) 특히 미국의 각 주의 보험보증기금처럼 보험종류별 리스크에 따라서 계정을 구분하고, 보전금한도도 차별화함으로써 보험리스크가 다른 계약자간의 권익이 보호되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좋은 사례가 될 것임.

112) 즉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의 현행 최저납입자본금이 일괄적으로 300억원으로 되어있으나, 향후에는 예로서 일부 손해보험의 경우 일반손해보험(100억원), 자동차보험(200억원), 장기보험 및 보증보험(300억원) 등, 보험회사 설립시 법정 최저납입자본금을 차별화하는 방안이 신중히 검토중에 있음.

113) 미국의 경우 '90년대초부터 보험회사의 인수합병(M&A) 또는 공개매수(takeover) 등이 활발해지면서 큰 논란이 되는 것이 보험보증기금에서 보호되고 있는 일부 보험종목, 즉 비할당퇴직연금계약(unallocated annuities) 및 투자보증부계약(GICs)의 계약자에 대한 처리문제임. 특히 이러한 문제는 타

3) 制度運用의 先進化

o 부실금융기관의 처리에 있어서 해당 보험회사 선택에 따른 해당 계약자도 일정수준의 책임분담 체제가 법규상에 마련되어야 함.

- 일본의 부실 생명보험회사[114]의 파산처리에서 확인되었듯이, 부실 보험회사의 계약자들에게도 일정수준의 책임분담 체제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즉 包括移轉 방식 또는 架橋保險社에 의한 계약이전시, 부실 보험회사의 기존 계약자에 대해서 예정이율의 인하를 통한 보험료인상, 보험금의 일정 수준 삭감, 또는 조기해약시 일정비율의 페널티 부과[115]등을 통하여 계약자 스스로가 우량 보험회사 선택을 통해서 자기권익을 보호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o 또한 향후 부실보험사 파산시 보험료 갹출제와 관련하여 경상비용과 보전비용을 각각 사전보험료와 사후보험료로 별도재원을 확보할 경우에, 보험회사의 사후보험료 갹출 상한선 및 적립규모의 한도 등에 대해서도 관계 법규에 명시함으로써, 잔존 보험회사의 유한책임을 명문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o 이와함께 보험회사의 보험료갹출에 대해서 관련 세제상의 혜택 및 기타 상계방안(recoupment)을 마련하여 과도한 보험료납부 부담을 완화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건실한 우량 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자의 권익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금융권의 보험회사 인수시 매우 민감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음.

114) 일산생명 및 동방생명

115) 정상적인 해약환급금 수준에서 계약 유지기간에 따라 일정비율을 공제한 조기 해약환급금을 지급함.

Ⅴ. 示唆點 및 結論

o 오늘날 전세계적으로 국경없는 금융자본의 이동이 그 어느때보다 손쉽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각국은 자국민의 보호차원에서 금융시스템 안정 및 경쟁력있는 우량 대형금융기관의 육성을 도모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예금자권익보호 차원에서 각국은 예금자보호장치, 즉 예금보험제도의 지속적인 개선 및 강화를 통하여 금융시장내 적절한 시장규율의 확립과 함께 보증기금의 다각적인 재원확보 및 운용방법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임.

o 우리나라는 예금자보호장치의 연륜이 일천한 상황에서 금융산업 구조조정 추진시 부족한 재원을 공적자금 투입으로 상당부분 해결하였음.

- 이에 따라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통하여 정부는 자기부담원칙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 금융권별로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사후적인 특별보험료 갹출 도입, 책임경영구축을 위한 차등보험료율 제도의 도입 등을 계획하고 있음.

o 보험산업은 이미 시장개방에 맞추어 계약자보호예탁금제도 외에 보험보증기금을 설치·운용해왔던 바, 타금융권과의 비교할 때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문제점들이 존재하고 있음이 지적하였음.

- 현행 예금보험료 수준의 과다로 건실한 보험회사의 수익성악화가 예상되어 예금보험제도의 역기능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특히 타금융권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료율 체제, 즉 보험료산출기준 및 보험료율에 있어서 형평성 및 타당성에 문제가 있음.

o 본고에서는 예금보험제도 개정과 관련하여 외국의 사례와 국내 금융산업 및 보험산업의 현실 등을 감안하여, 보험업종에 대한 제도 적용 및 개정으로서 다음과 같이 대안을 제시하였음.

<단기 개선방안>

o 첫번째 보증기금의 출연방식, 즉 보험료의 사전갹출과 사후갹출 및 출연율 수준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 보험료 갹출의 사전/사후방식의 장점을 공유할 수 있는 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하되, 특별보험료는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추가적인 사후보험료 갹출로 규정함.
- 보험료산출의 기준을 실질적인 계약자에 대한 부채(예수금 성격)으로서 책임준비금으로 하되, 기존의 보험료산출기준과의 차이를 감안하여 보험료율은 현행 수준보다 1/3~1/2 수준인 0.05%~0.07% 까지 하향조정이 요구됨.

o 두번째 보험료갹출의 차등보험료율제도의 신규도입과 관련하여,

- 사전납부방식에서 보험사업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표준비율에 대한 狹義의 차등화 제도를 대신하여 보험보증제도의 광의의 기능 확보차원에서 차등보험료율제도 도입을 신중히 검토하되,
- 적용대상 및 적용시기는 은행 및 종금사에 비해서 차후적으로 적용함. 또한 보험권 전체에 일괄적용보다는 손해보험부터 先적용(2000년)후에, 1~2년차 경과후에 생명보험에도 도입함.
- 차등보험료율 산정의 종합점수 배정방법은 지급여력비율 및 감독당국의 경영평가지표 결과를 단계별로 점수화하여 활용함.
- 지급여력비율은 전체 70만점으로 하여 100% 초과, 50~100%, 0%~50%, 0% 미만 등 총4단계로 구분하여, 각각 70점, 50점,

40점, 30점의 배점을 각각 부여하고, 경영평가지표는 금융감독원의 5단계 경영실태평가를 총 30점 만점으로 함. 단, 두지표에 의해서 산출되는 종합점수를 근거로 총4단계등급으로 하되, 보험료율의 차등화 폭은 기준 표준요율의 70%~120%로 함.

- 단, 차등화 폭의 범위는 도입초기에 각 단계별로 확대시행되는 세부일정을 명시화하여, 각 금융기관이 사전에 대비함은 물론 事前豫告效果를 통한 제도의 장점을 극대화되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임.

o 세번째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특별보험료 추가갹출과 관련하여,

- 외국사례 및 예금보험기금 재원형편상 추가적으로 일정수준의 특별보험료 갹출은 불가피할 것으로 인정하지만,
- 실질적인 보험료율의 결정은 금융권별 공적자금 규모와 해당 금융업종의 특성을 감안하여야 하며, 총괄적인 공동 Rule에 의한 단순적용보다 기존의 사전갹출제에 의한 보험료 갹출수준 등이 종합적으로 감안되어 결정되어야 함.
- 그러나 보험권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과다한 규모의 예금보험료 납부가 예상되므로, 향후 특별보험료 부과 도입시, 반드시 사전보험료의 표준비율에 대한 절대적 인하가 선행되어야 함.[116]

<중장기 개선방안>

o 첫번째 향후 금융산업 환경 변화를 감안할 때, 예상되는 것으로,

- 현행 통합 운용체제보다는 별도의 계약자보호장치의 필요성에

116) 예로서, 향후 공적자금 회수율 20%~30% 내외, 회수기간 10년~20년 정도를 가정할 때, 특별보험료율(표준비율)은 약 0.03%~0.075% 수준으로 추정됨. 이는 보험권 전체적으로 볼 때, 예금보험료납부 총액규모가 연간 약 1,000~1,500억원 수준에 달하는 규모임.

관한 것으로서,

- 외국의 예금자보호장치 제도운용 사례와 향후 종합금융화, 금융기관간 인수합병, 持株會社형태의 異種 금융기관간의 기업계열화 등 환경 변화시 계약자보호를 위해서는 은행 등 저축금융기관의 예금보호제도와 보험산업의 보험계약자보호 장치가 二元化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됨.
- 이와함께 현행 통합 보증기금의 구분계리 체제보다는 금융업종별 별도의 분리계정(separate account) 체제로의 전환을 통해서 강력하고 투명한 차단벽(FireWall)이 이루어져야 함.

o 두번째, 동일 보험업종내에서도 보험계약 종류에 따라 엄격한 의미의 차단벽(Firewall) 설치가 필요함. 그이유는 보험종류에 따라 실제 보험사업자의 지급불능의 위험도가 다르기 때문임.

- 최소한 보험권의 경우 중장기적으로 보험종류별로 세분화하되, 생명보험의 경우 일반 생명보험과 연금보험, 손해보험의 경우는 자동차보험, 책임보험, 일반 손해보험, 장기보험 등으로 세분화함으로써 보증기금의 재원 확보 및 지급운용의 적정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o 셋째, 선진국의 보험보증기금의 운용사례에서 얻은 교훈으로서,

- 부실금융기관의 처리에 있어서 계약자들에게도 일정수준의 책임분담 체제가 해당 법규상에 마련함으로써 계약자 스스로가 자기권익을 보호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또한 보험료 갹출제와 관련하여 경상비용과 보전비용을 각각 사전보험료와 사후보험료로 재원을 확보시, 사후보험료 갹출 상한선 및 적립규모의 한도 등에 대해서도 관계 법규에 명시

함으로써, 잔존 보험회사의 유한책임을 명문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 그리고 보험료갹출에 있어서 세제상의 혜택 및 기타 공제방법을 마련하여 과도한 보험료납부 부담을 완화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건실한 우량 보험회사 육성 및 보험계약자의 권익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o 결론적으로 최근의 금융환경 변화 추세를 감안할 때, 예금자 권익보호 및 금융시스템의 안정은 절대적으로 중요함. 이러한 상황에서 예금보험제도의 중요성 및 효율성 확보는 향후 금융시장 발전에 가장 중요한 위치에 놓여있을 것으로 판단됨.

o 그러나 단순히 재원확보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 등을 위하여 제도 운용상의 강화 및 자기책임원칙에 입각하여 금융시장내 세부적인 현실과 보이지 않는 역기능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부족할 경우, 예금보험제도로 인해 오히려 우량금융기관의 경영부실 및 계약자권익이 침해를 받는 결과를 초래하지 말아야 할 것임.

o 끝으로 본연구의 한계점으로서 현행 예금보험제도의 합리성 및 타당성, 예금보험 적립규모의 적정규모 및 보험료의 사전/사후 갹출제의 운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다소 미흡함.

- 특히 예금보험제도와 관련한 세제처리 및 각 계정별 예금보험기금의 적정운용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후속작업이 필요함.
- 이에 대해서는 향후 보험계약자 권익보호차원에서의 세부적인 제도운용 형태 및 제도보완 방법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후속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임.

<附 錄>

附錄 1

- 現行 預金者保護法上 金融圈別 預金保護 實態

< 金融商品 元利金 支給保障 內容 : 預金者保護法 施行令 >

附錄 2

- 金融圈別 預金保險料 納付基準
  - o 保險會社
  - o 銀行
  - o 綜合金融會社

附錄 3

- 保險會社 支給餘力 基準
  - o 損害保險
  - o 生命保險

附錄 4

- 保險會社 經營實態評價

附錄 5

- 美國의 各州別 預金保險基金 制度 運用 現況
  - o 損害保險 保證基金
  - o 生命保險 保證基金

[附錄 1] 金融商品 元利金 支給保障 內容 < 預金者保護法 施行令 >

구 분	예금상품	예금보호여부		
		98.7.31일 이전 가입분~2000년말	98.7.31일 이후 가입분~2000년말	2001년이후
은행	예금,적금,부금,표지어음	원리금보장	2,000만원이상은 원금만 보장	원리금 2,000만원까지 보장
	외화예금,CD,금융채	원리금보장	2,000만원이상은 원금만 보장	보장제외
	환매채	원리금보장(98.6.30이전 가입분)	보장제외	보장제외
은행 신탁	확정금리형 원본보존신탁	원리금보장	2,000만원이상은 원금만 보장	원리금 2,000만원까지 보장
	개발신탁	원리금보장	2,000만원이상은 원금만 보장	보장제외
	실적배당신탁	보장제외	보장제외	보장제외
종금	발행어음,표지어음,CMA, 담보CP	원리금보장	2,000만원이상은 원금만 보장	원리금 2,000만원까지 보장
	RP, 수익증권, 무담보CP, 종금채	원리금보장	보장제외	보장제외
증권	고객예탁금, 증권저축	원리금보장	2,000만원이상은 원금만 보장	원리금 2,000만원까지 보장
	청약자예수금, 유통금융대주, 담보금	원리금보장	2,000만원이상은 원금만 보장	보장제외
	환매채	원리금보장(98.6.30이전 가입분)	보장제외	보장제외
	수익증권, 무담보CP, MMF, 증권채	보장제외	보장제외	보장제외
보험	개인보험, 퇴직보험	해약환급금기준 전액보장(98.6.30이전가입분)	수입보험료와 해약환급금중 적은 금액	해약환급금기준 2,000만원(98.7.24 이전가입분은 5,000만원까지)
	법인보험	원리금보장	2,000만원이상은 원금만 보장	보장제외
	보증보험	원리금보장	보장제외	보장제외
신금, 신협	예금, 적금, 부금, 계금, 표지어음, 출자금, 예탁금, 적금	원리금보장	2,000만원이상은 원금만 보장	원리금 2,000만원까지 보장
투신	수익증권, MMF	보장제외	보장제외	보장제외
새마을 금고	출자금,예탁금,적금	보장제외	보장제외	보장제외
회사채	보증보험보증	원리금보장	보장제외	보장제외
	은행보증,기타보증, 무보증회사채	보장제외	보장제외	보장제외

[附錄 2] 金融圈別 預金保險料 納付規定

■ 보험회사의 보험료납부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예금자보호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2조 제12호카목의 부보금융기관(이하 “보험회사” 라 한다)의 보험료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보험료의 납부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보대상책임준비금”이라 함은 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책임준비금을 말한다. <개정 98·12·18>
2. “보험회사”라 함은 보험업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를 말한다. 다만, 재보험 또는 보증보험을 주로 하는 주식회사인 보험회사를 제외한다.
3.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책임준비금”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신설 98·12. 18]
가. 매 결산기말 현재 보험금등(보험계약상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보험계약자가 해약을 요청한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거나 배당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계약 : 보험의 종목별 또는 계약기간 경과별로 보험업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약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보험료 적립금 및 미경과보험료 [신설 98. 12·18]

나. 매 결산기말 현재 보험금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 : 다음의 금액
(1)지급할 금액이 확정되었으나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
(2)지급할 금액의 미확정으로 인하여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그 추정 보험금

(3)보험금등의 지급금액과 관련하여 소송이 계속중인 경우 그 소송가액
[신설 98.12.18.]
다. 보험사업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하기 위하여 적립한 금액으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금액 [신설 98.12.18]

제4조 (부보대상책임준비금의 범위)
부보대상책임준비금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적립한 책임준비금으로 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책임준비금과 제4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인 보험계약(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보험계약은 제외한다)과 관련된 책임준비금은 제외한다. <개정 98.12.18>
1.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보험계약이외 보험계약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과 관련하여 적립한 책임준비금 <개정 98.12.18>
2.보증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적립한 책임준비금 <개정 98.12.18>
3.재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적립한 책임준비금 <개정 98.12.18>
4.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5.한국은행,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 또는 예금보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6.다른 부보금융기관

제2장 보험료 산정 및 납부

제5조 (보험료의 산정단위) 보험료는 사업년도 단위로 산정한다.

제6조 (보험료의 산정)
①보험회사는 보험료를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산정대상기간이 사업년도 일수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일할계산한다.
보험료 = 부보대상책임준비금의 잔액 × 보험료율 <개정 98.12.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보험료가 1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10만원으로 한다.

제7조 (보험료율의 적용)
①보험료율은 15/10,000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차등적용한다.
②보험료 납부기한이 속하는 사업년도 개시일을 기준으로 설립후 10년이 경과하

지 않은 보험회사의 보험료율은 15.75/10,000로 한다.

③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인보험회사로서 누적결손이 없는 보험회사의 보험료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보험료율=15/10,000 - [(실제적립준비금-해약환급금식 준비금)/(순보험료식준비금-해약환급금식 준비금)] × 0.75/10,000

④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손해보험회사로서 누적결손이 없는 보험회사의 보험료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보험료율=15/10,000-[5-연간보유보험료총액/보험계약자잉여금)×1/3]×0.75/10,000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보험료율은 최고 15/10,000, 최저 14.25/10,000로 한다.

⑥제2항 내지 제4항에 해당되지 않는 보험회사의 보험료율은 15/10,000를 적용한다.

⑦보험료율은 소숫점 8자리에서 사사오입한 소숫점 7자리까지로 한다.

제8조 (보험료의 납부기한)

보험회사 보험료를 매사업년도 종료후 3월 이내에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월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기한으로 한다.

제9조 (보험료의 납부방법)

①보험회사는 보험료를 현금,자기앞수표 또는 계좌이체(지준이체 포함)의 방법으로 공사의 사장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보험료는 “천원” 미만을 절사한다.

제3장 보험료 산정자료의 제출

제10조 (보험료 산정자료의 제출)

①보험회사는 제11조에서 정하는 보험료 산정자료를 매사업년도 종료후 2월이내에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보험회사는 보험료 산정자료외에 보험료 산정과 관련하여 공사의 사장이 별도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 (보험료 산정자료)

①보험료 산정자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험료 산정표
2.보험종목별 책임준비금의 잔액이 기재된 사업년도말 자료 <개정 98.12.18>
②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보험료 산정표의 서식은 필요한 경우 공사의 사장이 변경할 수 있다.

제4장 과납 또는 미납보험료의 처리

제12조 (과납보험료의 정산)
①보험료를 과납한 보험회사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공사에 정산을 요청할 수 있다.
②공사의 사장은 제1항의 요청에 대하여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과납한 보험료를 정산한다.

제13조 (미납보험료의 처리)
보험회사가 제8조에서 정한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납부하지 아니한 보험료와 부족하게 납부한 보험료(이하 "미납보험료" 라 한다)에 관하여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리한다.
1.보험회사는 미납보험료와 제14조에서 정한 연체료를 합산한 금액을 지체없이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2.보험회사는 제1호의 금액을 납부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유선으로 통보한후 그 납부명세를 문서로써 공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연체료)
①연체료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연체료 = 미납보험료×연체이자율×납부지연일수/365일
②연체이자율은 보험료 납부기일 현재의 법 제2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각 부보금융기관의 일반자금 대출시의 평균 연체이자율로 한다.
③납부지연일수는 보험료 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미납보험료의 납부일까지의 일수로 한다.
④연체료는 미납보험료를 납부하는 때에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제5장 합병등에 따른 보험료 납부

제15조 (다른 보험회사와 합병등으로 보험료 납부등)
①보험회사가 다른 보험회사와 합병한 경우 신설되는 보험회사(이하 "신설보험회

사"라 한다) 또는 존속하는 보험회사(이하 "존속보험회사"라 한다)의 보험료납부와 관련하여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신설보험회사 또는 존속보험회사는 합병전후의 보험회사별로 보험료를 일할계산하여 보험료 산정자료를 작성한다.

2.신설보험회사 또는 존속보험회사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보험료 산정자료를 제10조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3.신설보험회사 또는 존속보험회사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보험료의 합계액을 제8조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보험회사가 계약이전등으로 인하여 다른 보험회사에게 보험계약등을 이전하고 청산절차를 밟을 경우 당사자간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보험계약등을 이전하는 보험회사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는 보험계약등을 이전받은 보험회사가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납부와 관련하여서는 제1항 각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 (보험료 납부기한등의 연장)

①합병으로 소멸하는 보험회사 또는 보험계약등을 이전하는 보험회사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와 관련하여 신설보험회사, 존속보험회사 또는 보험계약등을 이전받는 보험회사는 보험계약등의 승계 또는 이전절차의 지연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제8조 및 제10조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당해 보험료에 대한 납부 및 산정자료의 제출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동기한의 연장을 공사에 신청할 수 있다.

②공사의 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신청에 대하여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및 제10조에서 정하는 기한일로부터 3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일정기간을 정하는 당해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료 납부 및 보험료 산정자료의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7월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호(보증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적립한 책임준비금에 한한다)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은 1998년 8월1일부터 시행하고,제3조제2호 단서(재보험을 주로 하는 주식회사인 보험회사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제4조제1호(법인이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인 보험계약중 보증보험계약 및 재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적립한 책임준비금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다) 및 동조 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98.12.18>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①보험감독원의 보험보증기금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한다)에 의하여 보험감독원이 출연금과 관련하여 보험회사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행한 행위로 본다.
②운영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출연금과 관련하여 보험감독원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제3조 (보험료에 관한 경과조치)
보험회사가 운영규정에 의하여 보험보증기금에 납부한 출연금은 이 규정에 의한 보험료로 본다.

제4조 (보험료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등)
①이 규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부보대상 수입보험료는 재보험을 주로 하는 주식회사인 보험회사를 제외한 보험회사가 재보험계약을 제외한 보험계약(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제외한다)에 의하여 수입한 수입보험료로 하여<별표1>의 산식에 의하여 일할계산한다.
②제1항의 경우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험료는 이 규정 시행후 2월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보험료 산정자료는 이 규정 시행후 1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부보대상 책임준비금의 범위에 관한 특례등)
보증보험을 주로 하는 주식회사인 보험회사가 1998년 7월 31일 현재 계약의 효력이 있는 보증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적립한 책임준비금은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정 시행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부보대상 책임준비금의 범위에 포함되며, 보험료는 <별표2>의 산식에 의하여 일할계산한다 <개정 98.12.18>

부칙

제1조 (시행일)이 규정은 1998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험료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분 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일할계산한다.
보험료=1998사업년도말 수입보험료의 총액×138일/365일×개별보험회사의 보험료율+ 1998사업년도말 책임준비금의 잔액×197일/365일×개별보험회사의 보험료율

<별표1>

1997년도분 보험료의 계산

1.보험료의 계산
-보험회사(보증보험회사 제외)
: 부보대상수입보험료의 총액×개별 보험회사 적용보험료율 <1997.4.1.~1997.11.18>×232일/365일+ 부보대상수입보험료의 총액×개별 보험회사 적용보험료율<1997.11.19~1998.3.31>×133일/365일

2.보험료율의 적용
<1997.4.1~1997.11.18>
- 1998.4.1 기준으로 설립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보험회사의 보험료율 : 0.5/10,000

- 1998.4.1 기준으로 설립후 10년이 경과한 인보험회사로서 누적결손이 없는 보험회사의 보험료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
보험료율=10/10,000-[(실제적립준비금-해약환급금식 준비금)/(순보험료식 준비금-해약환급금식 준비금)]×0.5/10,000

- 1998.4.1 기준으로 설립후 10년이 경과한 손해보험회사로서 누적결손이 없는 보험회사의 보험료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
보험료율=10/10,000-[(5-연간보유보험료총액/보험계약자잉여금)×1/3]×0.5/10,000
※보험료율:최고 10/10,000, 최저9.5/10,000

- 그외의 보험회사의 보험료율 : 10/10,000
※보험료율은 소숫점 8자리에서 사사오입한 소숫점 7자리까지로 함.
<1997.11.19~1998.3.31>
-제7조를 적용하여 계산

<별표2>

사업년도별 보증보험회사의 보험료의 계산

1. 1998 사업년도

-1998사업년도말 수입보험료의 총액(1998.7.31이전에 체결된 보증보험계약에 한함)×168일/365일×개별보험회사의 보험료율+ 1998사업년도말 책임준비금의 잔액(1998.7.31이전에 체결된 보증보험계약에 한함)×197일/365일×개별보험회사의 보험료율

2. 1999 사업년도

-부보대상책임준비금의 잔액(1998.7.31이전에 체결된 보증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적립한 책임준비금의 잔액)×보험료율

3. 2000사업년도

-부보대상 책임준비금의 잔액(1998.7.31이전에 체결된 보증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적립한 책임준비금의 잔액)×보험료율×275일/365일

<별지 제1호 서식>

보험료산정표(인보험회사)

(연도)

보험회사(인)

◉ 납부보험료 : 원 ◉부보대상책임준비금의 잔액 (단위 : 원)			
보험종목	규정제3조제4호상책임준비금잔액①	부보대상제외책임준비금잔액②	부보대상책임준비금잔액 (①-②)
생존보험 사망보험 생사혼합보험 개인보험 단체보험			
합 계			ⓐ

표 41

◉보험료율

(단위 : 원)

실제적립준비금(A)	해약환급금식준비금(B)	순보험료식 준비금(C)	보험료율ⓑ

주1 : 1.보험료율= 표준비율(15/10,000)-[(A-B)/(C-B)*(표준비율*5/100) 2.보험류율 : 최고 15/10,000,최저 14.25/10,000(단,10년 미만 보험회사는 15.75/10,000)

◉당해사업년도 보험료

(단위 : 원)

부보대상책임준비금잔액ⓐ	보험료율ⓑ	당해사업년도보험료(ⓐ*ⓑ)

[작성요령] 1.납부보험료는 1,000원 미만을 절사함 (최저금액은 100,000원) 2.부보대상제외책임준비금의 잔액은 제4조제1호 및 동조 제4호 내지 제6호와 관련된 책임 준비금의 잔액임(단,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산출하지 않음)
작성자 직위 성명 연락처

표 45

※첨부 : 보험종목별 책임준비금의 잔액이 기재된 사업년도말 자료

<별지 제 2호 서식>

보험료산정표(손해보험회사)

(연도)

보험회사 (인)

◉납부보험료 : 원
◉부보대상책임준비금의 잔액
(단위 : 원)

보험종목	규정제3조제4호상 책임준비금잔액①	부보대상제외책임준비금잔액②		부보대상 책임준비금잔액(①-②)
		부보대상제외 계약자 책임준비금잔액	기타부보대상제외 책임준비금잔액	
화재 해상 자동차 보증 특종 해외원보험 장기 개인연금				
합계				ⓐ

◉보험료율
(단위 : 원)

연간보유보험료총액(A)	보험계약자잉여금(B)	보험료(ⓑ(

주:1.보험료율=표준비율(15/10,000)-[5-A/B)*1/3]*(표준비율*5/100)
2.보험료율 : 최고 15/10,000. 최저 14.25/10,000(단,10년 미만 보험회사는 15.75/10,000)

◉당해사업년도 보험료
(단위 : 원)

부보대상책임준비금잔액ⓐ	보험료율ⓑ	당해사업년도보험료(ⓐ*ⓑ)

[작성요령]
1.납부보험료는 1,000원 미만을 절사함(최저금액은 100,000원)
2.부보대상제외 계약자 책임준비금의 잔액은 제4조제1호 및 동조 제4호 내지 제6호와 관련된 책임준비금의 잔액임(단,2000년 12월 31일까지는 산출하지 않음)
3.기타부보대상제외책임준비금의 잔액은 1998년 8월 1일 이후 체결된 보증보험계약과 관련된 책임준비금의 잔액임.

작성자 직위 성명 연락처

※첨부 : 보험종목별 책임준비금의 잔액이 기재된 사업년도말 자료

■ 은행의 보험료 납부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예금자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가목 내지 자목의 부보금융기관(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보험료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보험료의 납부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부보대상예금”이라 함은 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예금등을 말한다.
2.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는 범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부보대상예금의 범위)
부보대상예금은 은행이 예금,적금,부금등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서 조달한 금전과 신탁업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을 통하여 조달한 금전으로 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5호의 방법으로 조달한 금전과 제6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조달한 금전은 제외한다.
1. 외국환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통화로 표시된 예금
2. 양도성 예금
3. 개발신탁
4. 채권신탁
5.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도
6. 정부 또는 비방자치단체
7. 한국은행,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 또는 예금보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8. 다른 부보금융기관

제2장 보험료 산정 및 납부

제5조 (보험료의 산정단위)
보험료는 분기별(1~3월,4~6월,7~9월,10~12월)로 산정한다

제6조 (보험료의 산정)
①은행은 분기별 보험료를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다만,산정대상기간이 분기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일할계산한다.
분기별 보험료=부보대상예금의 분기별 평균잔액×5/10,000×1/4
②은행이 납부하는 연간 최저보험료는 10만원으로 한다.
③은행은 당해연도 4/4분기분 보험료를 납부함에 있어 당해분기 보험료를 포함한 연간 보험료의 합계가 10만원보다 적을 경우 10만원에서 당해연도 보험료로 기납부한 보험료를 차감 한 금액을 4/4분기분 보험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보험료의 납부기한)
은행은 분기별 보험료를 매분기 종료후 1월이내에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기한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기한으로 한다.

제8조 (보험료의 납부방법)
①은행은 보험료를 납부함에 있어서 어음교환을 이용하여 공사가 수납하도록 요청하거나,현금,자기앞수표 또는 계좌이체(지준이체포함)의 방법으로 공사의 사장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보험료는 “천원”미만을 절사한다.

제3장 보험료 산정자료의 제출

제9조 (보험료 산정자료의 제출)
①은행은 제10조에서 정하는 보험료 산정자료를 매분기 종료후 익월 20일이내에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은행은 보험료 산정자료외에 보험료산정과 관련하여 공사의 사장이 별도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 (보험료 산정자료)
①보험료 산정자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보험료산정표<별지 제1호 서식>

2.분기평잔대차대조표
②제1항제1호에서 정한 보험료산정표의 서식은 필요한 경우 공사의 사장이 변경할 수 있다.

제4장 과납 또는 미납 보험료의 처리

제11조 (과납보험료의 처리)
①보험료를 과납한 은행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공사에 정산을 요청할 수 있다.
②공사의 사장은 제1항의 요청에 대하여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과납한 보험료를 정산한다.

제12조 (미납보험료의 처리)
은행이 제7조에서 정한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납부하지 아니한 보험료와 부족하게 납부한 보험료(이하 “미납보험료”라 한다)에 관하여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리한다.
1.은행은 미납보험료와 제13조에서 정한 연체료를 합산한 금액을 지체없이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2.은행은 제1호의 금액을 납부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유선으로 통보한 후 그 납부명세를 문서로써 공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연체료)
①연체료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연체료 = 미납보험료×연체이자율×납부지연일수/365
②연체이자율은 보험료 납부기일 현재의 법 제2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각 부보금융기관의 일반자금 대출시의 평균 연체이자율로 한다.
③납부지연일수는 보험료 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미납 보험료의 납부일까지의 일수로 한다.
④연체료는 미납보험료를 납부하는 때에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제5장 합병등에 다른 보험료 납부

제14조 (다른 은행과 합병등의 보험료 납부등)
①은행이 다른 은행과 합병한 경우 신설되는 은행(이하 “신설은행”이라 한다) 또는 존속하는 은행(이하 “존속은행”이라 한다)의 보험료 납부와 관련하여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신설은행 또는 존속은행은 합병전후의 은행별로 보험료를 일할 계산하여 보험료 산정자료를 작성한다.
2.신설은행 또는 존속은행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보험료 산정자료를 제9조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공사 제출하여야 한다.
3.신설은행 또는 존속은행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보험료의 합계액을 제7조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은행이 계약이전 또는 영업양도등으로 인하여 다른 은행에게 예금등을 이전하고 청산절차를 밟을 경우 당사자간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한 예금등을 이전하는 은행이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는 예금등을 이전받는 은행이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납부와 관련하여서는 제1항 각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 (보험료 납부기한등의 연장)
①합병으로 소멸하는 은행 또는 예금등을 이전하는 은행이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와 관련하여 신설은행,존속은행 또는 예금등을 이전받는 은행은 예금등의 승계 또는 이전절차의 지연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제7조 및 제9조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당해 보험료에 대한 납부 및 산정자료의 제출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동 기한의 연장을 공사에 신청할 수 있다.
②공사의 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신청에 대하여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및 제9조에서 정하는 기한일로부터 3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일정기간을 정하여 당행 은행에 대하여 보험료 납부 및 보험료 산정자료의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16조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인 수산업협동조합의 보험료 납부등)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및 그 회원인 수산업협동조합으로서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5제1항제4호라목의 업무를 영위하는 수산업협동조함(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보험료 납부과 관련하여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중앙회는 중앙회와 조합의 제10조에서 정하는 보험료 산정자료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2.중앙회는 조합벼로 보험료를 납부받아 중앙회의 보험료와 함께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3.중앙회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5조제1항제4호라목의 업무와 관련하여 신규진입

또는 퇴출하는 조합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 (외국 금융기관 국내지점의 보험료 납부)
은행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업인가를 받은 외국금융기관이 국내에 2이상의 지점 또는 대리점을 두는 경우의 보험료 납부업무와 관련하여서는 당해 지점 또는 대리점 전부를 대표하는 지점 또는 대리점이 국내은행의 본점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제4조제1호 내지 제4호와 제6호 내지 제8호의 규정은 2001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보대상예금의 범위에 관한 특례)
이 규정은 시행일 전일까지 은행이 환매조건부채권을 매도하여 조달한 금전은 제4조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정 시행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부보대상예금의 범위에 포함된다.

제3조 (보험료 납부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은행이 종전 보험료수납규정 제11조에 의하여 공사가 어음교환을 이용하여 보험료를 수납할 수 있도록 공사에 의뢰한 경우에는 이 규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이 공사가 보험료를 수납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본다.

제4조 (1998년 2/4분기 보험료에 관한 경과조치)
1998년 2/4분기 보험료 납부는 종전의 보험료수납규정에 따른다.

제5조 (1998년 3/4분기 보험료에 관한 경과조치)
보험료 : (부보대상예금의 분기별 평균잔액 ×3/10,000×1/4×24일/92일) + (부보대상예금의 분기별 평균잔액×5/10,000×1/4×68일/92일)

■ 종합금융회사의 보험료 납부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예금자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호가목의 부보금융기관(이하 “종합금융회사”라 한다)의 보험료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보험료의 납부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부보대상예금”이라 함은 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예금등을 말한다
2.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부보대상예금의 범위)
부보대상예금은 종합금융회사가 종합금융회사에 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음의 발행과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자금을 모아 이를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그 수익금을 지급하는 금융상품에 의하여 조달한 금전으로 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조달한 금전은 제외한다 <개정 98.12.18.>
1.삭제<98.12.18>
2.삭제<98.12.18>
3.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4.한국은행,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 또는 예금보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5.다른 부보금융기관

제2장 보험료 산정 및 납부

제5조 (보험료의 산정단위)보험료는 사업년도 단위로 산정한다.
제6조 (보험료의 산정)

①종합금융회사는 보험료를 다음의 산실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산정대상기간이 사업년도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일할계산한다.

보험료 = 부보대상예금의 연평균잔액×15/10,00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보험료가 1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10만원으로 한다.

제7조 (보험료의 납부기한)

종합금융회사는 보험료를 매사업년도 종료후 3월이내에 공사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월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기한으로 한다.

제8조 (보험료의 납부방법)

①종합금융회사는 보험료를 현금,자기앞수표 또는 계좌이체(지준이체 포함)의 방법으로 공사의 사장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보험료는 “천원”미만을 절사한다.

제3장 보험료 산정자료의 제출

제9조 (보험료 산정자료의 제출)

①종합금융회사는 제10조에서 정하는 보험료 산정자료를 매사업년도 종료후 2월이내에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종합금융회사는 보험료 산정자료외에 보험료 산정과 관련하여 공사의 사장이 별도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 (보험료 산정자료)

① 보험료 산정자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별지 제1호 서식>의 보험료산정표

2.대차대조표등 가중평균잔액이 기재된 사업년도말 자료

②제1항제1호에서 정한 보험료산정표의 서식은 필요한 경우 공사의 사장이 변경할 수 있다.

제4장 과납 또는 미납보험료의 처리

제11조 (과납보험료의 처리)

①보험료를 과납한 종합금융회사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공사에 정산을 요청할

수 있다.
②공사의 사장은 제1항의 요청에 대하여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과납한 보험료를 정산한다.

제12조 (미납보험료의 처리)
종합금융회사가 제7조에서 정한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납부하지 아니한 보험료와 부족하게 납부한 보험료(이하 "미납보험료"라 한다)에 관하여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리한다
1.종합금융회사는 미납보험료와 제13조에서 정한 연체료를 합산한 금액을 지체없이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2.종합금융회사는 제1호의 금액을 납부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유선으로 통보한후 그 납부명세를 문서로써 공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연체료)
①연체료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연체료=미납보험료×연체이자율×납부지연일수/365일
②연체이자율은 보험료 납부기일 현재의 법제2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각 부보금융기관의 일반자금 대출시의 평균 연체이자율로 한다.
③납부지연일수는 보험료 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미납보험료의 납부일까지의 일수로 한다.
④연체료는 미납보험료를 납부하는 때에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제5장 합병등에 따른 보험료 납부

제14조 (다른 종합금융회사와 합병등의 경우 보험료 납부등)
①종합금융회사가 다른 종합금융회사와 합병한 경우 신설되는 종합금융회사
(이하 "신설종합금융회사"라 한다) 또는 존속하는 종합금융회사
(이하 "존속종합금융회사"라 한다)의 보험료납부와 관련하여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신설종합금융회사 또는 존속종합금융회사는 합병전후의 종합금융회사별로 보험료를 일할계산하여 보험료산정자료를 작성한다.
2.신설종합금융회사 또는 존속종합금융회사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보험료산정자료를 제9조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종합금융회사가 계약이전 또는 영업양도등으로 인하여 다른 종합금융회사에게 예금등을 이전하고 청산절차를 밟을 경우 당사자가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예금등을 이전하는 종합금융회사가 납부하여야할 보험료는 예금등을 이전받는 종합금융회사가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납부와 관련하여서는 제1항 각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 (보험료 납부기한등의 연장)

①합병으로 소멸하는 종합금융회사 또는 예금등을 이전하는 종합금융회사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와 관련하여 신설종합금융회사,존속종합금융회사 또는 예금등을 이전받는 종합금융회사는 예금등의 승계 또는 이전 절차의 지연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제7조 및 제9조에서 정하는 기한가지 당해 보험료에 대한 납부 및 산정자료의 제출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동 기한의 연장을 공사에 신청할 수 있다.

②공사의 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신청에 대하여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및 제9조에서 정하는 기한일로부터 3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일정기간을 정하여 당해 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 보험료 납부 및 보험료 산정자료의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재2조 (일반적 경과조치)

①신용관리기금의 기본재산관리규정(이하 “관리규정”이라한다)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관리기금이 출연금과 관련하여 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②관리규정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금융회사가 출연금과 관련하여 신용관리기금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제3조 (보험료에 관한 경과조치)

종합금융회사가 관리규정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사업년도 종료후 신용관리 기금에 납부한 출연금은 이 규정에 의한 보험료로 본다.

제4조 (보험료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등)
①이 규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의 계산은 <별표 1>의 산식에 의하여 일할 계산한다.
②제1항의 경우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험료는 이 규정 시행후 2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보험료 산정 자료는 이 규정 시행울 1우러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보험료의 산정에 관한 특례)
이 규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보험료는 제6조제1항에 불구하고 <별표1>의 산식에 의하여 일할 계산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험료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분 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일할 계산한다.
보험료=종전규정에 의한 부보대상예금의 평균잔액('98.4.1 ~ '98.9.15)×168일/365일×보험료율(7.24이전 : 0.12%, 7.25이후 : 0.15%)+ 개정규정에 의한 부보대상예금의 평균잔액('98.9.16 ~ '99.3.31)×197일/365일×보험료율

제3조 (종합금융회사가 보증한 어음에 대한 경과조치)
1998.9.30.이전에 종합금융회사가 보증한 어음에 의하여 조달한 금전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부보대상 예금으로 본다.

<별표1>

사업년도별 보험료의 계산

1.1997사업년도
- 부보대상예금의 연평균잔액×8/10,000×232일/365일+ 부보대상예금의 연평균잔액×12/10,000×133일/365일

2.1998사업년도
- 부보대상예금의 연평균잔액×12/10,000×115일/365일+ 부보대상예금의 연평균잔액×15/10,000×250일/365일

<별지 제1호 서식>

보험료 산정표

(년도)

종합금융회사(인)

◉납부보험료 : 원 ◉부보대상예금 평균잔액 (단위 : 원)

계정과목	대차대조표상평균잔액①	부보대상제외예금평균잔액②		부보대상예금평균잔액 (①-②)
		부보대상제외예금자예금평균잔액	기타부보대상제외예금평균잔액	
발행어음				
표지어음				
담보부매출어음				
CMA예탁금				
				ⓐ

◉당해사업년도 보험료 (단위 : 원)

부보대상예금평균잔액ⓐ	보험요율ⓑ	당해분기보험료(ⓐ*ⓑ)

[작성요령] 1.납부보험료는 1,000원 미만을 절사함(최저금액은 100,000원) 2.부보대상제외예금자예금평균잔액은 제4조제3호 내지 제5호로부터 조달한 금전을 대상으로 산출 (단,2000년 12월 31일까지는 산출하지 않음) 3.'98.10.1 이후 매출하는 담보부매출어음은 기타부보대상 제외예금에 해당 4. 기타부보대상제외 예금평균잔액은 대차대조표상 가액과 실제 조달한 금전과의 차액을 대상으로 산출
작성자 직위 성명 연락처

※첨 부 : 기중평균잔액이 기재된 사업년도말 자료

[附錄 3] 保險會社 支給餘力 基準 (主要 改正內容: '99. 5월)

□ 손해보험 지급여력제도

1. 지급여력기준의 강화
- 일반보험의 지급여력기준을 보험종목별로 산정하던 방식에서 일반종목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 (EU방식 준용)
- 장기손해보험의 지급여력기준을 책임준비금의 1%에서 4%로 강화하고 장기보험의 보험위험에 대한 지급여력기준을 마련(생명보험 및 EU방식 준용)

지급여력 기준

□ 지급여력기준 = 일반보험 + 장기보험의 지급여력기준

- 일반보험 (다음 중 큰 값)

· 1년간 보유보험료 × 보험료기준 비율(17.8%)

· 3년평균 보험금(발생손해액) × 보험금기준 비율(25.2%)

- 장기보험 (다음 중 큰 값)

· 장기보험에 대한 책임준비금의 4% + 장기보험 1년간 보유위험보험료 × 보험료기준 비율(17.8%)

· 장기보험에 대한 책임준비금의 4% + 장기보험 3년평균 발생손해액 × 보험금기준 비율(25.2%)

- 개정안에 의한 지급여력 및 지급여력기준 변화('99. 3월말)

(단위 : 억원, %, %p)

구 분		현 행	개정안	차 이	구성비
지 급 여 력(A)		29,787	29,010	△777	
지급여력 기 준	일 반	10,107	10,387	280	8.6
	장 기	1,523	4,486	2,963	91.4
	계(B)	11,630	14,873	3,243	100.0
비 율(A/B)		**256.1**	**195.0**	**△61.1**	

주) 11개 일반 원수사 기준임

- 개정안에 의하면 지급여력기준이 총 3,243억원이 증가하고 지급여력은 777억원이 감소하여 지급여력비율이 195.0%로 현행 256.1%에 비하여 61.1%p 하락(23.9%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장기보험의 지급여력기준은 2,963억원 증가함으로써 전체지급여력기준 증가액 3,243억원의 91.4%를 차지 지급여력제도 강화의 주요인으로 작용함

2. 지급여력항목 조정
- 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 등 자본조정항목 추가
- 자산건전성 분류결과 “정상” 및 “요주의”로 분류된 자산에 대하여 적립된 대손충당금을 지급여력에 산입
- 차감항목을 개정하여 “무형자산”을 지급여력에서 공제

3. 조치기준의 변경
- 현행 지급여력비율 100%를 기준으로 부족비율에 따라 3단계로 조치하고 있는 것을, 지급여력비율 100% 미만시 지급여력비율에 따라 3단계 조치토록 변경

현 행			개 정 안		
지급여력 부족비율에 따른 조치	▪0%미만 ▪0 ~ 50% ▪50~100% ▪100%초과	정상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지급여력 비율에 따른 조치	▪100%초과 ▪50~100% ▪0 ~ 50% ▪0%미만	정상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4. 경영정상화 대상회사(2개사)에 대한 적용 유예
- 금감위에 제출한 경영정상화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할 경우 정책의 일관성 차원에서 계획이행기간까지는 개정안의 지급여력비율과 관련된 적기시정조치의 적용 유예

- 손해보험 지급여력제도 개정요약 표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 colspan="2">현 행</th><th colspan="2">개 정 (안)</th></tr>
<tr><td rowspan="2">지급
여력</td><td>합산
항목</td><td colspan="2">▪납입자본금
▪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
▪비상위험준비금
▪해지환급금을 초과하는 보험료적립금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신 설)
▪(신 설)
▪후순위차입금</td><td colspan="2">▪(좌 동)
▪(좌 동)
▪(좌 동)
▪(좌 동)
▪(좌 동)
▪‘정상’ 및 ‘요주의’로 분류된 자산의 대손충당금
▪자본조정
▪(좌 동)</td></tr>
<tr><td>차감
항목</td><td colspan="2">▪신계약비
▪자기주식
▪자본의 50%이상이 잠식된 회사 등의 주식 또는 지분
▪선급비용
▪퇴직금총액에서 퇴직급여충당금 잔액을 차감한 금액
▪해당 부실액이 대손충당금 초과금액
▪(신 설)</td><td colspan="2">▪(좌 동)
▪(삭 제)
▪(삭 제)
▪(좌 동)
▪(삭 제)
▪(삭 제)
▪무형자산</td></tr>
<tr><td colspan="2">지급여력기준</td><td colspan="2">▪일반보험 종목별 지급여력기준＋책임준비금의 1%＋해외출재보험료의 2%</td><td colspan="2">▪일반보험지급여력기준＋장기보험책임준비금의 4%＋장기위험보험에 대한 지급여력기준</td></tr>
<tr><td colspan="2">지급여력비율</td><td colspan="2">▪지급여력 / 지급여력기준</td><td colspan="2">▪(좌 동)</td></tr>
<tr><td colspan="2">적기시정
조 치</td><td>지급여력부족비율
▪0%미만
▪0 ~ 50%
▪50~100%
▪100%초과</td><td>정상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td><td>지급여력비율
▪100%초과
▪50~100%
▪0 ~ 50%
▪0%미만</td><td>정상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td></tr>
</table>

□ 생명보험 지급여력제도

1. 지급여력 확보기준의 강화

- 현행 "0(零)" 이상의 지급여력을 보유토록 하고 있는 기준을 지급여력기준 [(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 - 미상각신계약비) × 책임준비금 위험계수(=4.0%)의 소정비율 + 위험보험금 × 보험위험계수의 소정비율] 이상의 지급여력을 확보토록 강화

2. 지급여력기준의 변경

- "7년상각해약환급금식 책임준비금"을 "(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 - 미상각신계약비) × 책임준비금위험계수(= 4.0%)의 소정비율 + 위험보험금 × 보험위험계수의 소정비율"로 변경 (※ 보험위험계수는 회사별 실적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소정비율은 향후 5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상향조정)

3. 단계별 일정 제시

- 지급여력확보기준을 향후 5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2004년 3월부터는 EU의 지급여력수준인 「책임준비금 × 4% + 위험보험금 × 0.3%」의 지급여력을 확보토록 기준 제시

※ 위험보험금, 보험위험계수 산출방식 및 소정비율

* 위험보험금(제25조제2항제2호)

일반상품		금리연동형상품
보험가입금액(①) - 책임준비금	+	일반사망보험금액(②) (책임준비금 미포함)

* 보험위험계수(제25조제2항제2호)

위험보험료/보험가입금액(①+②) × $\sum_{위험}$ { (위험별)보험금지급율 × (위험별)보험금점유율 × (위험별)자기부담율 }

주) 1. 위험은 일반사망, 재해사망, 재해장해, 질병/입원으로 구분하며, 보험금지급율과 보험금점유율 및 자기부담율은 위험별로 산출하여 적용
2. 위험보험료 : 직전 1년간 수입된 위험보험료(재보험 출재전)
3. 지급보험금 : 직전 1년간 발생된 위험에 대한 지급보험금(수입재보험금 수령전, 소멸계약의 책임준비금 미차감)
4. 보험금지급율 : 지급보험금 / 위험보험료
5. 보험금점유율은 지급보험금중 각 위험이 차지하는 지급보험금의 점유비임
6. 자기부담율 : (지급보험금 - 수입재보험금) / 지급보험금

* 단계별 소정비율

구 분	소정비율	구 분	소정비율
1999. 9월말	6.25%	2002. 3월말	50.00%
2000. 3월말	12.50%	2002. 9월말	62.50%
2000. 9월말	18.75%	2003. 3월말	75.00%
2001. 3월말	25.00%	2003. 9월말	87.50%
2001. 9월말	37.50%	2004. 3월말이후	100.00%

주) 종업원퇴직적립보험, 퇴직보험 및 특별계정으로 운용되는 실적배당상품은 제25조제2항의 지급여력기준 산출대상에서 제외함

4. 지급여력구성항목 조정

- 자산건전성 분류결과 “정상” 및 “요주의”로 분류된 자산에 대하여 적립된 대손충당금만 지급여력에 산입
- 보완자본 성격인 계약자배당안정화준비금을 지급여력에 산입
- 자본조정을 지급여력에 산입
- 차감항목을 신설하여 “무형자산중 영업권”과 “신계약비”를 지급여력에서 공제

5. 조치기준의 변경

- 현행 지급여력비율 0% 미만시 부족비율에 따라 3단계로 조치하고 있는 것을 지급여력비율 100% 미만시 지급여력비율에 따라 3단계 조치토록 변경
  (※ 현행 경영개선명령 수준은 지급여력부족비율이 20%이상일때로서 책임준비금의 20%를 잠식할 때이나 개선안의 경우 자본완전 잠식시 경영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6. 경영정상화 대상회사에 대한 특례

- 1998년 8월 금감위가 승인한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중인 회사에 대하여는 정책의 일관성 유지차원에서 2000년 9월 30일까지 개정안의 지급여력비율과 관련된 적기시정조치의 적용 유예

- 생명보험 지급여력제도 개정요약

구 분		현 행		개 정	
지급여력	구성항목	▪납입자본금 ▪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 ▪해약식 초과 보험료적립금 ▪계약자에게 할당되지 아니한 계약자배당준비금 **▪(신 설)** ▪대손충당금 ▪97조 준비금 **▪(신 설)** ▪후순위차입금		▪(좌 동) ▪(좌 동) ▪(좌 동)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및** **계약자배당안정화준비금** **▪'정상' 및 '요주의'로 분류된 자산의 대손충당금** **▪(삭 제)** **▪자본조정** ▪(좌 동)	
	차감항목	▪신계약비		▪신계약비 ▪무형자산중 영업권	
지급여력기준		▪7년상각 해약식책임준비금의 0%		▪(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 - 미상각신계약비)×책임준비금위험계수(=4%)의 소정비율 + 위험보험금×보험위험계수의 소정비율 ※ 소정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	
지급여력비율		▪지급여력금액 / 7년상각 해약식책임준비금		▪지급여력금액 / [(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 - 미상각신계약비)×책임준비금위험계수(=4%)의 소정비율 + 위험보험금×보험위험계수의 소정비율]	
지급여력비율에 따른 조치		▪0%초과 ▪△10 ~ 0% ▪△20 ~ △10% ▪△20%미만	정상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100%초과 ▪50 ~ 100% ▪0 ~ 50% ▪0%미만	정상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 지급여력비율에 따른 조치 (감독규정)

<손해보험사업자>

제32조의2(경영개선권고) ①감독원장은 손해보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손해보험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1. 지급여력기준에 대한 지급여력의 비율이 50%이상 100%미만인 경우<개정 99. 6. 25>
2.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보통)이상으로서 지급여력 또는 자산건전성 부문의 평가등급이 4등급(취약)이하로 평가받은 경우
3. 거액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 발생으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자본금의 증액 또는 감액
2. 사업비의 감축
3. 점포관리의 효율화
4.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 제한
5. 부실자산의 처분
6.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7. 자기주식의 취득금지
8. 요율조정권고
9. 주주배당 또는 계약자배당의 제한
10. 신규업무 진출 및 신규출자의 제한

③감독원장은 제1항에 의한 권고를 하는 경우 당해 손해보험사업자 또는 관련임원에 대하여 주의 또는 경고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전문개정 99. 3. 26〕

제32조의3(경영개선요구) ①감독원장은 손해보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감위의 의결을 거쳐 당해 손해보험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지급여력기준에 대한 지급여력의 비율이 0%이상 50%미만인 경우<개정 99. 6. 25>
2.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을 4등급(취약)

이하로 평가받은 경우

3. 거액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 발생으로 제1호의 또는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점포의 폐쇄·통합 또는 신설제한
2. 임원진 교체 요구
3. 보험사업의 일부정지
4. 인력 및 조직의 축소
5. 재보험처리
6. 합병, 제3자 인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계획 수립
7. 위험자산보유제한 및 자산의 처분
8. 자회사의 정리
9. 제32조의2제2항의 조치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

〔전문개정 99. 3. 26〕

제32조의4(경영개선명령) ①금감위는 손해보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손해보험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하여야 한다.

1.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2. 지급여력기준에 대한 지급여력의 비율이 0%미만인 경우<개정 99. 6. 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다만, 주식의 전부소각, 보험사업의 전부정지, 영업의 전부양도, 계약의 전부이전의 조치는 제1항 제1호의 부실금융기관이거나 제1항 제2호의 기준에 미달하고 건전한 보험거래질서나 보험가입자의 권익을 해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1.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 소각
2.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및 보험관리인의 선임
3. 6월 이내의 보험사업 전부 정지
4.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전
5. 합병
6. 제3자에 의한 당해 보험사업의 인수
7.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8. 제32조의3제2항의 조치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
〔전문개정 99. 3. 26〕

제32조의5조(경영개선계획의 제출 및 평가 등) ①제32조의2 또는 제32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권고·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손해보험사업자는 감독원장에게,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손해보험사업자는 금감위에 당해 조치일로 부터 각각 2월 이내에 당해 경영개선권고·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의 내용이 반영된 계획(이하 "경영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 3. 26>
②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손해보험사업자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대하여는 감독원장이, 제32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손해보험사업자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대하여는 금감위의 의결을 거쳐 감독원장이,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손해보험사업자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대하여는 금감위가 당해 경영개선계획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각각 1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99. 3. 26>
③감독원장은 제32조의2 또는 제3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개선권고·경영개선요구를 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즉시 해당 손해보험사업자에 대하여 경영진단을 실시하거나 외부전문기관에 경영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④감독원장은 제1항에 의하여 손해보험사업자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동 계획의 승인을 거부하고 제32조의2에 의한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손해보험사업자에 대하여는 금감위의 의결을 거쳐 제32조의3에서 규정한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기간 내에 이행토록 요구할 수 있으며, 제32조의3에 의한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손해보험사업자에 대하여는 금감위의 의결을 거쳐 동 계획의 승인을 거부하고 제32조의3에서 규정한 조치의 일부를 일정기간 내에 이행토록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금감위에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명령을 건의할 수 있다. <개정 99. 3. 26>
⑤감독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⑥제2항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을 승인 받은 손해보험사업자는 매분기말로부터 10일 이내에 동 계획의 분기별 이행실적을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장은 손해보험사업자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분기별 이행실적을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99. 3. 26>

제32조의6(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한) ①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권고

를 받은 손해보험사업자의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한은 당해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②제32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손해보험사업자의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한은 당해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일로부터 1년6월 이내로 한다. 다만,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손해보험사업자가 그 경영개선계획의 이행 중 제32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경영개선권고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일로부터 1년6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③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손해보험사업자의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한은 금감위가 정한다.
④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한이 만료된 손해보험사업자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여력기준을 초과하는 등 경영상태가 충분히 개선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권고는 감독원장이, 제32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요구는 금감위의 의결을 거쳐 감독원장이,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명령은 금감위가 당초의 조치가 만료되었음을 해당 손해보험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손해보험사업자가 이행기한이 만료되었음에도 경영개선계획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만료시점의 경영상태를 기준으로 제32조의2 내지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99. 3. 26>

제32조의7(경영개선계획의 불이행 등에 따른 조치) ①감독원장은 경영개선계획의 이행상황 점검결과 당해 손해보험사업자가 경영개선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99. 3. 26>

1.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손해보험사업자에 대하여는 금감위의 의결을 거쳐 제32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요구 <개정 99. 3. 26>
2. 제32조의3의 규정 등에 의한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손해보험사업자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간을 정한 경영개선계획의 이행 촉구. 이 경우 이행촉구기간은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99. 3. 26>
3. 제2호에 의하여 경영개선계획의 이행촉구를 받고도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손해보험사업자에 대하여는 금감위에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명령의 건의 <개정 99. 3. 26>

②금감위는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손해보험사업자가 경영개선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손해보험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99. 3. 26>

1. 보험사업의 전부정지 <개정 99. 3. 26>

2. 재정경제부장관에 대한 당해 보험사업자의 허가취소 요청
3. 기타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제32조8(경영개선권고 등의 유예 및 완화·면제) ①감독원장은 제32조의2 내지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권고 등을 받거나 경영개선권고 등의 대상이 되는 손해보험사업자가 자본확충 또는 자산매각 등으로 경영개선권고 등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이 확실시되거나 단기간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동안 경영개선권고 등을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2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손해보험사업자에 대한 유예는 금감위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손해보험사업자에 대한 유예는 금감위에 건의하여야 한다.
②감독원장은 제32조의2 내지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권고 등을 받은 손해보험사업자가 자본확충 또는 부실채권 정리 등으로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당초 계획보다 조기에 달성하여 경영상태가 현저히 개선된 경우에는 경영개선권고 등을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2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손해보험사업자에 대한 완화·면제는 금감위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손해보험사업자에 대한 완화·면제는 금감위에 건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 3. 26〕

<생명보험사업자>

제28조(경영개선권고) ①감독원장은 생명보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생명보험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1. 지급여력기준에 대한 지급여력의 비율이 50%이상 100%미만인 경우<개정 99. 5. 21>
2.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보통) 이상으로서 지급여력 또는 자산건전성 부문의 평가등급이 4등급(취약)이하로 평가받은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점포의 폐쇄·통합 또는 신설제한
2. 임원진 교체 요구
3. 보험사업의 일부정지

4. 인력 및 조직의 축소
5. 합병, 제3자 인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계획 수립
6. 위험자산보유제한 및 자산의 처분
7. 자회사의 정리
8. 제28조제2항의 조치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

[전문개정 99. 3. 26]

제28조의2(경영개선요구) ①감독원장은 생명보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감위의 의결을 거쳐 당해 생명보험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지급여력기준에 대한 지급여력의 비율이 0%이상 50%미만인 경우 <개정 99. 5. 21>
2.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을 4등급(취약) 이하로 평가받은 경우

제28조의3(경영개선명령) ①금감위는 생명보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생명보험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하여야 한다.

1.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2. 지급여력기준에 대한 지급여력의 비율이 0%미만인 경우<개정 99. 5. 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다만, 주식의 전부소각, 보험사업의 전부정지, 영업의 전부양도, 계약의 전부이전의 조치는 제1항 제1호의 부실금융기관이거나 제1항 제2호의 기준에 미달하고 건전한 보험거래질서나 보험가입자의 권익을 해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1.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 소각
2.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및 보험관리인의 선임
3. 6월 이내의 보험사업 전부 정지
4.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전
5. 합병
6. 제3자에 의한 당해 보험사업의 인수
7.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8. 제28조의2제2항의 조치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

〔전문개정 99. 3. 26〕

제29조(경영개선계획의 제출 및 평가 등) ①제28조 또는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권고·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생명보험사업자는 감독원장에게, 제28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생명보험사업자는 금감위에 당해 조치일로부터 각각 2월 이내에 당해 경영개선권고·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의 내용이 반영된 계획(이하 "경영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 3. 26>

②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생명보험사업자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대하여는 감독원장이,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생명보험사업자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대하여는 금감위의 의결을 거쳐 감독원장이, 제28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생명보험사업자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대하여는 금감위가 당해 경영개선계획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각각 1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99. 3. 26>

③감독원장은 제28조 또는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개선권고·경영개선요구를 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즉시 해당 생명보험사업자에 대하여 경영진단을 실시하거나 외부전문기관에 경영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④감독원장은 제1항에 의하여 생명보험사업자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동 계획의 승인을 거부하고 제28조에 의한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생명보험사업자에 대하여는 금감위의 의결을 거쳐 제28조의2에서 규정한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기간 내에 이행토록 요구할 수 있으며, 제28조의2에 의한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생명보험사업자에 대하여는 금감위의 의결을 거쳐 동 계획의 승인을 거부하고 제28조의2에서 규정한 조치의 일부를 일정기간 내에 이행토록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금감위에 제28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명령을 건의할 수 있다. <개정 99. 3. 26>

⑤감독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⑥제2항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을 승인 받은 생명보험사업자는 매분기말로부터 10일 이내에 동 계획의 분기별 이행실적을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장은 생명보험사업자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분기별 이행실적을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99. 3. 26>

제29조의2(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한) ①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생명보험사업자의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한은 당해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일

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②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생명보험사업자의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한은 당해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일로부터 1년6월 이내로 한다. 다만,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생명보험사업자가 그 경영개선계획의 이행 중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경영개선권고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일로부터 1년6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③제28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생명보험사업자의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한은 금감위가 정한다.
④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한이 만료된 생명보험사업자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여력확보기준을 초과하는 등 경영상태가 충분히 개선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권고는 감독원장이,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요구는 금감위의 의결을 거쳐 감독원장이, 제28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명령은 금감위가 당초의 조치가 만료되었음을 해당 생명보험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생명보험사업자가 이행기한이 만료되었음에도 경영개선계획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만료시점의 경영상태를 기준으로 제28조 내지 제28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99. 3. 26>

제29조의3(경영개선계획의 불이행 등에 따른 조치) ①감독원장은 경영개선계획의 이행상황 점검결과 당해 생명보험사업자가 경영개선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99. 3. 26>

1.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생명보험사업자에 대하여는 금감위의 의결을 거쳐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요구 <개정 99. 3. 26>
2. 제28조의2의 규정 등에 의한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생명보험사업자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간을 정한 경영개선계획 이행 촉구. 이 경우 이행촉구기간은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99. 3. 26>
3. 제2호에 의하여 경영개선계획의 이행촉구를 받고도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생명보험사업자에 대하여는 금감위에 제28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명령의 건의 <개정 99. 3. 26>

②금감위는 제28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생명보험사업자가 경영개선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생명보험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99. 3. 26>

1. 보험사업의 전부정지 <개정 99. 3. 26>
2. 재정경제부장관에 대한 당해 보험사업자의 허가취소 요청
3. 기타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제29조4(경영개선권고 등의 유예 및 완화·면제) ①감독원장은 제28조 내지 제28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권고 등을 받거나 경영개선권고 등의 대상이 되는 생명보험사업자가 자본확충 또는 자산매각 등으로 경영개선권고 등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이 확실시되거나 단기간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동안 경영개선권고 등을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생명보험사업자에 대한 유예는 금감위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제28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생명보험사업자에 대한 유예는 금감위에 건의하여야 한다.

②감독원장은 제28조 내지 제28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권고 등을 받은 생명보험사업자가 자본확충 또는 부실채권 정리 등으로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당초 계획보다 조기에 달성하여 경영상태가 현저히 개선된 경우에는 경영개선권고 등을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생명보험사업자에 대한 완화·면제는 금감위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제28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생명보험사업자에 대한 완화·면제는 금감위에 건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 3. 26〕

[附錄 4] 保險會社 經營實態評價

<감독규정>

제 2-2절 경영실태평가 등 건전성 감독 (신설 98.12.11)

제34조의2(경영실태평가) ①감독원장은 보험사업자의 경영실태를 평가하여 경영의 건전성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②감독원장은 보험사업자에 대한 경영실태평가결과를 감독 및 검사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③경영실태평가는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취약), 5등급(위험)의 5단계 등급으로 구분한다. <개정 99. 3. 26>

④제1항의 의한 경영실태평가방법 및 평가등급의 설정 등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감독규정세칙>

제55조의3(경영실태평가) ①감독규정 제3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는 모든 보험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영업개시후 만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보험사업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감독원장은 검사 등을 통하여 별표 제5-2호에서 정하는 평가항목으로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검사 이외의 기간에는 별표 제5-2호중 계량평가항목만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③별표 제5-2호의 평가항목중 계량평가항목의 산정기준은 별표 제5-3호와 같다.

④경영실태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평가대상 보험사업자의 경영실태를 부문별로 구분하여 평가한 후 각 부문별 평가결과를 감안하여 종합평가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문별 평가는 지급여력·자산건전성·경영관리·수익성·유동성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다만, 외국보험사업자의 국내지점에 대하여는 지급여력을 제외하고 평가한다.

⑥경영실태평가의 평가등급은 1등급(우수),2등급(양호),3등급(보통),4등급(취약), 5등급(위험)의 5단계 등급으로 구분하며 평가등급별 정의는 별표 제5-4호와 같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등급은 평가부문별로 별표 제5-2호에서 정하는 계량평가 및 비계량평가항목을 감안하여 종합평가등급을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검사를 통한 경영실태평가후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평가결과가 크게 악화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 등으로 평가대상 보험사업자의 경영상태가 현저히 악화되는 경우 당해 평가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⑧별표 제5-2호의 평가항목중 계량평가항목의 등급구분기준 및 계량평가항목의 산정을 위한 기준으로서 이 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본조신설 98. 12. 24〕

<별표 제5-2호>

-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 및 배점

1. 생명보험

평가부문	계량평가항목	비계량 평가항목
지급여력 (30점)	▪지급여력 비율Ⅰ(20점) ▪지급여력 비율Ⅱ(10점)	▪지급여력 변동요인의 적정성 ▪향후 지급여력 개선 가능성 ▪지급여력 유지정책의 타당성 ▪기타 경영실태평가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자 산 건전성 (20점)	▪부실자산비율(10점) ▪위험가중자산비율(10점)	▪자산건전성 분류의 적정성 ▪위험자산 보유수준의 적정성 ▪부실자산 관리능력 ▪여신관리의 적정성 ▪기타 경영실태평가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경영관리 (20점)		▪전반적인 재무상태 및 영업능력 ▪경영정책 수립·집행기능의 적정성 ▪리스크관리 능력 ▪내부경영관리의 합리성 ▪법규준수 ▪기타 경영실태평가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수익성 (15점)	▪평균 예정이율 대 총자산수익율 (5점) ▪위험보험료 대 사망보험금 비율 (5점) ▪예정사업비 대 총실제사업비 비율(5점)	▪손익구조 변동원인의 적정성 ▪이원별 손익관리의 적정성 ▪사업비 집행의 효율성 ▪기타 경영실태평가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유동성 (15점)	▪유동성 비율(7.5점) ▪수지차비율(7.5점)	▪유동성 변동요인의 적정성 ▪자금조달 및 운용구조의 합리성 ▪유동성 관리능력 ▪기타 경영실태평가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손해보험

평가부문	계량평가항목	비계량 평가항목
지급여력 (30점)	▪지급여력 비율Ⅰ(20점) ▪지급여력 비율Ⅱ(10점)	▪지급여력 변동요인의 적정성 ▪향후 지급여력 개선 가능성 ▪지급여력 유지정책의 타당성 ▪기타 경영실태평가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자 산 건전성 (20점)	▪부실자산비율(10점) ▪위험가중자산비율(10점)	▪자산건전성 분류의 적정성 ▪위험자산 보유수준의 적정성 ▪부실자산 관리능력 ▪여신관리의 적정성 ▪기타 경영실태평가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경영관리 (20점)		▪전반적인 재무상태 및 영업능력 ▪경영정책 수립·집행기능의 적정성 ▪리스크관리 능력 ▪내부경영관리의 합리성 ▪법규준수 ▪기타 경영실태평가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수익성 (15점)	▪손해율(5점) ▪순사업비율(5점) ▪운용자산수익율(5점)	▪손익구조 변동원인의 적정성 ▪손해율 관리 적정성 및 합리성 ▪사업비 집행의 효율성 ▪기타 경영실태평가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유동성 (15점)	▪유동성자산 비율(7.5점) ▪현금수지차비율(7.5점)	▪유동성 변동요인의 적정성 ▪자금조달 및 운용구조의 합리성 ▪유동성 관리능력 ▪기타 경영실태평가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별표 제5-3호>

- 계량평가항목의 산정기준

1. 지급여력

가. 지급여력비율Ⅰ (생보·손보)

(1) 산식 : (지급여력 / 지급여력기기준) × 100

(2) 산정방식

- 생명보험은 감독규정 제25조, 손해보험은 동 규정 제31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함.

나. 지급여력비율Ⅱ (생보·손보)

(1) 산식 : (지급여력 / 지급여력기기준) × 100

(2) 산정방식

- 수정지급여력 = "지급여력비율Ⅰ"의 지급여력에서 후순위차입금 및 투자유가증권평가손실을 차감한 금액

2. 자산건전성

가. 부실자산비율 (생보·손보)

(1) 산식 : (가중부실자산 / 자산건전성 분류대상 자산) × 100

(2) 산정방식

- 자산건전성 분류대상자산 : 이 세칙 <별지 제9-2호>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의하여 건전성분류대상이 되는 자산

- 가중부실자산 : 자산건전성 분류대상자산 중 건전성분류에 따른 고정분류자산의 20%, 회수의문분류자산의 75%, 추정손실분류자산의 100% 상당액을 합계한 금액

나. 위험가중자산비율 (생보·손보)

(1) 산식 : (위험가중자산 / 총자산) × 100

(2) 산정방식

- 위험가중자산은 총자산에 대하여 감독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산별 위험가중치를 부과하여 산출

3. 수익성

가. 평균예정이율 대 총자산수익율 (생보)

(1) 산식 : (총자산수익률 / 평균예정이율) × 100

(2) 산정방식

- 평균예정이율 = $\frac{\text{당기말책임준비금적수+ 전기말책임준비금적수}}{\text{당기말책임준비금+ 전기말책임준비금}} \times 100$

◦ 책임준비금 = 해약환급금식책임준비금 - 지급준비금 -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 책임준비금적수 = 예정이율 × 책임준비금

- 총자산수익율 = (투자수익/경과총자산) × 100

◦ 경과총자산 = (당기말 총자산+ 전기말 총자산-투자수익) ÷ 2

◦ 투자수익 = 총자산 운용수입 - 총자산 운용비용

◦ 총자산 운용수입 = 수입이자 + 수입배당금 + 수입임대료 + 투자수입수수료 + 유가증권평가이익 + 유가증권처분이익 + 유형자산평가이익 + 유형자산처분이익 + 금전신탁이익

◦ 총자산 운용비용 = 감가상각비 + 대손상각비 + 유가증권평가손실+ 유가증권처분손실 + 유형자산평가손실 + 유형자산처분손실 + 이자비용 + 할인료

나. 위험보험료 대 사망보험금 비율 (생보)

(1) 산식 : (사망보험금 / 위험보험료) × 100

(2) 산정방식 : 사망보험금은 사망보험금, 상해보험금, 입원보험금, 관련지급비금 증감의 합계 금액임

다. 예정사업비 대 총실제사업비 비율 (생보)

(1) 산식 : (총실제사업비 / 예정사업비) × 100

(2) 산정방식 : 총실제사업비는 사업비와 재산관리비를 합계한 금액임

라. 손해율 (손보)

(1) 산식 : (발생손해액 / 경과보험료) × 100

(2) 산정방식 : 일반, 자동차, 장기보험으로 구분하여 직전 1년간 실적을 기준으로 작성

마. 순사업비율 (손보)

(1) 산식 : (사업비 / 경과보험료) × 100

(2) 산정방식 : 사업비는 순사업비와 재산관리비를 합계한 금액임

바. 운용자산수익율 (손보)

(1) 산식 : (순투자수익 / 경과운용자산) × 100

(2) 산정방식

- 순투자수익 = 투자수익 - 투자비용
- 경과운용자산 = (기초운용자산 + 기말운용자산 - 순투자수익) ÷ 2

4. 유동성

가. 유동성비율 (생보·손보)

(1) 산식 : (유동성자산 / 총자산) × 100

(2) 산정방식

- 유동성자산 : 다음의 자산을 합계한 금액을 말함

◦ 현금

◦ 당좌예금, 보통예금

◦ CD, CMA, MMDA, RP, 콜론

◦ 상품유가증권 중 주식·채권(후순위채 제외)·수익증권

◦ 기타 위의 자산과 그 성격 및 운용형태가 유사한 것으로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자산

나. 수지차비율 (생보)

(1) 산식 : (총수지차 / 지급보험금) × 100

(2) 산정방식

- 총수지차 : 보험수지차 + 투자수지차 + 기타수지차
- 지급보험금 : 평가기간 동안의 지급보험금 누계액

다. 현금수지차비율 (손보)

(1) 산식 : (현금수지차 / 보유보험료) × 100

(2) 산정방식

- 현금수지차 : 보험영업수지차(보유보험료-순보험금-장기환급금-사업비) + 보험영업외수지차(투자영업수지차+ 영업외수지차+ 특별손익) - 보험미수금증가액 + 보험미지급금증가액

· 사업비 = 순사업비-(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전입액+ 대손상각비+ 신계약비상각비)

· 투자영업수지차 = 투자영업손익±유가증권평가손익+ 부동산감가상각비

· 영업외수지차 = 영업외손익±외화평가손익-대손충당금환입

(별표 제5-4호) <신설 98.12.24>

- 각 평가등급별 정의

1. 지급여력

평가등급	정 의
1등급	지급여력이 충분하여 감독상 최소의 주의만 요구됨
2등급	지급여력은 적정하나 지급여력비율이 1등급의 경우보다 나쁨
3등급	지급여력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적정수준의 감독이 요구됨
4등급	지급여력 부족이 현저하게 나타남
5등급	지급여력이 크게 부족하여 외부로부터 긴급자금 지원이 요구됨

2. 자산건전성

평가등급	정 의
1등급	자산이 건전하여 감독상 최소의 주의만 요구됨
2등급	자산이 건전하여 감독상 최소의 주의를 요하나 자산의 건전성이 1등급 보다 낮음
3등급	여건이 악화되면 장래에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적정수준의 감독이 요구됨
4등급	자산건전성에 문제가 있음
5등급	자산의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어 회사 존립이 위태로움

3. 경영관리

평가등급	정 의
1등급	경영관리능력이 우수하며 현존하거나 예측되는 문제점에 대해 경영진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
2등급	1등급보다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으나 여건변화에 따라 업무를 적절히 처리할 수 있음
3등급	경영관리능력은 보통 수준이나 상황대처능력이 약간 부족함
4등급	경영관리능력이 전반적으로 부족함
5등급	경영관리능력이 크게 부족하며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는 경영진의 교체가 요구됨

4. 수익성

평가등급	정 의
1등급	수익이 손실보전을 위한 충당금적립 및 회사성장에 따른 자본금 증액에 충분하여 감독상 최소의 주의만 요구됨
2등급	수익이 손실보전을 위한 충당금적립 및 회사성장에 따른 자본금 증액에 충분하지만 수익률이 감소추세를 보임
3등급	수익이 손실보전을 위한 충당금적립 및 회사성장에 따른 자본금 증액에 충분치 않으며 자산의 건전성 악화 등으로 수익증가여력이 미흡하여 적정수준의 감독이 요구됨
4등급	수익의 변동폭이 크고 감소추세를 보임
5등급	손실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자기자본의 감소를 초래함

5. 유동성

평가등급	정 의
1등급	충분한 유동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감독상 최소의 주의만 요구됨
2등급	적정수준의 유동성을 확보하고는 있으나 유동성이 감소하거나 차입자금에 대한 유동성이 높음
3등급	유동자산이 부족하거나 이자율 변동에 민감한 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
4등급	유동성 부족이 심각함
5등급	유동성 부족으로 회사 존립이 위태하여 긴급대책이 요구됨

7. 종합평가등급의 정의

평가등급	정 의
1등급	- 경영전반에 걸쳐 건전경영이 이루어짐 ◦약간의 적출사항은 있으나 그 정도가 경미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함 ◦외부의 금융·경제적 불안요인 및 비정상적인 영업여건에 대한 적응능력을 보유하고 있음 - 정상적인 감독상의 주의만 요구됨
2등급	- 근본적으로 경영이 건전하나 해결가능한 약간의 취약점을 내포하고 있음 ◦ 대체로 안정적이고 영업여건의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음 - 회사 경영에 대한 부분적인 시정이 이루어지는 정도의 제한된 감독이 요구됨
3등급	- 재무상태, 업무수행 및 규정준수면에서 다양한 취약점이 노출되고 있음 ◦불리한 영업여건에 대한 저항력이 약하고 취약점 시정을 위한 효율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경영상태가 쉽게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 ◦법규정 위반사례가 많음 ◦그러나 전반적인 경영관리능력 및 재무상태로 보아 아직 도산의 가능성은 희박한 수준임 - 취약점 시정을 위한 통상적인 수준이상의 감독상의 주의가 요구됨
4등급	- 재무상태가 크게 취약하거나 경영상 심각한 취약점들이 여러부문에 걸쳐 많이 나타남 ◦시정되기 어려운 주요 문제점들이 많이 현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들이 효율적으로 시정되지 않으면 장래 회사의 존립이 위태롭게 될 수 있음 ◦다만, 도산의 가능성은 잠재하고 있으나 아직 외부에 나타나지 않고 있음 - 감독당국의 면밀한 주의, 재무상태에 대한 감시 및 시정조치를 위한 명확한 계획이 요구됨
5등급	- 도산이 임박하였거나 그 가능성이 매우 높음(4등급보다 더욱 악화) ◦경영부실 정도와 규모가 매우 심각하여 주주 또는 기타 재원으로부터 긴급 재정지원이 필요함 - 긴급 자금지원과 같은 즉각적이며 단호한 시정조치가 없는 경우 계약이전, 청산, 인수·합병 등의 조치가 요구됨

[附錄 5] 美國의 州別 保險保證基金

<손해보험> (단위 : 만$)

州	설립 연도	급부최고 한도①	근재보험 전액보장②	회수/면책 (순자산)③	계정수④ (Account)	부과금 한도⑤	공제 조항⑥
Alabama	1981	15*	전액	없음	3	1%a	P
Alaska	1970	50*	전액	없음	3	2%a	R&P
Arizona	1977	10*	SF	없음	2	1%a	P
Arkansas	1977	30	N7	5,000	1	2%p	P
California	1969	50	전액	없음	3	1%a	S
Colorado	1971	10*	전액	5,000	3	1%a	R&P
Connecticut	1971	30*	전액	5,000	3	2%a	R&P
Delaware	1970	30	전액	5,000	1	2%p	P/R&P
D. of C.	1973	30	전액	5,000	3	2%a	R&P
Florida	1970	30*	SF	없음	3	1%a	R&P
Georgia	1970	10	전액	300	3	2%a	R&P
Hawaii	1971	30	전액	5,000	1	2%p	S
Idaho	1970	30	전액	없음	3	1%a	R&P
Illinois	1971	30	전액	25,000	2	1%a	R&P
Indiana	1972	10/30	N7	500/5,000	3	1%a	P/R&P
Iowa	1970	30*	전액	없음	1	2%p	R&P
Kansas	1970	30*	전액	없음	1	2%p	P/R&P
Kentucky	1972	30	전액	25,000	1	2%p	R&P
Louisiana	1970	15*/30	전액	없음	1	2%p	P
Maine	1970	30	전액	없음	3	2%a	R&P
Maryland	1971	30*/100bond	전액	50,000	4	2%a	R&P
Massachusetts	1971	30	전액	없음	1	2%p	R&P
Michigan	1969	0.05%wp*	전액8	1%p	5	1%p	R&P
Minnesota	1971	30*	전액	25,000	5	2%a	P
Mississippi	1970	30*	전액	없음	1	1%p	R&P

① * 보증기금 지급시 $10~$250 수준의 일정금액 공제(Deductible) 적용
② <N7>급부금 최고한도내, <전액8>일정금액 공제 <SF>saparate state fund에서 보전
③ 부유한 계약자 및 법인에 대한 회수 및 면책조항의 기준으로 순자산기준 금액
④ 보증기금내 분리계정수 : 대부분 자동차,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기타
⑤ 원수보험료기준, <a> 각 계정별 보험료 기준, <p> 총보험료 기준
⑥ 보증기금 회수방법 : <p> 보험료세 공제, <s> 추가 부가보험료부과, <r&p> 보험료율 인상 및 추가 부가보험료 부과

州	설립 연도	급부최고 한도①	근재보험 전액보장②	회수/면책 (순자산)③	계정수④ (Account)	부과금 한도⑤	공제 조항⑥
Missouri	1971	30*	전액	25,000	4	1%[a]	P
Montana	1971	30*	전액	50,000	1	2%[p]	R&P
Nebraska	1971	30*	전액	없음	3	1%a	P
Nevada	1971	30*	SF	없음	1	2%[p]	P
New Hampshire	1970	30*	전액	없음	3	2%[p]	R&P
New Jersey	1974	30*, (7.5[auto claim])	SF	없음	1	2%[p]	S
New Maxico	1973	10*	전액	없음	3	2%[a]	R&P
New York	1969	100, 500[policy]	SF	없음	1	사전	R&P/ 0.5%[p/q]
North Carloina	1971	30*	전액	50,000	3	2%[a]	R&P
North Dakota	1971	30*	SF	없음	1	2%[p]	R&P
Ohio	1970	30	SF	50,000	2	1.5%[a]	R&P
Oklahoma	1980	15	전액	50,000	3	2%[a]/ 1%[PHS]	R&P
Oregon	1971	30	전액	없음	1	2%[p]	P
Pennsylvania	1970	30	SF	[1st pty] 500 / [3rd pty] 50,000	2	2%[a]	R&P
Puerto Rico	1974	15	전액[7/8]	없음	2	2%[a]	R&P
Rhode Island	1970	30	전액	50,000	3	2%[a]	R&P
South Carolina	1971	30*	전액	없음	4	1%[a]	R&P
South Dakota	1970	30*	전액	50,000	3	1%[a]	R&P
Tennessee	1971	10*	전액	없음	2	1%[a]	P
Texas	1971	30	전액	50,000	4	2%[line] /2%[p]	P
Uta	1971	30*	전액	50,000	3	2%[a]	P
Vermont	1970	30	전액	없음	3	2%[a]	R&P
Virginia	1970	30	전액	50,000	3	2%[a]	P
Washington	1971	30*	SF	없음	2	2%[a]	P
West Virginia	1970	30*	SF	없음	2	2%[a]	R&P
Wisconsin	1969	30*	전액[8]	10,000	6	2%[a]	R&P
Wyoming	1971	15*	SF	없음	1	1%[p]	R&P

<생명보험> (단위 : 만$)

州	설립 연도	사망 급부금	해약 환급금	연금	건강& 장해	보전금 총액①	비할당 연금②	부과금 한도③	공제 조항④
Alabama	1983	-	10	10	-	30	제외	1%	PTO*
Alaska	1990	30	10	10	10	30	500c	2%	없음
Arizona	1977	-	10	10	-	30	NS	2%	PTO
Arkansas	1989	10	10	10	10	30	100c	2%	PTO*
California	1991	25	10	10	20	30	제외	1%	SUR
Colorado	1991	30	10	10	10	30	제외	1%	PTO*
Conneticut	1972	30	10	10	30	30	500c	2%	PTO
Delaware	1982	30	10	10	10	30	100c	2%	PTO*
D of C	1992	30	10	10	10	30	제외	2%	PTO
Florida	1979		10	10		30	NS	1%	PTO*
Georgia	1981		10	10		30	500c	2%	PTO
Hawaii	1979	30	10	10	10	30	제외	2%	PTO*
Idaho	1977		10	10		30	제외	2%	PTO*
Illinois	1980	10	10	10	30	30	500c	2%	PTO
Indiana	1978		10	10		30	500c	2%	PTO
Iowa	1987		10	10		30	500c	2%	PTO
Kansas	1972	30	10	10	10	30	제외	2%	PTO*
Kentucky	1978	30	10	10	10	30	제외	2%	PTO*
Louisiana	1991	10	10	10	10	30	제외	2%	PTO*
Maine	1984		10			30	30	2%	없음
Maryland	1971	30	10	10	30		제외	2%	없음
Massachuserts	1986	30	10	10	10	30	제외	2%	PTO*
Michigan	1982	30	10	10	10	30	500c	2%	PTO*
Minnesota	1977	30	10	10 /30ss	30	30	500p	2%	PTO
Mississippi	1985	30	10	10	10	30	500c	2%	PTO*
Missouri	1988	30	10	10	30	30	제외	2%	PTO*
Montana	1974	30	10	10	10	30	500c	2%	PTO*
Nebraska	1975	30	10	10		30	NS	2%	PTO

① 계약건수에 관계없이 1계약자당 총 보전금 지급한도액
② 보증부투자계약(GICs) 등에 투자된 퇴직연금(pension fund)이 해당됨. <c>는 계약자 1인당 기준, <p> 계약당 기준, <NS>는 별도의 명시조항이 없는 경우임.
③ 연간 보증보험기금에서 보험사에게 할당할 수 있는 최고 한도금액.
④ 보증기금 회수방법(recoupment) : <PTO> 보험료세 공제, <SUR> 추가 부가보험료 징수, 단 * 의 경우는 보증기금 전액에 대한 공제를 불허.

州	설립 연도	사망 급부금	해약 환급금	연금	건강& 장해	보전금 총액①	비할당 연금②	부과금 한도③	공제 조항④
Nevada	1973	30	10	10	10	30	제외	2%	PTO
New Hampshire	1971	30	10	10	10	30	500[c]	2%	PTO
New Jersey	1991	50	10	50/ 10[cash]	전액	50	200[c]	2%	PTO[*]
New Maxico	1975	-	10	-	-	30	NS	2%	없음
New York	1941	-	-	-	-	50	100[c]	2%	PTO[*]
North Carloina	1974	-	-	-	-	30	500[c]	2%	PTO[*]
North Dakota	1983	10	10	10	10	30	500[c]	2%	PTO[*]
Ohio	1989	30	10	10	10	30	100[c]	2%	PTO[*]
Oklahoma	1981	30	10	30	30	30	제외	2%	PTO[*]
Oregon	1975	30	10	10	10	30	100[c]	2%	PTO[*]
Pennsylvania	1979	30	10	30/ 10[ca노]	10	30	500[c]	2%	PTO
Puerto Rico	1974	30	10	10	10	30	제외	2%	없음
Rhode Island	1985	30	10	10	10	30	500[c]	3%	PTO[*]
South Carolina	1972	-	-	-	-	30	NS	4%	PTO
South Dakota	1989	30	10	10	10	30	제외	2%	PTO[*]
Tennessee	1989	30	10	10	10	30	제외	2%	PTO[*]
Texas	1973	30	10	10 (계약자)	20	-	500[c]	1%	PTO[*]
Uta	1979	30	10	10	10	30	500[c]	2%	PTO
Vermont	1972	30	10	10	30	30	100[c]	2%	PTO
Virginia	1976	30	10	10	30	30	제외	2%	PTO
Washington	1971	50	50	50	50	50	500[c]	2%	없음
West Virginia	1977	30	10	10	10	30/15	100[c]	2%	없음
Wisconsin	1969	-	-	-	-	30	NS	2%	PTO
Wyoming	1990	10	10	10	30	30	제외	2%	PTO[*]

<참고문헌>

[국내문헌]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관련 법령집』, 1999.4

금융감독원, 『경영실태평가 편람(안)』, 1999.2

금융감독원, 『은행경영통계』, 1999

김기홍, 안종길, 최장봉, 『예금보호제도의 도입방안과 외국사례분석』, 한국조세연구원, 1996.4

김용우, 「예금보험공사의 역할과 보험가입자보호」,『생협』, 1998.7

보험감독원, 『주요국의 보험감독제도와 검사방향』, 1995.12

보험감독원, 『보험감독원 20년사』, 보험감독원, 1998.3

신용관리기금, 『최근 일본 예금보험제도의 주요 개편내용』 한국조세연구원, 1997.6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 각월호

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 각월호

이상림, 『우리나라 생명보험회사의 지급불능예측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박사학위논문, 1993

이원돈, 정봉은, 신동호, 안철경, 『주요국의 보험법제 비교』,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1999.7

이재복, 『미국 보험회사의 파산과 지불능력규제』, 연구조사자료 96-5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1997.3

예금보험공사, 『차등보험료율제도 도입방안』, 1999.5

예금보험공사, 「미국 FDIC의 최소정비비용 기준」,『조사정보』, 98-3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의 기능과 역할』- 퇴출금융기관 부실원

인조사 및 관련사항을 중심으로-, 1999.11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의 현황과 발전과제」, 세미나발표자료, 1999.12

재정경제위원회, 「예금자보호법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1999.12

정봉은, 이승철,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구조조정』- 외국사례 및 생명보험산업을 중심으로-,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1999.7

정운찬, 『예금보험론』, 경제연구총서15, 서울대학교경제연구소,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2

정홍주, 「보험회사의 도산과 보험보증기금」, 『보험조사월보』, 보험감독원, 1991.7

조해균, 『최신 보험경영론』, 1994.4

최장봉, 가동수, 『우리나라와 BIS, 미국 및 일본의 금융기관에 대한 자본규제』, 한국조세연구원, 1997.6

최장봉, 박경서, 『은행의 예금보험제도 도입방안』, 한국금융연구원, 1996.7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각월호

[외국문헌]

ACLI, 『Life Insurance FACT BOOK』, 1998

A.M.Best, "Best Insurance Report : (P/L) (L/H) on the Guaranty Fund", 1998

David Foppert, "Can the State Guaranty Fund System Hold Up?", *Best's Review,* (L/H insurance edition), 1991. Oct.

David Foppert, "Can the State Guaranty Fund System Hold Up?", *Best's Review,* (P/C insurance edition), 1991. Oct.

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 『Property/Casualty Insurance FACT BOOK』, 1998

NAIC, "Life and Health Insurance Guaranty Association Model Act", *NAIC Model Laws, Regulations, and Guidelines*, 1999.1

NAIC, "Post-Assessment Property and Liability Guaranty Association Model Act", NAIC Model Laws, Regulations, and Guidelines, 1999.1

뉴욕州 보험감독청, *NEW YORK Insurance Law*, NILS Publishing Co. 1995

Kluwer Insurance, *Regulation of insurance in the United Kigdom and Ireland*, 1998.2

生命保險文化研究所(財團法人), 「生命保險支給保證基金に關する諸問題」, 『保險監督法研究會報告書[IV]』, 1994.11

日本 大藏省, 『保險業法,施行令,施行細則』, 1999.9

日本 大藏省, 『生命保險契約者保護機構 金融再生法 早期健全化法』, 1999.9

[Internet 자료]

http://www.fsc.or.kr

http://www.kdic.or.kr

http://www.fdic.com

http://www.jdic.or.jn

http://www.cdic.or.cn

http://www.insure.com

< 著 者 略 歷 >

李 昇 哲

西江大學校 大學院 經濟學科 卒業 (經濟學碩士)
生命保險協會 保險經濟硏究所 勤務 ('90 ~ '95年)
現 保險開發院 保險硏究所 政策硏究팀 先任硏究員

정책연구자료 99-2

예금보험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보험산업을 중심으로 -

발 행 일	1999년 12월 일
발 행 인	박 성 욱
편 집 인	이 순 재
발 행 처	보 험 개 발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대표전화 368-4000
인 쇄 소	
	대표전화

ISBN 89-88001-47-8 93320 定價 10,000원